##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2014.4.25.

# 지역법제 자료 14-16-(5)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2014. 4. 25.

## 워크숍일정

1. 일 시 : 2014년 4월 25 일(월) / 11:00~16:00
2. 장 소 : 진진바라 (서울역)
3. 주 제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4. 내 용 :

- 중국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 중국 여행 관련 법제 연구를 통한 실무적 방향성 설정
- 중국 여행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5. 세부일정

| 시 간 | 내 용 | 발표 및 토론 |  |
| :---: | :---: | :---: | :---: |
| $11: 00 \sim 11: 10$ | 연구 <br> 소개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11: 10 \sim 11: 40$ | 중국과 <br> 우리나라 <br> 관광법제의 <br> 비교분석 | 발 <br> 표 | 윤성혜(원광대학교 한중법률연 <br> 고 연구교수) |
| $11: 40 \sim 12: 10$ | 여유법과 관련 <br> 규정에 대한 <br> 분석 | 발 <br> 표 | 김정진(동아대학교 강사) |
| $12: 10 \sim 12: 40$ | 여유법과 FTA | 발 <br> 표 | 장은정(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br> 운원,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
| 강사) |  |  |  |


|  | 워크솝 일정 | 솝 일정 |
| :---: | :---: | :---: |
| 시 간 | 내 용 | 발표 및 토론 |
| 13:40~16:00 | 종합토론 | -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br> -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br> - 서대훈(한국여행업협회 부장) <br> - 장정재(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br> -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br> - 최경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br> - 하용국(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사 무관)(이상 가나다 순) <br>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br> - 최지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br> -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목 차

## © 발 제 문

한•중 관광법제 비교와 시사점－PPT（윤성혜） ..... 11
한•중 관광법제 비교와 시사점（윤성혜） ..... 24
I．서 론 ..... 24
․ 한•중 관광법제의 제정과 체계 ..... 25
1．중국의 관광 관련 입법 ..... 25
2．한국의 관광 관련 법제 ..... 30
III．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광진흥법의 비교 ..... 35
1．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 ..... 35
2．한국 관광진흥법의 내용 ..... 43
IV．중국 여유법 시행의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45
1．중국 여유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 ..... 45
2．한국에 대한 시사점 ..... 49
V．결 론 ..... 52
＜참고문헌＞ ..... 54
［첨부자료1，2］ ..... 56
중국 《여행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PPT（김정진）$\cdots 63$
중국 《여행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김정진） ..... 73
I．시작하며 ..... 73
ㅍ．중국《여행법》의 제정과 입법경과 ..... 74
1．《여행법》의 제정과 적용범위 ..... 74
2．입법배경 ..... 75
3．《여행법》의 성질 ..... 80
III．중국《여행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 ..... 83
1．통일여행법규로서의 기능 ..... 83
2．여행객의 권리보호 및 안전과 여행계약 ..... 85
3．여행사의 영업행위 내용 ..... 88
4．여행서비스 계약과 여행분쟁처리 ..... 92
5．여행안전과 법률책임 ..... 94
IV．중국《여행법》의 쟁점과 여행시장에의 영향 ..... 96
1．여행객의 권리보호로써의 여행계약해제 ..... 97
3．《여행법》과 기타 여행관련 법제와의 관계 ..... 101
4．《여행법》의 여행시장에의 영향 ..... 102
V．맺으며 ..... 104
참고문헌 ..... 106
한 중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 및 대응방안
－PPT（장은정） ..... 109
한 중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 및 대응방안 （장은정） ..... 117
I．들어가며 ..... 117
ㅍ．한•중 FTA 와 관광서비스 분야 쟁점과 전망 ..... 119
1． FTA 와 관광서비스 산업 ..... 119
2．한．중 양국의 FTA 서비스협정 내용 ..... 122
3．한•중 양국의 관광서비스 산업 정책 ..... 124
4．한•중 FTA 와 관광서비스 분야 쟁점 ..... 127
5．관광부문의 FTA 체결 효과 및 전망 ..... 129
III．중국 관광법（旅游法）의 내용 및 시사점 ..... 131
1．중국 관광법（旅游法）의 내용 및 특징 ..... 131
2．중국 관광법의 시사점 ..... 135
3．한국 관광법의 내용 및 특징 ..... 136
IV．한•중 FTA 관광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 139
V ．마치며 ..... 142
참고문헌 ..... 144
© 토 론 문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 및 국내법제 동향（김성천） ..... 149
I．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 ..... 149
1．연도별 현황 ..... 149
2．피해 유형별 현황 ..... 149
3．처리결과별 현황 ..... 150
․ 국내 여행관련 법제의 현황 ..... 151
1．관광진흥법 ..... 151
2．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52
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여행업표준약관 ..... 158
III．여행 관련 법률 제／개정안 ..... 159
1．민법 개정안 ..... 159
2．여행업법안 ..... 166
법제연구원 중국관광법 관련 토론 (김수한) ..... 170

1. 최근 중국 관광업 동향 ..... 170
2. 인천 중국 관광객 현황 ..... 173
부산시 관광현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장정재) ..... 176
I. 부산시 관광 기본 현황 ..... 176
3. 기구 및 인력 ..... 176
4. 부산관광 실태 ..... 177
․ 중국인 관광객 동향 ..... 180
5. 방문 동향 ..... 180
6. 유치 여건 ..... 181
III. 전략 및 추진과제 ..... 181
7. 유치목표 및 전략 ..... 181
8. 세부전략 ..... 182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정지형) ..... 184
중국 여유법 시행의 중국인 방한관광에 대한 영향 (최경은) ..... 188
중국 여유법 관련 정책 추진현황 (하용국) ..... 192




## 론축

- 연구배경
- 한, 중 관광법제의 제정과 체계
* 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 과 한국 관광지눙법의 비교
- 중국 여유법 시행의 영향과 판국에 대한 시사점
- 결론


## 여누배경|



## 노비마 졀익보호



> 한국 관광업계. 간 퐝상품의 가젹상숭으료 중국 관굥객 감소 유려

## 연구배경 ||



셔비드 선업 개방
및 밫년 7t务竍

FTA를 통한 관 광분야 교류 종대 기대

관 광산업의 지속 가
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요구


``` 하준 과과벙제|의 제저와 구조
```


## 중국의 과간 가려 이벙



## 여유법 제정의 국내 배경

## 관광 4 장의 규밥화 필요

## 관광부불의 협조 쳬계 마련 필요

## 새ㅂㅕㅕ화에 따른 대웅책 마련 필요



## 여유법 제정의 국외 배경






## 여유법의 주요 내영 1 : 당사자의 합법저 권익보장



## 간강사엽자

- 롱직 목전: "관광사업자의 합법저 결익 보호"
- 관 광자 원의 이용 권(제4조)
- 관광 계약 해지권 및 측임 분담


## 가이드

- 가이드의 의 무적고융
- 노동겨약서 폐졀


## 여유법의 주요 내융



## 여유법의 주요 내잉 |||

## 간강의 중마벅 머줏와 간리감독

- 깐광의 위법햄위에 대해 표율적 깐리감독 쳬계 마련
- 깐광 시장에 대한 깐리 감독 강화|판광 종사자의 서비스 햄위)


## 간앙 아저논자

- 깐광 안전 보장에 있어 정부 역핟 강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담당 - 사전예방졔 도, 안전깐리쳬졔, 사푸처리계도


## 가강 분쟁해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깐광눌만처리기깐 설립
-합의, 소비자협회에 의한 중재, 중재기꽌을 동한 중재, 소송

## 하눅 간과징흥법의 구성



## 한국 간가진흔법의 주요 내융


중국 여유법 시행의 영향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중국 여윱ㅂㅂ 시행이 가낭업볘에 미치는 여양

온라인 여행사 영업혀가증 밭급. 정보 공개와 두명성 높아 온라인 관광상픔의 소비 증가


호턷 등급을 이용한 명칭 사용 제한 호털 내 상점 및 식담의 임대제한

## 하국에 대하 시사점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 FTA 에 따른 간강여 개방에 대한 대비 필요

## 다양한 소비패틴의 중국 관광소비자




## 한국 간가법제의 재저이이 필요

$7, B 0$ 넌뗘 점비 퇸 어후 畮멱로
퇸 계편어 어푸어ㄸㅓㅓ 않을


 행고 오허역 간련 산엍들외 빨전열 쳐혜



간강법제ㅇㅚㅚ 대점버 픽요


# 한•중 관광법제 비교와 시사점 

윤 성 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연구교수)

| I. 서 론 |
| :--- |
| I. 한•중 관광법제의 제정과 체계 |
| III. 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광진흥법의 비교 |
| IV. 중국 여유법 시행의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 V . 결 론 |

## I. 서 론

2013년 10월 중국 《여유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중국의 여유법 시 행으로 중국 국내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한국의 관광업계가 바짝 긴장 했다. 특히나 중국의 여유법은 관 광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광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저가 관광상품 판매 옵션관광, 강제 쇼핑 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관광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우려 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른 한국 관광 관련 업 계에 미치는 이러한 충격은 단순히 외부 충격에 따른 영향에 그 근본 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관광법제 및 관광업계의

영업 구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볼 때 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서 사회전반적인 면에서 교류가 증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 양국의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특히나 중국 은 신진핑（习近平）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비스 산업 개방 및 발전을 촉 진 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향후 한중 자유무 역협정（FTA）협상이 마무리 되고 나면 관광서비스분야는 더욱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광업계를 긴장시킨 중국 여유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법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은 한국의 관광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큰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중 양국의 관광법제가 어떻게 입법이 되었고，현재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다음 으로 양국의 관광 관련 핵심 법률인 중국의 여유법과 한국의 관광진 흥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여유 법 시행이 중국 국내 각 분야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 에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한다．

## ㅍ．한•중 관광법제의 제정과 체계

## 1．중국의 관광 관련 입 법

가．입법연혁

중국은 신중국 건립이후 1980년대 이전 까지 관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따라서 1954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여 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 총사가 정부를 대신해 관광업에 관련된 일을

맡아서 했다．1981년에 국무원은 《关于加强旅游工作的决定》을 발포 하고，국무원 행정관리기구가 관광에 관한 관리권을 처음으로 이양 받게 되었다．이로써 국무원 지도하에 중국 전역의 관광에 관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직제가 마련되었다．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80년대 초반부터 여유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다．1982년에 여유 법 초안 작성이 시작되었고，본 초안은 1988년 제 7차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 입법계획과 국무원 입법 계획에 포함 되어 있었다．하 지만 당시 중국의 관광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여유법에 대한 각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초안이 심의에 제출되지 못 하였다．

이후 1992년 덩샤오핑이 남순강화에서 중국 경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선포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이에 따라 관광산 업 또한 시장화 되기 시작하였고，국내 관광시장도 점진적으로 활성 화되기 시작하였다．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관광 관련 법률 제정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1995년에는 《하이난성 여유관리 조례（海南省旅游管理条例）》가 제정되어 해외투자자가 중국 관광시장 에 처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1996년에는 《여행사관리조례（旅行社管理条例）》를 제정하고 종전에 3종류로 나뉘던 여행사의 종류를 해외（国际）여행사와 국내여행사 두 종류로 재편하였다．본 조례에 따 라 해외 여행사는 해외의 관광객을 모집하고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국내 관광객의 해외 여행을 조직 할 수 있다．반 면，국내 여행사는 국내 관광객만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이러한 여행사의 분류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99년 《가이드관리조례（导游人员管理条例）》 및 2001년 《가이드 관리실시방법（导游人员管理实施办法）》의 제정을 시작으로 관광 관련 법규가 연이어 제정되었다．2002년에는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방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를 제정하였고，2009년에는 《여행사조

례（旅行社条例）》 및 그 실시세칙이 제정되었다．2000년대 들어서는 각 지방의 관광 관련 법규 제정이 활발해 졌다．1）2004년 《하이난성 여유관리조례（海南省旅游管理条例）》，2005년 《샨시성여유관리조례 （陕西省旅游管理条例）》，2001년 《샹하이시가이드관리방 법（上海市导游管理办法）》，그리고 2003년 《저지앙성여행사관리방법（浙江省旅行社管理办法）》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개혁개방이후，관광 관련 법률제정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하지만 지금까지의 법률들은 모두 국무원의 행정법규 및 부문 또는 지방 규장들이었다．관광 관련 법규들을 통합하는 국가차원의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관광 관련 당사자의 권익 보호 및 관광법 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법률제도 측면의 장애는 2013년《중화인민공화국여유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이하 여유법）이 제 정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여유법은 중국의 관광산업 발전 역사상 첫 번째 국가 차원의 법률이다．
이로써 현재 중국의 관광 관련 법률은 여유법을 최상의 법률로 하 고，행정법규로는 가이드관리조례，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방법，여행사 조례가 있으며，부문규장으로 여행사조례 실시세칙，관광불만처리방법 （旅游投诉处理办法），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监管暂行办法 등이 있다．

나．여유법 제정배경2）
（1）국내적 배경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국력 뿐 아니라 인민 대중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상승하였다．2012년 중국

1）宋强，＂我国构建旅游法治环境的现状，问题与对策分析＂，《法律研究》第6期，2013， 80 면 참고．
2）宋瑞，＂产业发展视角下的《旅游法》＂，《价格理论与实践》，第 8 期 总第 350 期，2013，34－35丆⽋의 내용을 정리 한 것임．

은 이미 30 억 명의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제일의 관광 시장이 되었다．해외 관광객 수도 8 천 만 명에 이르러 전 세계 해외 관광시장의 $7 \%$ 를 차지하고 있다．중국을 찾는 해외 인구도 5 천 7 백 명을 넘어섰다．3）이처럼 관광산업은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하지만 여전히＂국민경제의 전략적 지주 산업＂으로 성 장하기에는 부족하였다．또한 중국 정부가 12 차 5 개년 계획부터 추진 하기 시작하였던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인민 대중을 만족시키려 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도 아직은 역부족이었다．여기에는 중국 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관광시장이 규범화 되어 있지 못 해 대중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예를 들면，장기간 동안 중국의 관광산업은 저가경쟁으로，저가 상품，옵션관광，강압적 쇼핑 유도 등이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었다． 또한 관광지의 입장료는 날이 갈수로 상승하고，관광 성수기의 유명 관광지는 모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일쑤다．이로 인해 관광 지의 관리 수준과 서비스 수준이 낮다．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 못 했다．

둘째，관광부문의 협조가 약해，업무 비대현상이 심각하다．관광산업 은 종합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시장의 활성화는 사회경제발전과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하지만 중국의 관광산업 은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련 부문의 행정관리에 의해 규범 및 협조 되어 왔다．따라서 관광공공서비스의 질이 낮고， 관광 기반시설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 하다．또한 무분별한 관광자원의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이 여러 지역에서 발 생하게 되었다．법집행이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관광시장의

3）任震宇，＂《旅游法》将规范旅游业发展＂，中国消费网•中国消费者报， 2013．05．03。＜http：／／www．ccn．com．cn／news／yaowen／2013／0503／488837．html＞ （방문일자：2014．04．20）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 관련 각 부문의 종합적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의 불만 처리가 힘들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셋째, 관광산업의 구조가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정부 가 목표로 하는 현대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 인다. 30 년이 넘도록 중국 여행사는 소규모로, 경쟁력이 약하고, 서비 스 질이 낮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관광지 등 급도 각양각색이며, 등급에 대한 관리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 다. 또한 관광사업의 영리성과 공익성을 분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광 부동산, 온라인 관광 등 각종 관광 관 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 한 법률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

중국의 관광산업은 그 산업 규모, 영향력, 사회 작용 등에 있어서 경시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의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고, 발전이 방 만하고, 산업경쟁력 또한 강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국무원 41 호 문건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관광산업을 "국민 경제 전략적 지주 산업 과 인민대중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현대 서비스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중국 관광산업 은 성숙기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따라서 입법의 형식을 통해 발전괘도를 규범화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배경으 로 여유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 국외적 배경

중국은 관광시장의 규모면에서나, 관광소비력에 있어서 세계 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관광에 있어서 강대국이라고 보기에는

중국의 관광경쟁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 하고 있다．세계경제논단 $(\mathrm{WEF})$ 의＜전 세계 관광업 경쟁력 보고＞에 따르면 총 140 개 국가 및 지역 중에 중국은 45 위를 차지하였으며，태평양지역에서는 10 위를 차 지하였다．소위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관광 경쟁력 이 턱없이 낮아 경쟁력 강화에 비상이 걸렸다．따라서 중국의 관광산 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표준 및 국제관례，그리고 각국 이 관광발전 단계에서 제정한 관광법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중국 여유법 제정을 통해서 세계 관광 강대국으로 나아가 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 2．한국의 관광 관련 법제

한국의 관광은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그 기 틀을 마련하였다．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라 할 수 있다．본 법은 외국관광객의 증가와 국민관광의 규모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함으로써 관광 진 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 질서의 확립，관광행정조직의 정비，관광 지의 지정，관광사업의 국제화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4）본법을 제정한 주요 목적은 당시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인 관광산업진흥은 통한 외화획득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1962년 에 현 한국관광공사인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하였다．이에 따라 「국제 관광공사법」이 제정되어 외국관광객 유치를 전담했다．「관광사업진흥 법」은 이후 4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75년에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 법」으로 분리되었다．

1970년대는 한국 관광법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관광진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1972년에는 관광 정

4）원철식，최영준，정연구，『관광법규와 사례분석』，백산출판사，2012，11면．

책 및 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개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공포하였다．본 법은 관광산 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기금 운용에 따라 생긴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 조성된다．（본법 제2조）이후 1975년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경주보문관광단지 등 국제 수준의 관광•위락 중 추지구인 관광단지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기반을 조성하 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5）본 법은 관광기본법 제정 으로 일차 분리 통합되고 2006년 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통폐합되었다．

한편，관광사업진흥법은 1975 년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분리 되면서 폐지되었다．관광사업법은 국제관계의 긴밀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국민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건전하게 유도하고，관광사업을 건전하 게 지도•육성하여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본 법에 따라 관광시설의 무조건적인 건설지원이나 관광사업의 불건전한 경영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일탈적 경영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고자 하였다．6）관광기 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는 종래의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외화획득 이라는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가 국민관광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

5）유문기，홍창식，김주승，『최신관광법규해설』，새로미，2010，38－39면．
6）관광사업법은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통폐합하였다． 11 년간 4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승인제 도 및 관광사업의 인허가절차 간소화，관광숙박업 등록제，관광지 지정제 등을 도입하였다．

다．7）본 법은 관광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법제상의 조치 등을 포함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8）

1980년대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로 국내관광 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1983년부터 부분적으 로 허용하였던 해외여행에 대하여 1989년부터는 완전 자유화되어 국 제관광뿐만 아니라 국민관광분야에서도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기였 다．9）국제대회 개최계기로 「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 적으로 제정되었고，기존의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통합 하여 「관광진흥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관광법제가 크게 바뀌었 다．관광기본법과 산하에 관광사업법，관광단지개발촉진법，관광진흥 개발기금법 등으로 구성된 다소 복잡한 법게 구조에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으로 구성된 단순 법제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10）

1990년대부터 2014년 현재까지 한국은 주로 2002년 월드컵，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 대회 개최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관광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1997 년에는 월드컵대비，「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2년 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고，2012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한편，1990년대 중반에는 국제 회의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 었다．1996년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제 회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였다．본 법은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 및 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7）장평권，＂한국관광 대도약을 위한 관광법제 정비방안＂，『관광학연구』 제 55권 제4호（통권 90），2011，359면．
8）장평권，위의 논문， 359 면．
9）유문기 외，위의 책， 40 면．
10）장평권，위의 논문， 359 면．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 도시 지정, 재원 마련 조치가 시행되었다.11)

이로써 한국의 관광법제는 관광기본법을 선언적 의미의 모법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 법 등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장평권, 위의 논문, 359 면.

> [그림1] 한중 관광법제 연혁 비교12)

12) 한국 관광법제에 대한 내용은 신용석, 심원섭, 『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 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8면 [그림 2-1] 우리나라 관광법제 의 변천과정을 보완하여 작성하였고, 중국 법제 변천과정은 저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

## III．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광 진흥법의 비교

## 1．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

중국은 여유법 제정을 통해서 관광산업 전체가 건강하고 질서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규범하고，중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더불어 산업의 발전 방식에도 변화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여행과 관광 의 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유법은 국가적인 차원의 법률 로서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본 법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관광 객과 경영자의 권리 보호，정부의 법집행 관리감독에 있어서 법률적 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 관광업이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법 에 의해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13）

중국 여유법은 총 10 개의 장과 112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 져 있고，총 칙，법률책임 및 부칙 이외에 관광객，관광계획，관광안전，관리감독， 관광 분쟁 처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중국 여유법의 주요내용 은 크게 다음의 6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 가．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보장 ${ }^{14)}$

13）张白菊，王兴华，앞의 논문，227면．
14）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은，刘莉，王泓，＂论《旅游法》对旅游者合法权益的全面保障＂，《安慰警官职业学院学报》第2卷（总第 68期）第5期， 2013 ；杨福斌，＂《旅游法》的十大制度创新＂，《法学杂志》第 10期，2013；韩玉灵，武冰欣，＂促进旅游业健康发展的重要保障－－与在《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出台之际＂，《前线》第 6 期， 2013 ；郭军礼，＂《旅游法》对旅行社发展及导游员管理的影响＂，《管理工程师》第4期，2013의 내용 참 고．
（1）관광객의 합법적 권익보장
중국 여유법은 제정 당시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위하여，동 법률 제 2 장에＇관광객＇이라는 전문적인 장을 마련하고，관광객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현재까지 중국과 외국의 관광입법에 있어서 관광객을 전문 장으로 만들어 관광객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해서 규범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15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는 여유법의 여러 조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총칙에서는 관광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제 1 조 동 법의 목적에＇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본 법을 제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이를 위하여 국가는 법에 따라 관광활동 중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제 3 조）이는 국가가 관광활동을 함에 있어 관광객의 권리 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는 의무이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관광활동’에 한해서만 여유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관광객의 권익을 보 호한다는 제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여유법은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관광사업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을 위하여 안전하고，건전하며，위생적이고，편리한 관광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다음으로 여유법 제2장은 전 장에서 관광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 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본 장의 규정에 따라，관광객은 관광에 대한 자주선택권을 가지며，관광사업자의 강제적인 거래행위 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또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며，사업자와의 약정체결에 대한 이행 청구권을 가진 다．나아가 관광객은 인격，민족적 풍습，종교적 신앙 등의 면에 있어 존중 받아야하고，장애인•노인•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관광객은 규

15）杨福斌，위의 논문， 19 면 참고．

정에 따라 편의와 특혜를 제공받는다. 관광객은 안전이 위협되거나, 신체 및 재산상에 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 보호 및 배상을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제 2 장에는 관광객이 관광활동 중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타인 권익 침해 금지, 위기 대응에 대한 협조의무, 입국 관공객의 불법체류 및 이탈 금지 등의 관광객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기본적인 관광요구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여 유법은 정부의 관광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2) 관광사업자의 합법적 권익보장

여유법은 관광객에 대한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우선, 총칙의 제정목적에 "관 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관광사업자는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또한 제 3 장 관광 발전계획과 육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광 산업의 발전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 에게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이 1) 질병에 걸려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 을 위협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관련 부처로 넘겨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법 또는 사회공 중도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4) 그 밖의 여행자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활동 중지 권고를 듣지 아니하여 이를 제 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관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광 안전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관광사업자는 정부 및 관광객과 함께 그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
（3）가이드의 합법적 권익보장
여유법에는 관광객 및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이드의 권익 보호 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다．중국 관광에 저가관광，옵션관광，강압적 쇼핑 유도，질 낮은 관광 서비스 제공 등의 폐해는 가이드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에 도 원인이 있다．16）따라서 동 법은 가이드의 권익을 법률로써 보호하 기 위해，우선 여행사 설립 조건에 반드시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또한 여행사는 고용한 가이드와 노동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고，여행사가 가이드의 임금을 지불하고，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제38조1항）여행사가 임시로 가이드를 고 용하여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기획관광（단체관 광）계약 체결 시 가이드의 서비스 비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 다．（제60조 3항）

## 나．관광 계획 및 육성

여유법은 관광 계획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제3장의 조문에 포함시 키고 있어，관광 자원의 보호，개발 및 이용이 보다 용이 하도록 하고 있다．우선，동 법에 따라 중국 관광의 발전 계획 및 육성의 법률 주체 는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된다．（제17조）관광발전 계획 의 내용으로는 관광 상품의 개발，관광 서비스의 품질 향상，관광 문화 의 조성，관광 이미지 보급，관광 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요구 및 관광 육성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특정 지방의 핵심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그에 대한 특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특정지역 내의 관광사업 및 시설 그 리고 서비스부대시설에 대하여 특별요구지침을 내놓을 수 있다．

16）杨福斌，앞의 논문， 22 면 참고．

다음으로 동 법에서는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산업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법률 주체인 국무원 과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게 몇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 휴양체계 구축, 지역 간 관광협력 추진 체제 구축 및 관광 노선 과 상품 개발, 관광과 공업•농업•상업•문화•보건•스포츠•과학기술 등 분야의 융합 추진, 소수민족지역•낙후된 혁명기지•빈곤지역의 관광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고, 관 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관광 공공 서비스 및 관광 이미지 보급에 힘쓰도록 한다. 또한 동 법에 따라 국가는 관광 종사자들의 자질 향 상을 위해서 관광 직업 교육 및 연수를 장려하거나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여유법은 관광지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관광 계획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 관광 계획을 세울 때 기타 계획과 다방면으로 연결하여 고려하며, 3) 관광 자원의 이용 에 있어 관광자원을 보호하면서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7) 이를 위해서 동 법은 관광지 입장료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지의 관광객 수 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공공자원을 이용한 관 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지 내의 관광장소•운송수단 등의 요금은 정부 의 정가 또는 정부 고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입장료 가격의 상승 및 임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통제하였다.(제43조) 공익성 있는 도 시공원•박물관•기념관 등도 점차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도록 하였고, 입
17) 국가는 각 시장의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관광 자원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설립 한 관광지는 공익성 구현을 기반으로 한다.(제4조) 자연자원, 문화재 등 인 문 자원을 '관광'에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1) 법률•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2) 자원•생태 보호와 문화재 안전 관리 기준에 맞아야하며, 3) 자 원의 지역 내 상호 연계성, 문화적 대표성, 지역 특수성, 군사시설 보호 측 면을 고려해야한다.(제21조)

장료는 반드시 공시하며, 입장료 상승 시 6개월 이전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 입장료는 개별 입장료의 통합 금액보다 커서는 안 되며, 관광지 내의 주요 관광 항목이 고장 나 관광객에게 개방 또는 서비스 제공을 잠시 중단 할 경우 그에 상응 하는 요금은 반환해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 한편, 동 법 45조는 관광자원 보 호를 위해 관광지의 관광객 수용 인원에 대해서 제한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관광지에 대해 주무 부처가 최대 관광객의 수용 범위를 심 의하고 게시하여 관광객의 수용 량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 다. 관광사업 및 관광서비스계약 규범

여유법은 제4장에 관광사업자에 대해 규범 하는 조항을 마련해 놓 고 있는데 이는 비단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과 관련된 모 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저가상품, 강제 쇼핑, 옵션관광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불법 영업행위, 숙박시설 사업자의 이중매매, 가격상승, 기반시설의 미비 및 질 낮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 된 영업행위, 관광 차량 운행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 등이 본 장의 적 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금지해야한 다.18) 우선 여행사는 허위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법률과 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는 관광 항목 및 활동을 주선하 여서는 안 된다. 비합리적인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하여 관광객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한 쇼핑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통하여 수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여서도 안 된다. 여행사는 관광객을 조직•접객하는 경우 구체적인 쇼핑장소를 지정하여서는 안 되며, 별도 의 여행항목을 넣어서도 안 된다.
18) 제 32 조, 제 33 조, 제 35 조.

가이드와 인솔자는 관광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행 사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인솔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 다.(제 40 조) 또한 임으로 여행일정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활동을 중지 하여서는 안 되며,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 에 참가하도록 유도, 기만,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제41조2항) 이와 더불어 관광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 매•구매하는 경우, 뇌물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 5 장은 관광서비스 계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적으로 관광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시 관광사업자의 의무를 명시 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의무, 설명의 의무, 여행 일정 제공의 의무, 손 해배상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가항력적인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에 따른 책임 부담과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라. 관광의 종합적 협조와 관리감독

중국 여유법은 관광의 종합적 협조를 마련하여 관광 관련 위법행위 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의 지방인민정부는 여행의 위법행위 관한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를 구축하도록 하고,(제89조) 관련 단체와 개인은 법에 의거한 감독 및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다.(제87조) 관광주관부처와 관 련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리 감독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다. 관할 부처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 서면으로 관련부처에 통지 및 인계하도록 하였다. (제88조)

특히 동 법은 관광 시장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 관련 영업 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독 및 점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83조) 감독 내용으로는 1) 여행사의 영업 및 가이드.인솔서비

스가 영업•개업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2) 여행사의 영업 행위, 3) 가이드와 인솔자 등 관광 종사자의 서비스 행위 등을 포함한다.

마. 관광 안전보장

중국 여유법은 관광 안전 보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제76조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관광안전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목적지의 안전 및 위험 정 보를 간계별로 구분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 안전보장 규정은 총 3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사전 예방제도. 사전예방제도는 정부의 위험 감시 및 대응관리 시스템과 사업자의 안전평가, 사전 설명 및 경고, 응급구조기술 훈련 등의 의무 를 포함한다. 둘째, 안전관리 체제.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구조, 여행자 의 보고 및 구조, 여행자의 안전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포함한다. 셋 째, 사후처리제도. 이는 정부 및 관광 사업의 필요한 처리와 관광객의 법에 따른 비용 부담의 의무 등을 포함한다.

바. 관광 분쟁해결

동 법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일괄적으로 관광 불만 처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불만이 신고 되면 처 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객이 관광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 우, 1) 합의, 2) 소비자협회•관광불만처리기관 또는 관련 조육기구에 중재신청, 3) 관광사업자와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 요청, 4)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2. 한국 관광진흥법의 내용

한국 관광진흥법은 1975년 제정된 관광사업법이 1986년 전면 개정 되면서 법제명도 관광진흥법으로 바뀌었다. 관광진흥법은 1986년 이 후 3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법은 총7장 86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 장 관광사업, 제 3 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 5 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부수적으로 따른다. 한 국은 관광기본법이 있긴 하지만 주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실 질적으로 관광진흥법이 한국 관광사업의 진흥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은 한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 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은 크게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 발, 그리고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 져 있다.
[그림 2] 관광진흥법의 구성체계19)

19) 신용석, 심원섭, 앞의 책, 32면 [그림 4-1] 「관광진흥법」의 구성체계.

가. 관광여건의 조성
관광여건의 조성이란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구비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켜 복지관광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은 관광여건 조성을 위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와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광 홍보 활동 조정, 관광선전물 심사,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또한 관 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관과에 대한 정보 활용 및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 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 관 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의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활성화하여 관 광의 여건 마련을 촉진한다. 또한 동 법은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의 개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관광체험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등을 통해 건전한 관광 풍토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법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제49조1항) 또한 본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 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동법 제5장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 관광지의 지정, 관광지 조성계휙의 수립 및 시행, 관광단지의 인 허가, 그리고 관광지의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지 개발에 관한 장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마련 해 놓고 있다. 관광특구지정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

치 촉진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관광특구에 대 해서는 특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를 방문하 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 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 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적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지정의 취소•면적조정•재선권고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관광사업 분류 및 규제 내용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 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관광사 업을 크게,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3) 카지 노업, 4) 유원시설업 등으로 나누고 있다. 동 법에서는 관광사업의 등 록(제4조) 또는 허가와 신고(제 5 조),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제7조), 카 지노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제29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준수사 항(제29조) 등 관광사업에 대한 많은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IV. 중국 여유법 시행의 영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중국 여유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

가. 여행사에 대한 영향

앞서 살펴 본 중국 여유법에서 가장 많은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여행사 및 그와 관련된 종사자에 관한 것이다．여유법은 이들 에게 여행사의 설립 및 경영，계약 이행의 의무 등 법률상 책임과 의 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책임 및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다 명확히 되었다．여유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여 행사에 대한 법률 요구가 높아 진 것이다．이에 따라 여유법 시행으 로 중국 국내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사들까지도 구조조정이 불 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0)}$

특히나，여유법 제 35 조는 여행사의 저가 관광상품 판매，옵션관광， 강제쇼핑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의존 해 오던 여행사들은 영업행위가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여유법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여유법 시행으로 단체관광상품의 가격이 합리적인 선으로 상 승하게 되면서，여행사 간에 출혈 저가 경쟁이나 관광상품에 대한 담 합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단체관광상품 보다는 가격이 비교적 싼 자유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단체관광 위주의 상품을 개발하던 여행사들은 새로운 다양한 종류의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온라인 관광에 대한 영향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관광객의 분산으로 인터넷 관 발전하고 있다．${ }^{211}$ 대부분은 여행사가 자신들의 경영업무로써 온라 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그 중에는 관광업무 경영자격이 없는 사람이 온라인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법률의

20）张丙英，＂《旅游法》对旅行社与游客的影响分析＂，《科技信息》 第4期， 2014，243页；叶海玲，＂浅淡旅游法对旅游业的影响及旅游社的应对策略＂，《旅游管理研究》12月下半月刊，2013，14－15页。
21）宋瑞，앞의 논문， 36 면．

관리감독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하여，여유법 제48조 온라인 여행사 관련규정에서는＂인터넷을 통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법에 따라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하며，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그 영업허가증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광사업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제48조2항）인터넷 서 비스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홈페이지 상에 정보를 공시하여 투명도를 높일 경우，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관광 상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2）

## 다．관광지에 대한 영향

2007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矯于进一步做好当前游览参观点门票价格管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 정 부가 적정 가격을 정하고， 3 년 동안 입장료 상승을 금지 하였다．23）하 지만 2013년까지도 각 지방 관광지 입장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 }^{24)}$ 하지만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 관광지의 입장료 상승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5）여유법 제43조가 관광지의 입장 료 가격 상승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규정 위반에 대해 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공익성 있 는 관광지를 점차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국의

22）张百菊，王兴华，앞의 논문，227면．
23）从案例看《旅游法》带来的变化，《A VIEW OF LABOR UNIONS》， 2013，7页。
24）2013년 쓰촨에 있는 어메이산（峨眉山）입장료를 올리더니，이어서 티벳 의 쁘다라꿍（포탈라궁）입장료가 두 배로 올랐다．2013년에는 후난의 펑황 고성（凤凰古镇）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였다．兀婷兀晶，＂对《旅游法》的几点解读＂，《山西财政税务专科学校学报》，第15卷第3期，2013，70页。
25）胡抚生，＂从从旅游法》出台看我国旅游价格监管的新思路＂，《价格月刊》总第436期，2013，19页。

관광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개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 입장료를 올려서 돈을 벌어들이던 경영 형 태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26)

또한 여유법의 시행으로 관광지역 및 관광지의 개발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지게 되었다. 제 42 조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관광 부대서비스와 보조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및 제 도, 안전위험평가를 통해 안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시설과 생태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숙박업소에 대한 영향

현재 중국 호텔업계에서는 업계 내에 공인된 등급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 하다. 따라서 각 호텔들은 스스로 '백금5성급', '6성급', '7성 급 등의 명칭을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유법 시 행으로 이러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여유법 제50조 는 관광사업자가 관련 품질기준등급을 취득할 경우에 그 시설과 서비 스는 기준에 미달되어서는 안 되고, 품질기준등급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품질등급의 명칭과 표식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많은 호텔들이 호텔 내 상점이나 식당을 임대하여 외부 기업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는데 이 또한 크게 제한 될 것으로 보인 다. 여유법 제54조에 따라, 만약 외부 사업자의 경영 행위가 관광객에 게 손해를 끼칠 경우, 임대를 한 호텔 측도 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26)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145 개 5 A 급 관광지 중에 상업성 관광지는 $9 \%$ 밖에 차지하지 않고, $91 \%$ 가 모두가 자연자원, 문화유산 그리고 도시공공건설을 통해 관광객을 위치하 고 있었다. 宋瑞, 앞의 논문, 35 면.

## 2．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여유법의 시행으로 중국 여행사 뿐 아니라 한국의 여행사에게도 비 상이 걸렸다．한국의 지방 소규모 여행사들은 주로 중국 또는 대형 여행사로부터 접객을 받아 영업하는 상황이다．따라서 중국의 단체관 광객이 줄어들 경우，한국 소규모 여행사들의 영업수지가 크게 악화 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 다．27）실제로 중국 여유법 시행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현재 한국의 관광업계에 대한 영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옵션관광 및 쇼핑 강요 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이에 의존하던 업계에서는 뚜렷한 관광객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고，반면 그렇지 않은 업계에는 여유법 시행 이 관광객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8）

한편，2014년 4월 18 일 중국 국가여유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새로운 관광 표준계약서를 공포하고 곧 바로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면 서 중국 뿐 아니라 국내 관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관광표준계약 서는 지난해 시행된 여유법에서 전면 금지했던 국내외 관광 상품에 쇼핑 강요 및 옵션관광의 경우 여행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

27）김영재，박은엽，신민영，＂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부산의 관광산업 육성방 안＂，${ }^{『} \mathrm{CHINA}$ 연구』제 16 집，2014，183－184면；신동일，정지형，＂중국의 여 행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 전략＂，JDI Focus，No．167，2013，4면．
28）신익환，＂中 여유법 시행 6개월．．항공업계 ‘이상무＂＂，뉴스토마토， 2014．04．16．＜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0977＞（방문날짜： 2014．04．20．）；김연태，＂中 여유법 6개월경과．．．경기남부， 2 배 증가．．북부，절 감 감소＂，중부일보 2014．04．14．〈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987＞ （방문일자：2014．04．20．）；문정혁，＂中 여유법 시행 6개월．．．중국 관광객 증가 세 서서히 회복＂．제주일보，2014．03．31．＜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 $\mathrm{html} ? \mathrm{idxno}=1676085>$（방문일자：2014．04．20．）

서상에 명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해외 관광 상품의 요금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29)}$

## 나. 한국 관광입법에 미치는 영향

현핸 한국의 관광법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광기본법을 중심 으로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법률조문이 선언적 의미가 강해 별다른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못 하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관광 진흥법이 관광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들을 규범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대해 관련 종사자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은 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여유법이 시행이 되 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방 재정을 꾸려 가던 지방 정부까지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는 관광업 관련하여 지방조례라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 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 }^{30)}$ 1986년 법명을 바꾸어 새롭게 탄생한 관광진흥법은 이후 몇 차례 완전 및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 러 가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현행 관광 관련 법제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광 관련 기본법인 관광기본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사문화되 고 있는 관광기본법을 보다 강화하여 관광과 관련한 정부시책의 기본 방향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관련 개별법들과의 유기적인 체계화를 통 해 법적 의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31) 이를 통하여 관광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9) 중국 "관광객 사전 동의 시 쇼핑 허용...표준계약서 시행", 매일경제, 2014.04.1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1014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5C&no=610144)(방문일 자: 2014.04.20.)
30) 신동일, 정지형, 위의 보고서, 5 면.
31) 장평권, 앞의 논문, 364 면.

둘째，관광진흥법의 실효성 문제이다．관광진흥법의 제정 목적은 관 광여건을 조성하고，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하지만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관광사업과 관광개발에 편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조항마저도 산업의 육성보다는 산업을 규제하는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어32）산업별 강점과 다양성을 활성화시켜 주는 데는 미진하다．또한 관광소비자에 대한 보호적 측면，관광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책적 의지 등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 다．중국이 여유법을 시행하면서 법률 전체에 관광소비자 권익보호， 나아가서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가이드의 권익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 력한 의지를 담은 것과는 대조된다．

셋째，법률이 관광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 하고 있 다．일본의 경우 시대변화에 따라 「생태관광추진법」，「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관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노력을 기하고 있 다．${ }^{33)}$ 중국의 경우도，여유법 제정 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을 통한 온라인 관광에 관한 규제를 여유법에 포함시키면서 급변하고 있는 관광문화를 법률에 반영하기도 했다．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 정부가 녹색관광 및 공정관광 시대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뒷 받침해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34)}$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내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른 국내 관련업계들에 미치는 영향으로， 관광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항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한

32）관광진흥법의 법적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송성인，＂관광진흥 법의 법적 규제와 육성에 관한 연구＂，『산업제관연구』제28권 2호（제44편）， 2008，252－254면 참고．
33）장평권，앞의 논문， 361 면．
34）장평권，앞의 논문， 362 면．

국은 현재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 분야를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산 업분야에 있어서도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산업을 분류하는 것과는 달리 산업간 융복합이 이루어져 이러한 경계가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따 라서 중국의 여유법 시행 등과 같은 외부에 의한 동기 유발이 아니더 라도, 관광 및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여 건을 반영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관광법제개선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의 진흥과 관광산업의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 V. 결 론

중국 여유법의 시행은 한국의 관광법제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해 여 러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우선 여유법 시행이 한국의 국내 관광업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경영 구조 개선 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 민 소득 증대에 따라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여 가 문화도 바뀌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관광시장의 엄청 난 소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엄청난 수의 중국 관광 소비자들은 그 수에 못지않게 관광 소비패턴도 다양하다. 명품 쇼핑을 위한 프랑스 파리관광, 스키 관광을 위한 스위스 융프라우 관광 등을 선호하는 소 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때 중국이 분유파동을 격으면서 중국의 소위 '신세대 맘'들이 한국으로 분유 등 신생아 용품 쇼핑을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중국의 관광 소비는 점점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는데, 한국 관광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원가보다 싼값으로 단체관광객을 모 집하고, 옵션관광 및 강제 쇼핑 등으로 손실부분을 채워가던 영어영

업 형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여유법 중 저가상품 판매 금지, 옵션관광금지 및 강제쇼핑 금지 등의 조항 하나에 한 국가의 관광업계가 술렁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보다 창조적이고 한 국 고유의 개성이 돋보이는 관광사업,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으로 우리의 관 광시장은 중국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개방될 것이다. 이 에 대한 산업계의 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관광법제의 낙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한국과 중국 의 관광법제의 제정 연혁을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2000년 대 들 어서 관광 관련 법규가 활발히 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관광숙발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 이외에 별다른 제정이 없었다. 관광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은 1970년대 제정 되어 현재까지 잠자고 있고, 1980년대 새로 탄생한 관광진흥법은 여 러 차례 완전 개정 및 부분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그 내용은 크게 바 뀌지 않았다. 더욱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고 관 광진흥을 위한 법이기 보다는 관광 사업 규제를 위한 법률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통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관광진흥 및 관광 사업의 육성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법률이 작동하고 있 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관광법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 지 못 하고, 오히려 관련 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빠르게 변화하 고 있는 국내외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관광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신용석，심원섭，『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6

원철식，최영준，정연구，『관광법규와 사례분석』，백산출판사， 2012 유문기，홍창식，김주승，『최신관광법규해설』，새로미， 2010 김영재，박은엽，신민영，＂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부산의 관광산업 육 성방안＂，『CHINA 연구』제16집， 2014

신동일，정지형，＂중국의 여행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 전략＂，JDI
Focus，No．167， 2013
송성인，＂관광진흥법의 법적 규제와 육성에 관한 연구＂，『산업제관 연구』제28권 2호（제44편）， 2008

장평권，＂한국관광 대도약을 위한 관광법제 정비방안＂，『관광학연구』 제55권 제4호（통권 90）， 2011

신익환，＂中 여유법 시행 6개월．．항공업계 ‘이상무＂，뉴스토마토， 2014．04．16

김연태，＂中 여유법 6개월경과．．．경기남부， 2 배 증가．．북부，절감 감 소＂，중부일보，2014．04．14

문정혁，＂中 여유법 시행 6개월．．．중국 관광객 증가세 서서히 회복＂．
제주일보，2014．03．31
중국＂관광객 사전 동의 시 쇼핑 허용．．．표준계약서 시행＂，매일경제， 2014．04．18

宋强，＂我国构建旅游法治环境的现状，问题与对策分析＂，《法律研究》第6期，2013

宋瑞，＂产业发展视角下的《旅游法》＂，《价格理论与实践》，第8期总第350期， 2013

刘莉，王泓，＂论《旅游法》对旅游者合法权益的全面保障＂，《安慰警官职业学院学报》第2卷（总第68期）第5期，2013

杨福斌，＂《旅游法》的十大制度创新＂，《法学杂志》第 10 期， 2013韩玉灵，武冰欣，＂促进旅游业健康发展的重要保障－－与在《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出台之际＂，《前线》第6期，2013

郭军礼，＂《旅游法》对旅行社发展及导游员管理的影响＂，《管理工程师》第4期，2013

张丙英，＂《旅游法》对旅行社与游客的影响分析＂，《科技信息》 第4期， 2014

叶海玲，＂浅淡旅游法对旅游业的影响及旅游社的应对策略＂，《旅游管理研究》12月下牛月刊， 2013

兀婷兀晶，＂对《旅游法》的几点解读＂，《山西财政税务专科学校学报》，第 15 卷第 3 期， 2013

胡抚生，＂从《旅游法》出台看我国旅游价格监管的新思路＂，《价格月刊》总第436期， 2013

任震宇，＂《旅游法》将规范旅游业发展＂，中国消费网•中国消费者报， 2013．05．03

从案例看《旅游法》带来的变化，《A VIEW OF LABOR UNION S》， 2013

「관광진흥법」 조항별 주요내용 일람표


| 구 분 |  | 해당조항 | 주요내용 |
| :---: | :---: | :---: | :---: |
|  |  | 제30조 | 기금 납부 |
|  | 제5절 유원시설업 | 제31조 | 조건부 영업허가 |
|  |  | 제32조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 33 조 | 안전성검사 등 |
|  |  | 제34조 | 영업질서 유지 등 |
|  |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 제35조 | 등록취소 등 |
|  |  | 제36조 | 폐쇄조치 등 |
|  |  | 제 37 조 | 과징금의 부과 |
|  | 제7절 관광종사원 | 제38조 |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  |  | 제 39 조 | 교육 |
|  |  | 제 40 조 | 자격취소 등 |
| 제 3 장 관광사업 자 단체 |  | 제41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
|  |  | 제 42조 | 정관 |
|  |  | 제43조 | 업무 |
|  |  | 제44조 | 「민법」 의 준용 |
|  |  | 제 45 조 | 지역별 - 업종별 관광협회 |
|  |  | 제46조 |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제 4 장 <br> 관광으 <br> 진흥과 <br> 홍보 |  | 제47조 | 관광정보 활용 등 |
|  |  | $\text { 제 } 47 \text { 조의 }$ $2$ | 관광통계 |
|  |  | 제 48 조 |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  |  | $\begin{gathered} \text { 제48조의 } \\ 2 \end{gathered}$ | 지역축제 등 |
|  |  | $\begin{gathered} \text { 제 48조의 } \\ 3 \end{gathered}$ |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  |  | $\begin{gathered} \text { 제 } 48 \text { 조의 } \\ 4 \end{gathered}$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  |  | $\begin{gathered} \text { 제 } 48 \text { 조의 } \\ 5 \end{gathered}$ |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
|  |  | $\begin{gathered} \text { 제48조의 } \\ 6 \end{gathered}$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
|  |  | $\begin{gathered} \text { 제 } 48 \text { 조의 } \\ 7 \end{gathered}$ | 인증의 취소 |
|  |  | $\begin{gathered} \text { 제 } 48 \text { 조의 } \\ 8 \end{gathered}$ |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 제5장 <br> 관광지 <br> 등의 <br> 개발 | 제1절 관광지 <br> 및 <br> 관광단지의 <br> 개발 | 제49조 |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  |  | 제50조 | 기본계획 |
|  |  | 제51조 | 권역계획 |
|  |  | 제52조 | 관광지의 지정 등 |
|  |  | 제53조 | 조사•측량 실시 |


| 구 분 |  | 해당조항 | 주요내용 |
| :---: | :---: | :---: | :---: |
|  |  | 제54조 | 조성계획의 수립 등 |
|  |  |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 |
|  |  | 제56조 |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  |  | 제5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
|  |  | $\begin{gathered} \text { 제57조의 } \\ 2 \end{gathered}$ |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
|  |  | 제 58 조 | 인 - 허가 등의 의제 |
|  |  | 제 58 조의 <br> 2 | 준공검사 |
|  |  | $\begin{gathered} \text { 제 } 58 \text { 조의 } \\ 3 \end{gathered}$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  |  | 제59조 | 관광지등의 처분 |
|  |  |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 용 |
|  |  | 제61조 | 수용 및 사용 |
|  |  | 제62조 | 삭제 <2009.3.25> |
|  |  | 제63조 | 선수금 |
|  |  | 제64조 |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
|  |  | 제65조 | 강제징수 |
|  |  | 제66조 | 이주대책 |
|  |  | 제67조 |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  |  | 제68조 | 삭제<2009.3.25> |
|  |  | 제69조 | 관광지등의 관리 |
|  | 제2절 <br> 관광특구 | 제70조 | 관광특구의 지정 |
|  |  | 제71조 |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  |  | 제72조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  |  | 제73조 |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  |  | 제74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 제6장 <br> 보칙 |  | 제75조 | 삭제 <2007.7.19> |
|  |  | 제76조 | 재정지원 |
|  |  | 제77조 | 청문 |
|  |  | 제78조 | 보고•검사 |
|  |  | 제79조 | 수수료 |
|  |  | 제80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
| 제7장 <br> 벌칙 |  | 제81조 | 벌칙 |
|  |  | 제82조 | 벌 칙 |
|  |  | 제83조 | 벌 칙 |
|  |  | 제 84 조 | 벌칙 |
|  |  | 제85조 | 양벌규정 |
|  |  | 제86조 | 과태료 |

## 「여유법」 조항별 주요내용 일람표

| 구분 | 해 당조항 | 주요내용 |
| :---: | :---: | :---: |
| 제1장 총칙 | 제1조 | - 제정목적 |
|  | 제2조 | - 적용범위 |
|  | 제3조 | - 국가의 기본 책무 |
|  | 제4조 | - 관광업 발전 원칙 |
|  | 제5조 | - 국가의 관광업 발전 선도 방식 |
|  | 제6조 | - 국가 및 관광사업자의 책무 |
|  | 제7조 | -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책무 |
|  | 제8조 | - 관광산업기구의 자율 관리 |
| 제2장 관광객 | 제9조 | - 관광객 권리(관광상품 및 서비스 부문) |
|  | 제 10 조 | - 관광객 존중 |
|  | 제11조 | - 사회적 약자계층의 관광객 배려 |
|  | 제 12조 | - 관광객 권리(안전 부문) |
|  | 제 13조 | - 관광객의 관광활동 중 준수 의무 |
|  | 제 14조 | - 관광객의 타인 권익 침해 금지 |
|  | 제 15조 | - 관강객의 위기 조치 협조 의무 |
|  | 제 16 조 | - 출입국 관광객의 불법체류 및 이탈 금지 |
| 제3장 <br> 관광의 발전계획과 육성 | 제 17조 | -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발전계획 수립 |
|  | 제 18 조 | - 관강발전계흭 내용 범위 |
|  | 제 19 조 | - 관광발전계휙과 유관계휙과의 연계 |
|  | 제20조 | - 유관계흭 수립 시 관광 개발 고려 |
|  | 제21조 | - 관광자원 이용 및 보호 시 준수 및 고려사항 |
|  | 제22조 | - 관광발전계획 시행상황 평가 및 공표 의무 |
|  | 제23조 | -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업 발전 지원 |
|  | 제24조 | -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 개발 내용 |
|  | 제25조 | - 국무원 및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이미지 홍보업무 |
|  | 제26조 | -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안내 서비스 및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
|  | 제27조 | - 국가의 관광 직업교육 및 연수 지원 |
| $\begin{gathered} \text { 제4장 } \\ \text { 관광사업 } \end{gathered}$ | 제28조 | - 여행사 설립 및 관강서비스 제공 요건 |
|  | 제29조 | - 여행사 업무 범위 |



| 구분 | 해 당조항 | 주요내용 |
| :---: | :---: | :---: |
|  | 제61조 | - 단체관광객의 개인상해보험 가입 관련 규정 |
|  | 제62조 | - 패키지관광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관광객 고지사항 |
|  | 제63조 | - 단체관광 시 약정인원 수 미달 관련 규정 |
|  | 제64조 | - 패키지관광 계약 권리 및 의무의 제3자 양도 관련 규정 |
|  | 제65조 | - 여행일정 중 관광객의 계약 해지 관련 비용 처리 규정 |
|  | 제66조 | - 여행사의 계약 해지 가능한 관광객 조건 |
|  | 제67조 | - 불가항력적 또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여행일정 차질 발생 시 처리방식 관련 규정 |
|  | 제68조 | - 여행일정 중 계약 해지 시 관광객의 귀환 관련 규정 |
|  | 제69조 | - 여행사-랜드사 위탁계약 체결 관련 규정 |
|  | 제70조 | - 여행사의 관광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규정 |
|  | 제71조 | - 여행사-랜드사 손해배상 챙임 관련 규정 |
|  | 제72조 | - 관광객 원인 제공 시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규정 |
|  | 제73조 | - 관광객의 여행일정 계희 및 변경 관련 규정 |
|  | 제74조 | - 관광객의 위틱에 따른 여행사의 관광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
|  | 제75조 | - 숙박사업자의 숙박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
| 제6장 <br> 여행 의 <br> 안전 | 제76조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인전 업무 담당 규정 |
|  | 제77조 | - 국가의 여행목적지 안전•위험정보 제공 제도 수립 |
|  | 제78조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체계 및 대책 마련 |
|  | 제79조 | - 관광사업자의 위기 대응 대책 마련 |
|  | 제80조 | - 관광사업자의 관광안전 항목 관련 관광객 대상 설명 또는 경고 의무 |
|  | 제81조 | - 관광안전 사고 발생 시 관광사업자의 긴급 조치 및 보고 의무 |
|  | 제82조 | - 관광안전 사고 발생 시 관강객의 구조 및 보호 요청 권리 |
| 제7장 관광에 대한 감독과 관리 | 제83조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 감독 및 관리 의무 |
|  | 제84조 | - 관광 주관부처의 감독•관리 직책 수행 관련 금지 사항 |
|  | 제85조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 감독•검사 권리 항목 |
|  | 제86조 | - 관광 주관부처의 감독•검사 수행 관련 규정 |
|  | 제87조 | - 감독•검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 |
|  | 제88조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 감독•검사 직책 수행 시 동법 규정 위반 행위 처리 의무 |
|  | 제89조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광 위법행위 처리정보 |



## 《어행법（旅游法）》의주요내용화 쟁점






## I．시작하며



## II. 중국 《여행법》 의 제정과 윕법졍과


여행법 의 청격

## 중국 여행쌉

- 여행활돔영역에서 각좀 사회관계를 규울하는 법출규범의 기념 충칭
- 2013.4.25.제 12 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둠과/곤포, 2013년 10월 1일 시행
- 죽가의 법출, 법구

적중볌

- 지방의 여행관런 법구
-국제조약이나 협햑


## 입법 펠요성

## 여행시장의 건전한 반전 도로

－득히 숙낙업에 대하여는 단지 법구와 법규성문건만이 존재

여행자원에 데한 보호
－여행자원의 양적／질적 발전 펼영
－여행차원의 합리적 개발／이옴／보호

－여행객은 여행계약의 중요한 주체
－여행객은 여행상품 구매와 소비 중 정보약자



## 풍일여항뱁규로서의 기눙



## 여행객의 권리보호와여 행게약



## 여행사의 영업햄위 네용



## 여 항서비스제약퐈 여 행분쟁



접객여행사/
가이드의 서비드
계약의 취츠 해지

- 제63ㅈㅈ(퀴소)
- 여햄서비스 내영 건뗭(쩨60z)
- 체65 ㅈ, 쎄68ㅈㅈ (해 지)


## 여행 안전퐈 법률책임

|  | 여힝안전 |
| :---: | :---: |
|  | －정부의 긴굽상창 대응대비혝 마련（제 783：） <br> －여형 사의 긴굽상촹 데 응대비 해 마련 （제79조） <br> －떠형 사의 사고벼고의주（제81주） <br> －뎌형자의 사고벼고의 주（제823자） |

## 밥 를챙웁

－졔 9 하c



｜하위중년 듬（제973）

## IV．쟁점 과 여행시장에의 영향



## 여행계악의 이땡과정



## 여행겍의 퀀리보호와 계악해게

> 혀형객에게 해제/해지 사휴 반앵(제 $663_{3}^{3}$ )

여항사의 례악해레/ 해치


권리? 의무?

## ＇덤평여행＇또는＇零负团费＇의 울영원리



## 기타 여항환련 법제와의 콴제



## 여행시장에의 영향

- '덤푱여행' 업무행배 근절

여행사

- 일시적 여행객수의 감소
- 여행상품 개발의 다향성
- 여행멉 관계자 간의 관계 개선

셔항겍

- 여행객의 퀀리보호 강하
- 여행계약케결 상의 평둥적 주체 유지
- 여행비옹상숭으로 인한 밀시적 여행 연기

여황시졍

- 여행이미지 향상
- 여행상품의 다향성 기대
- 공정경쟁 기대
- 여행시장의 정부 간여 우려


# 중국 《여행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 

김 정 진
（동아대학교 강사）

《목 차》
I．시작하며
ㅍ．중국《여행법》의 제정과 입법경과
III．중국《여행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
IV．중국 《여행법》의 쟁점과 여행시장에의 영향 V．맺으며

## I．시작하며

중국은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30 여 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 루었다．이러한 경제발전으로 여행객의 수는 증가하였으며，여행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1）하지만，중국은 여행객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한 관광지와 문화재의 훼손과 소실에 대하여 여행산업의 성장에 따른 역효과를 감수하여야 했다．이에 중국은 지난해에 《여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여행산업과 관련하여 중국은 그동안（1）여행산업과 관련한 전반적

[^0]규율법제의 부제，（2）덤핑여행으로 인한 여행산업의 부정적 변질에 대 한 대책마련，（3）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관광이미지 실추，（4）여행주관 부문의 관리감독약화 등이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물론 여행산업발전 전반에 대하여 고심하였다．특히 이른바＇덤핑여행＇은 여행객들로 하 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 지만，여행객의 의무쇼핑으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객의 중국에 대한 관광이미지 실추를 낳게 되었다．또한 이러한 덤핑여행은 여행상품의 획일화로 인하여 다양성을 잃게 하여 여행사의 수익성 악화와 무자격 의 여행가이드 난립 등으로 여행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국의 《여행 법》에 대하여 검토한다．먼저，《여행법》제정 이전의 여행관련 법제 의 입법배경을 알아보고，《여행법》의 입법필요성과 입법취지 등을 알아본다．그리고 《여행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 한다．또한 중국이 상기에서 밝힌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행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여행법》이 차후 여행객，여행사와 여행 가이드 등의 여행사업종사자，관광지와 문화재 보호 등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칠 것인지 전망한다．아울러 여행활동에 있어 발생한 여행분 쟁의 해결과 법적책임도 함께 검토한다．

## ․ 중국《여행법》의 제정과 입법경과

## 1．《여행법》의 제정과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여행 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이하 ‘여행 법’이 라 함）는 2013년 4월 25 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어，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행법은 여행활동영역에서 각종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범의 총

칭이다．2）다시 말해，여행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률규 범의 총화이다．이처럼 동법을＂각종 법률규범의 총칭＂을 강조함으로 써 개념이 광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협의의 여행법률인 《여 행법》을 포함하여，기타 여행활동의 각종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과 법규도 포함한다．또한 국무원이나 여행주관부문이 제정한 단 행여행행정법규와 부문규장도 포함한다．즉，《여행법》의 개념은 국 가의 법률，법규는 물론 지방의 여행관련 법규도 포함하며，정부의 서 명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얻은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도 포 함한다．

《여행법》은 여행관련법규 중 최상위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즉， 여행관련법규의＇지도성＇，‘헌법성’의 법률이다．그러므로 비록 《여행 법》이 상기에서 말한 협의의 여행법률이지만，그 적용범위는 모든 여행관련법규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3）

## 2．입법배경

가．《여행법》의 제정필요성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행산 업 또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4）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 인들은 여행을 좋아하고 문화교류에 있어 점차적 발전의 성과를 거둔

[^1]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하지만 이처럼 여행산업 및 여행관련 산 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정부의 과도한 간여나 무관 심으로 인하여 여행경제의 불균형적•불공정적 시장형성으로 여행산업 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여행객의 권리보호가 절실하게 되었다．5）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여행법》의 부재로 인하여 여행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즉，여행업 운영에 대한 합법적 권익보 장이 어려웠는데，숙박업，여행사，관광지 등에 있어，특히 숙박업에 대하여는 단지 법규와 법규성문건만이 존재하였는데，예를 들면，《여 행기본건설관리잠행방 법（旅游基本建设管理暂行办法）》，《엄격한 합자， 합작건설을 위한 관광호텔 심사절차에 관한 통지（矯于严格执行合资，合作建设旅游饭店审批程序的通知）》，《여관업 치안관리방법（旅馆业治安管理办法）》등은 숙박업을 건립하거나 경영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 는 되지만，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권위 있는 법률보장으로써 결함이 있었다．6）（2）여행자원에 대한 보호의 절실성이다．여행산업의 발전여 부는 여행객의 양적 그리고 질적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여행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보호라는 세 요소가 매우 중 요하다．여행자원의 발전이용은 여행산업의 직접적 경제효익의 기초 가 될 뿐만 아니라 종합적 여행소비활동을 촉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 어 기타 관련 산업에도 일정한 경제이익을 초래하게 한다．따라서 각 국은 여행상품개발에 있어 여행관련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 파 장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여행자원의 보호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현재 중국의 여행자원은 관리가 제대로

[^2]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화산분출，해일 등의 자연적 파손과 대규 모의 여행객의 왕래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 다．7）（3）여행객에 대한 합법적 권리보호 필요성이다．여행서비스는 여 행객이 여행시장에서 구매하는 일종의 특수한 성질의 상품 또는 서비 스로 이는 일반상품과 다르다．대부분의 여행상품과 서비스는 예를 들어，일광욕，자연풍경，서비스 등과 같이 단지 느낄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을 직접 만지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는 상품 을 소비한 이후 여행객의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또한 여행상품은 일 반상품의 구매와 달리 소비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 발권된 표 등의 영 수증에 의존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여행객의 소비활동이 대부분 생소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여행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가 부족하여 여행 전 여행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감지도 할 수 없으며，여행객이 여행상품을 소비 중에도 약자의 지위에 있게 된 다．여행객은 여행활동과 여행법률관계에 있어 중요한 주체이므로 합 법적 권리보호가 필요하다．중국은 여행객의 이익보호와 관련하여，《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이하 ‘조례’라 함），《여행가이드 관리 조례（导游人员管理条例）》 （이하＇가이드 조례’라 함）등으로 규율하였다．8）

7）현재 중국은 여행자원에 대하여（1）생태계 보호의 위협，（2）다수 지역의 역사문화 여행자원의 훼손과 내용의 부족，（3）여행활동으로 인한 원생태문화로 초래되는 부 정적여향제거 곤란，등의 어려움이 있다．이에 대하여는，吕莹，＂试论现代旅游资源＂，『河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1999，（5），45－48면 참고．
8）이러한 법률은 여행객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있어 여행객의 제소제도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유용하다．하지만 법률법규의 대부분에 각종 존재하는 문제로 인하여，예 를 들면，어떤 법제는 여행객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든지，어 떤 법제는 경영에 집중되어 여행객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여행객의 권리보호를 전문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니다．이에 대하여는，韩玉灵，『旅游法教程』，北京：旅游教育出版社，2007．참고；韩玉灵，武冰欣，＂促进旅游业健康发展的重要保障一写在《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出台之际＂，『理论研究』， 2013. 6,43 면 참고．

나．여행관련 법제의 입법경과

중국은 여행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중요 요소로 보고 1970년대 말 부터 여행관련 입법작업을 착수하였다．9）특히 1979년 1월 등소평 주 석의 주도로 여행산업을 국민경제발전의 새로운 산업으로 보았으며， 1981년 5월 국무원은 베이징에 ‘全国旅游工作会议＇를 개최하여 이른바 ‘중국식 여행’ 건설에 대한 중공중앙서기처의 지시를 전달하였다．이 후 중국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으로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되어 여행산 업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였으며，여행법제 제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1985년 국무원은 최초의 여행산업 단일법인 《여행사 관리 임시조례 （旅行社管理暂行条例）》를 제정하였다．10）이후 여행산업이 종합성이 강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여행산업과 관련한 법률를 제정하기 시작하 였다．이에는，《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경치 및 명성지구 관리 임시조례（风景名胜区管理暂行条例）》，《여 행업 치안관리방법（旅游业治安管理办法）》 등의 법제를 제정함으로써 여행산업발전의 조화와 제약 그리고 보장에 대하여 여행활동의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1）

9） 1970 년대 이전의 여행관련법규로는 1950 년 국무원이 공포한 《여행사관리 임시조 례（旅游社管理暂行条例）》가 있다．동 조례는 2009년의 《旅游社管理条例》의 전신 으로 볼 수 있다．
10）동법은 중국의 여행법제 건립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동법은 여행관리부문이 여행업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여행활동에서의 구체적 행위를 규범하는 법률이다．국가여행국은 여행사，관광호텔，여행가이드，여 행가격，기업재무관리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과 중대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胡婧，앞의 논문， 15 면．
11）지방입법에 있어서 여행산업발전을 위한 방침과 정책이 수립되었으며，여행행산 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각 지방정부가 1985년부터 1989년 까지 제정한 여행관련 법규는 120 여 건에 이르며，그 중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 부가 제정한 지방정부여행 규장은 16 건이며，성，자치구，직할시 여행행정관리부문 이 제정한 규범성문건은 105 건이다．이에 대하여는，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홈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었고，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국내는 물 론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시기이다．1998년 12월 중앙경제 공작회회에서는 여행산업을 제 1 차 국민경제의 새로운 요소로 보고 개 혁개방 20 년 이래 취득한 성적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기초로 여 행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또한 국제적으로 여행객이 급증함 에 따라 여행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태환경퐈괴와 유적지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이에 중국은 《리우 환경과 발전 선언（里约环境与发展宣言）》，《21세기 아젠다（21世纪议程）》，《생물 다양성협약（生物多样性公约）》，《여행산업에 관한 21세기 아젠다（知于旅游业的 21 世纪议程）》，《지속가능한 여행발전헌장（可持续旅游发展宪章）》，《지속가능한 여행발전행동계획（可持续旅游发展行动计划）》 등의 국제협약은 중국의 지속발전가능한 여행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여행산업의 발전은 물론 여행법제의 입법에 있어 새로운 모티브 가 되었다．12）이에 1990년 국가여행국의 《知于进一步清理整顿旅行社意见的通知》，《여행안전관리 임시 방법（旅游安全管理暂行办法）》，《국외에 설립한 여행경영기구에 관한 임시관리 방법（㞺于在国外设立旅游经营机构的暂行管理办法）》등이，1991년에는 국무원이＂国发［1991］
于加强旅游行业管理若干问题的请示）》을 국가여행국이 기안하였다．13）

페이지 http：／／www．cnta．com／참고．
12）이 시기의 중국 여행법제는 주로 국제 및 국내 경제의 형세와 여행발전의 추세 를 둘러싸고，여행산업의 보장과 촉진에 있어 전면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13）이에 대하여는，王立纲，卢印东，『旅游法律知识问答』，北京：旅游教育出版社， 1998 참조；이 시기 지방의 여행관련 법제를 살펴보면，특히 1995년 해남성 제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를 통과한 《해남성 여행관리 조례（海南省旅游管理条例）》가 대표적이다．본 조례는 지방여행법제 입법의 고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여행산업의 현대산업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여행산업이 지방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법률작용으로 여행산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여 행산업의 발전을 꾀하려 하였다．魏小安，『新编旅游经济学』，上海：上海人民出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여행산업과 여행법제 정비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법률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힘썼다．2001년 중국은 정식으로 WTO 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요구에 부 합하는 여행법제를 건립하였다．이에는 2001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진일보한 여행산업의 가속적 발전을 위한 통지（国务院智于进一步加快旅游业发展的通知）》을 통해 여행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입법하기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2002년에는 《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 방법（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을 공포함으로써 그동안의 외 국여행에 대한 관리를 행정관리에서 법제관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14)}$

## 3．《여행법》의 성질

중국의 《여행법》은 경제법적 성질，권리형평법적 성질，사회법적
 행객과 여행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여행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며，여행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여행사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라는 입법목적이 천명하고 있다．또한 동법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국내는 물론 국외의 여행에 대하여도 동법이 적용된 다．이러한 점에서 동법의 성질은 경제법적 성질은 물론 사회법적 성 질을 가지며，여행객과 여행사 및 여행보조자 간의 권리형평에 관한 성격16）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社， 1998 참고．
14）王健，『旅游法原理与实务』，天津：南开大学出版社， 1998 참고．胡婧，앞의 논문， 17면 재인용．
15）胡婧，앞의 논문，4면 이하．
16）동법 제 3 조는，＂국가는 여행사업을 발전시키고 여행공공서비스를 정립하며，법률 에 따라 여행활동 중 여행객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더욱

## 가．경제법적 성질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에 간여한다는 점이다．이는 경제법의 기본원칙이 국가가 정치생활에 간여하는 행정 법과 당사자 평등의 민법원칙과는 구별된다．이러한 점에서 《여행 법》은 국가가 법률로써 사회경제생활에 간여한다는 경제법의 기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여기에서의 말하는 이른바 ＇간여＇는 국가의 여행업에 대한 적정한 간여를 말하며，과도한 간여는 여행시장에 있어 여행객과 여행업 종사자에 대한 제재로 작용하여 여 행업 발전을 악화시키게 될 것은 자명하다．${ }^{17)}$

## 나．권리형평법적 성질

중국의 《여행법》은 입법당시 그 성질을 권리형평법으로 하고，기 본원칙을 형평협조원칙으로 하였다．이는 정부의 여행관련부문에 직 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여행시장에 효과적인 관리를 하게 할뿐만 아니라，법률로써 여행관련부문의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여행시장에 과도한 간여를 방지하게 한다．《여행법》은 행정관리부문이 여행경 제에 대한 통제와 협조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이익형평을 꾀하며，정 부의 여행경제에 대한 통제와 협조는 반드시 사회이익을 준칙으로 하 여야 한다．현대경제법으로서의 《여행법》은 국가권력이 여행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협조를 보증하고，경제개체가 여행시장경쟁에서 의 권리，자유，평등을 보증하게 한다．이는 《여행법》이 여행서비스 업의 발전과 중국의＇조화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된 다．

[^3]
## 다．사회법적 성질

사회법적 성질이다．사회공공이익의 주체는 공중，즉 공공사회이며， 이는 어떤 개인의 사익이나 어떤 단체 혹은 집단의 이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국익은 더더욱 아니며， 3 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18）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사상에서 보면，개인，집체，국가 3 자간에는 조화 로운 통일적 면이 존재하기도 하고，반면，모순과 경쟁의 면도 존재한 다．여기에서 경쟁은 여행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 로 만약 경쟁이 없다면 여행시장은 발전할 수 없다．경쟁을 통하여 산업구조 상 우성의 발전과 열성의 쇠퇴가 이루어지며，나아가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여행자원의 적절한 배분의 기초적 작용이 일어난 다．물론 여기에서도 경쟁은 공평과 합법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경쟁 이어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시스템이 통제력을 잃게 되 거나 왜곡됨은 당연하다．19）시장경제조건에 있어 공평은 결과적 공평 만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가리킨다．즉，모든 경쟁자가 평등한 법률지 위에서 동일한 법률원칙을 받으며，불공평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제재 를 받는다．《여행법》의 사회본위성의 실질은 정부가 사회공공이익 의 각도에서 여행시장에 개입하여 여행영업행위에 대한 자유방임과 극단적 개체권리 및 국가권리를 제거하고，모든 여행경제에 대한 발 전에 초래되는 소극적 영향을 제거하며，여행시장주체의 개체 영리성 과 사회공익성의 모순을 해결한다．이러한 해결은 오랫동안 여행시장 에 존재하였던＇과도한 정부간여에 의한 여행시장의 비활성화＇와＇정 부의 방임에 의한 혼란＇으로＇시스템의 불필요＇와＇무질서적인 경쟁’이

18）邹龙妹，熊文钊，＂旅游法的社会法属性刍议＂，『河北法学』第 31 卷 第 9 期， 69 면 이하 참고；중국은 이를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개인，집체，국가 3 자 간의 존재하는 조 화로운 통일적 일면으로 보며，모순과 경쟁의 다른 면이 존재한다고 본다．
19）钟尉华，＂旅游业中的若干法律问题＂，『贵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1994年 第1期 참 고．

라는 국면을＇여행경제의 양성＇과＇사회협조적 발전＇으로의 변화를 효 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20）

## III．중국《여행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

## 1．통일여행법규로서의 기능

## 가．《여행법》의 목적과 작용

2013년 4월 25 일에 제정된 중국의 《여행법》은 그동안의 여행관련 법규에 대한 통일법규성을 가진다．즉，여행관련법규에 대해 ‘헌법성’， ＇지도성’을 가지는 법률이다．이는 동법 제1조에서＂여행객과 여행사 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여행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며，관 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여행사업의 지속적이고 건 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또한 동법 제2조 이하에서는 《여행법》 입법취지 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제2조），여행주체보호（제 3조），여행객체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 및 개발（제4조），여행산업장려 （제5조），여행산업진흥을 위한 시장법규제정（제6조），지방인민정부의 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제8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 입법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은 그동안 여행관련 법규를 행정법규와 지방법규，행정성문건 등으로 산개되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법규에서 규 율할 뿐이었다．21）하지만 《여행법》은 모든 여행산업의 질서를 규범

[^4]하고，건전한 여행산업의 발전을 촉구한다는 입법취지 하에，여행객의 안전과 권익보호강화 및 여행객의 의식향상，여행사와 여행가이드에 대한 합리적인 의무를 부담지우고，국가와 여행주관부문의 관리감독 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여행관련입법을 통일적으로 규범하고 있다．

## 나．여행산업의 발전과 육성

현대에 있어서 여행산업은 특정 관광지의 관람행위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는 물론 인접지역에까지 경제효과가 발생하며，특히 국외여행 객에 대하여는 국가전체의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에 중 국은 관광지에 대한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관광지의 유지보수와 같 은 하드웨어적 개발과 관광지에 대한 역사자료재건과 같은 소프트웨 어적 개발의 동시적 발전을 시도하였다．즉，여행객이 특정지역을 여 행할 때 관광지의 경치와 관람은 물론 관광지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 을 고증을 통하여 확립함으로써 여행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다．22）

이에 동법 제17조에서는，＂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여 행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제1 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여행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중앙과 지방경제발전계획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동조 제2항에 서는，＂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구（區）가 있는 시（市）와 현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여행발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행정구역 간에 종합적 인 이용이 적합한 여행자원을 이용하는 때에는 통일된 여행발전계획

[^5]을 상급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수립하거나 또는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항을 보충하고 있다．

또한 여행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방의 인민정부는 토지이용종 합계획，도농계획수립에 있어 여행산업에 대한 시설의 공간배치와 건 설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며，운송•통신•용수공급•전기공급•환 경보호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업 발전의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제20조）．

관광이미지 보급과 확립을 위하여 국가는 관광이미지 보급 전략을 수립•시행한다．국무원의 여행주관부처는 전면적으로 국가 관광이미지 의 해외 보급 업무를 계획하고，관광이미지 보급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추진한다（동법 제 25 조 제 1 항）．

## 2．여행객의 권리보호 및 안전과 여행계약

가．여행객 권리보호 규정

이른바 여행계약은 여행객과 여행사가 여행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종합적 법률행위이다．즉，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목적지까지의 이동에 한정될 경우에는 여행사는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뿐이지만，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숙식해결과 여행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수단의 제공，숙박계약，식당이용계약，여행가이드 계약 등 민법 상의 위탁계약，임대차계약，고용계약，매매계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게 된다．이러한 경우 여행객은 개별적으로 계약당사자와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이 아니라，여행사와 여행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 기 때문에 여행객은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즉，여행사는 여행 계약에 있어 여행객보다 우월적인 정보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법》 제9조 내지 제 12 조에는 여행객의 권리보호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특히 여행객이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발생하는 이른바＇덤핑여행＇23）은 관광지 상품의 의무구매로 인하여 여행이미지가 악화되고，여행사의 여행상품의 획일화로 인한 다양화 실패，여행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부실을 발생케 함으로써 총 체적으로는 여행시장의 질서를 흩트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여행시장 질서의 파괴는 여행객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동법 제9조 제 1 항은，＂관광객은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자 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여행사의 강제적인 거래행위를 거부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덤핑여행＇으로 인한 의 무구매행위금지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여행객의 의무규정

여행활동에 있어 여행객은 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의무도 존 재하는데，이러한 여행객의 의무에는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중도덕 준수，관광자원 보호，관광활동 방해금지 등이 있다．최근 중국의 여 행객이 외국관광지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에 낙서를 함으로써 중국여행 객에 대한 세계각지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이러한 여행객들의 잘못 된 행태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 게 되었다．

23）이른바 ‘덤핑여행’이라고 함은，일종의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으로，여행업 이 주요 경제산업인 태국에서 여행상품의 공급과 수요관계에서 기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이는 동남아국가 여행상품에 적용되다가 국내에 유입되었다．여행사가 여 행상품을 원가이하로 판매하고，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손실을 여행객의 관광지 에서의＇의무구매 옵션＇，지역 중계 여행사의＇리베이트＇수납 등으로 메우는 여행 계약을 말한다．이러한 여행상품을 ‘옵션여행상품＇，‘저가여행상품’이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덤핑여행’이라고 한다．중국에서는 이러한 여행상품 판매형태를＇零负团费’라고 하며，개혁개방이후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1995년 여행산업의 대 중여행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하여는 李倩倩，＂解读《旅游法》对旅行社‘零负团费’的制约＂，『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 第33卷 第12期， 2013. 12， 88 면 참고．

또한 여행객은 자신의 건강정보나 신분정보를 여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여행사에 알리지 않아 여행도중 다른 여행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예를 들면，여행객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라든지，여행객이 범법경력으로 인하여 특정 관광지나 특정지역 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이처럼 여행객 자신의 건강정보나 신분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다른 여행객과 여행사는 물론 여행자원과 현지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그러므로 여행사와 여행계 약을 체결할 당시 여행객은 여행사에 여행 도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4）이에 대하여는 《여행 법》 제 15 조에 규정하고 있다．그밖에 여행객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에는 여행 중 안전경고규정 준수의무（제 15 조 제 1 항）와 국가의 한시적 여행제한 조치에 대한 협조의무（제 15 조 제 2,3 항），해외여행객에 대한 불법체류 금지 등의 의무（제1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다．여행계약체결 상의 권리보호

여행객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하지만，여행계약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종합적 성격을 가진 계약이다．즉，하나의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각 개별 계약을 여행사와 여행계약이라는 이름 으로 체결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여행객은 보편적으로 여행사보다 여 행일정이나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지위에 놓이 게 되며，심지어 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여행사와 대등한 정보를 가지 지 못하게 된다．다시 말해，여행사는 언제나 여행객보다 더 많은 정

[^6]보를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여행계약체결 시 여행객은 여행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여행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행상품내용의 정보에 대한 열세적 지위로 인하여 여행객 이 여행상품을 구매할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하여 여행사는 여행상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여행객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른바＇덤핑여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여행객은 여행상품 구매 시 상품의 내용과 서비스를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관광 지에서 강제적 구매나 의무구매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제9조）．이는 중국이 《여행법》 제정당시 여행객의 권리보호를 확보함으로써 여행 이미지와 건전한 여행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그 외 여행계약체결에 있어 여행사는 여행객이 특정 종교나 특정의 민족풍습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이는 앞서 설명한 여행객 의 계약체결 시 통지의무와 관련한다．

## 3．여행사의 영업행위 내용

## 가．여행사의 설립과 영업범위

여행사를 설립하여 여행객 모집，조직，접객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여행주관부처의 허가를 취득하고 법률25）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제28조）．여행사의 설립에 있어，（1）고정적인 사업장，（2）필요한 영업시설，（3）규정에 맞는 등록자본，（4）필요한 영업관리인과 여행가이 드，（5）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조건을 요건으로 한다．이

25）《조례》제2장（여행사의 설립）제6조에 의하면，＂국내 여행업무와 입경 여행업무 경영을 위한 여행사 설립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고정 된 영업장소가 있고，（2）필수적인 영업시설이 있고，（3）최소 30 만 위엔의 등록자금 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 대한 구체적 법률로는 《조례》로 동 조례 제2장에서 구체적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여행사는 《여행법》 제29조에 따라（1） 국내여행，（2）출국여행（해외여행），（3）국경지역 여행，（4）입국여행，（5）그 밖의 여행업무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하지만 출국여행（해외 여행）과 국경지역 여행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별도로 취 득하여야 하며，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국무원으로 정하고 있다．26）

> 나. 여행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금 납부

설립된 여행사가 《여행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서비스 품 질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여행객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과 여행 객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때의 긴급구조 비용 대납으로 사용된다．27）《조례》 제 15 조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행 정관리부서는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1）여행사가 여 행계약서의 약정을 위반하고 여행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쳤고 여행행 정관리부서가 조사하여 사실임이 증명된 상황，（2）여행사의 해산，파산

26）이에 대하여는 《조례》제9조는，＂출국여행 업무의 신청은 국무원 여행행정주관 부서나 그가 위임한 성，자치구，직할시 여행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을 접수한 여행행정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근무일내에 인가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인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여행사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하여야 하 며，여행사는 교체 발급받은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 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7）구체적으로 살펴보면，《조례》제 13 조에서 여행사는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3 일 내에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은행에 품질보증금 전용계좌를 개설 하고 품질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인가를 받은 여행행정관리부서에 품질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액을 은행담보로 제공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품질보증금액에 대 하여는 동 조례에서 국내여행 업무와 입국여행 업무에 대하는 20 만 위엔을，출국여 행（해외여행）업무에 대하여는 120 만 위엔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 14 조에서 여 행사가 국내여행업무와 입국여행업무를 위한 지사 1 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그 품질 보증금구좌에 5 만 위엔씩 보충 납부하고 출국여행업무를 위한 지사 1 개소를 설립할 때마다 그 품질보증금구좌에 30 만 위엔씩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여행객이 선불한 관광비용의 손실이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또 동 조례 제17조는，＂여행사가 질 보증금을 납부 또는 보충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 없는 경우 관광행정관리 부서는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을 $50 \%$ 하향조절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여행사는 성，자치구，직할시 여행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증빙 에 의하여 그 품질보증금을 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행사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있다．28）

하지만 여행사의 여행품질보증금 납부가 《여행법》의 입법취지와《조례》의 목적인 건전한 여행산업의 발전 및 육성과 합리적인 여행사 관리감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의문이다．여행사는 높은 품질보증 금의 납부에 따른 경비지출을 여행영업으로 전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 행상품 내에 일부 산입될 것으로 보여 여행상품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9）이러한 가격상승은 여행객이 부담하게 됨으로 여행산 업의 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30）

## 다．여행사의 업무내용：모집•조직•접객행위

허가를 얻어 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여행사는 설립되며，설립된 여 행사는 여행객 모집행위，조직，접객행위，서비스 제공행위 등을 할 수 있다．

28）여행사고 발생 후 품질보증금의 감소로 인한 부족에 대하여는，동 조례 제 18 조에서， ＂여행사는 여행행정관리부서가 품질보증금을 사용하여 여행객의 손실을 배상하였거나 법에 따라 품질보증금을 감소한 후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침해로 인해 행정기관의 벌 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여행행정관리부서의 품질보증금 보완통지서 접수일로 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품질보증금을 전액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여행사가 지출하는 품질보증금은 담보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로 발생하는 이자액은 여행사에게 귀속되며，여행사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납 부한 품질보증금은 회수된다．
30）여행사의 이른바＇덤핑여행＇영업행태에 품질보증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 있다．

먼저，여행사의 모집행위와 조직행위에 대하여 《여행법》 제32조 는，＂여행사는 여행객을 모집•조직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허위홍보를 하여 관광객을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1）또 《조례》 제24조는，＂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는 진실하고 확실하여야 하며 허위선 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례 제29조는＂여 행사가 여행객과 여행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의 구체내용 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즉，여행사가 특정여행상품으로 여행객을 모집할 경우，여행 상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객이 여행상품을 구매하 거나 구매한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여행사가 모집•조직행위에 있어 허위정보를 통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 여행객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한다．또한 여행사가 여행활동을 조직함에 있어 《여행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여행 공급업체에게 상품과 서비스 를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 상품을 매매할 때 비합리적인 저가로 여행활동을 조직하여 여행객을 속여서는 안 되며，쇼핑 또는 별도요금의 여행항목을 통하여 수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그리고 동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객을 조직•접객하는 경우 구체적인 쇼 핑장소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별도요금의 여행항목을 넣어서도 아니 된다．하지만 쌍방의 합의 또는 여행객의 요구가 있고，그 밖의 관광객의 여행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31）《조례》 제 29 조는 여행사가 여행객과 체결한 계약서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양식조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 이해로 해석하고 양식조항이 두 가 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하며 양식조항과 비 양식조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비양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접객행위에 있어，《여행법》 제36조는，＂여행사는 단체 해외여행을 조직하거나 단체 입국여행을 조직•접객하는 경우，규정에 따라 인솔자 또는 가이드를 배치하여 전체 여행일정에 동반하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인솔자와 여행가이드는 여행가이 드 증서와 인솔증서가 있어야 한다（조례 제31조）．여행사가 초빙한 여 행가이드와 인솔자와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적지 않은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조례 제32조）．또한 《조 례》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 원인을 제외하고 여행계약서에서 약정한 여행스케줄을 변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사기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여행객을 쇼 핑 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여행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또한 동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가이드나 인솔자에게 접대비용이나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접대비용이 나 서비스비용기준보다 적게 지불하여 여행객을 접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여행가이드나 인솔자에게 여행객 접대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러한 규정은 앞서 설명한 ‘덤핑여행’ 의 근절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 4．여행서비스 계약과 여행분쟁처리32）

 가．여행계약체결과 고지의무여행객이 여행사와 체결하는 여행계약은 대부분이 단체계약이다．이 러한 단체계약은 수송계약，숙박계약，사용대차계약，고용계약 등을 단일화한 하나의 여행계약이라는 종합적 성격의 계약이다．여행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여행사가 여행일정을 조직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여

32）여행분쟁과 관련한 입법 및 여행 중 발생한 민•형사 안건의 유형과 통계에 대하 여는，宋强，앞의 논문，80－81면 참고．

행객을 모으는 방법（기획여행상품）과 특정 단체여행객이 조직한 여행 프로그램을 여행사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여행계약을 체결 시 여행사는 여행일정，여행단의 최소 인원，운송숙박음식 등 여행서비스의 제공과 기준，관람오락 등 항목 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자유활동의 시간 분배，여행비용 및 비용납 부 기한과 방식，위약책임과 분쟁해결방식，기타의 사항의 내용을 여 행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여행법 제58조）．이러한 설명내용 에는 여행사가 기획여행상품에 따른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 접객대행 여행사에의 위탁사항，여행가이드의 서비스 내용 등도 포함된다（여행 법 제60조）．

또한 기획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여행 사는 여행객에게（1）여행객이 여행일정에 참가하기 부적합한 상황，（2） 여행일정 중 안전주의사항，（3）여행사가 법에 의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4）여행객이 주의하여야만 하는 여행목적지의 관련 법률． 법규와 풍습•종교적 금기，중국 법률에 따라 참가하여서는 안 되는 활 동 등，（5）법률•법규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여행계약의 취소와 해지

《여행법》 제63조에 의하면，여행사가 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단을 조직하였으나 약정 인원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할 수 없는 경우，기획 여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국내여행은 최소한 7일 이전 에 여행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국외여행은 최소한 30 일 이전에 여 행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약정 인원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할 수 없 는 경우，기획여행사는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그 밖의 여행사에 게 위탁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기획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위탁을 받은 여행사는 기획여행사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한다. 여행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정 인원수 미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획여행 사는 여행객에게 이미 수취한 모든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65조는 여행일정이 끝나기 전에 여행객이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기획여행사는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여 행객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1)여행객에게 전염병 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2)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관련부처로 넘겨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위법 또는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활 동에 종사하는 경우, (4)다른 여행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종사 하고, 활동 중지 권고를 듣지 아니하여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의 사항 등이다(여행법 제66조).

## 5. 여행안전과 법률책임

## 가. 여행안전

단체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자가여행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사 고에 대한 예측과 여행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의 규모 및 손해정도가 매우 크다. 중국 《여행법》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급이상의 인민정부가 법률에 따라 긴급상황 대응관리를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관리시스템에 포함시 켜 긴급상황 대응대비책을 마련하고, 여행 중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8조). 또한 여행사업자도 안전 생산관리와 소방안전관리의 법률•법규와 국가기준•업계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 여행객의 안전보호 제도와 긴급상황 대응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 행법 제79조).

여행사업자는 직접 여행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응급구조기술 훈련을 실시하고，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안전점검•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위험상황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여행법 제79조 제2항）．돌발 사건 또는 여행안전사고 발생 후，여행사업자는 즉시 필요한 구조와 처리조치를 하고，법에 따라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며 여행객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여행법 제81조）．물론 여행자는 신체•재산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때에 관광사업자•관할 정부 및 관련기관에게 즉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여행법 제82조）．

## 나．법률책임

중국 《여행법》은 제9장（법률책임）에서 여행사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구체적 내용을 보면，（1）허가 없이 여행사를 운 영하는 자에 대한 책임（동법 제95조 제 1 항）과 허가 있는 여행사의 허 가증 대여에 대한 책임（제95조 제2항），（2）단체여행 시 여행인솔자 또 는 여행가이드 미배치，인솔자와 여행가이드의 자격미달 등（제96조）， （3）여행객 모집행위 시 허위정보제공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책임，（4） ＇덤핑여행’으로 인한 각종 리베이트 요구에 대한 책임，（5）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객의 동의 없이 한 행위，（6）관광지의 개방조건에 맞 지 않은 접객행위와 수용범위 초과，（7）관광지가 임의로 입장료를 올 리거나 별도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동법 제9장 법률책임에는 대부분 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즉，여행객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즉，중 국여행객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여행도중 관광지의 유물이나 유적 훼 손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IV．중국《여행법》의 쟁점과 여행시장에의 영향

여행계약은 일반적으로 여행사가 여행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여행객 을 모집하여 이루어진다．하지만 여행계약은 종합적 성격을 가진 계 약이므로，여행사는 여행일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각지의 접객여행사 에 위탁하며，접객여행사는 당해 여행일정에 필요한 관람，숙식，이동， 여행가이드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여행가이드는 접객여행사와 의 계약으로 여행객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이러한 일련 의 과정이 각 일정마다 또는 일정과 일정 간에 연결되어 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여행법》에서 규제하 는 여행계약의 이행과정（［그림 1］）을 기초로 주요쟁점과 문제점을 검 토하여 여행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전망한다．
［그림 1：여행계약의 이행과정］


## 1．여행객의 권리보호로써의 여행계약해제

가．여행계약의 해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객과 여행사 간의 정 보보유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하여，이미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서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일정 중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된 다．이로 인하여 여행객은 그동안 여행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격어온 것이 사실이다．《여행법》 제66조는 여행객에게 5 가지의 사유를 나열하면서 이를 만족하는 경우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1）전염병 등 질병에 걸려 그 밖 의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2）공공의 안전을 위협하 는 물품을 휴대하고 관련부처로 넘겨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위법 또는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4）그 밖의 여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종사하고，활동 중지 권 고를 듣지 아니하여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5）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상황을 들고 있다．하지만 계약법상의 일반원칙에서 일방당 사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과실에 기초하여 계약의 이행불능이 나 계약이 비경제적 이행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나．여행계약 해제의 계약법상 문제점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여행객이 공공이익과 제3자의 이익 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여행사가 계약상의 불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다시 말해，제6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행객의 여행결 함사유가 여행계약에 있어 이행불능이나 계약이행 자체가 여행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계약해제사유의 존재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여행사의 권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이러한 사항을 여 행계약이행 중，즉，여행일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공공이익이 나 다른 여행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행사가 이 를 방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 로 여행사의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여행사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행계약체결 중 또는 여 행계약이행 중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존재하는 계약해제사항을 발견하 더라도 방임하고 지나칠 우려가 존재한다．《여행법》의 취지가 건전 하고 건강한 여행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여행 객에게 존재하는 여행결격사유의 발생으로 사회공공이익이나 다른 여 행객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마땅히 여행계 약체결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은 명백 하다．그러므로 여행계약에 있어 사회공공이익이나 다른 여행객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이를 여행사의 의무로써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덤핑여행＇에 대한 규제

가．＇덤핑여행＇의 원리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른바 ‘덤핑여행＇은 여행산업을 국가의 주 요 경제산업으로 의존하는 대만에서 여행상품의 공급과 수요의 기형 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4)}$ 이는 여행이미지의 실추로 인하

33）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민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张杨，＂《旅游法》中旅游合同解除的若干问题探讨＂，『南宁职业技术学报』，2014年 第19卷 第2期， 82－83면 참고；동법의 적용원칙과 계약법적 관점에서의 여행사의 의무는 외국여행 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夏雨，＂涉外旅游合同法律适用规则探析＂，『旅游学刊』第28卷 2013年 第5期，123면 이하 참고；戚东祥，＂关于《旅游法》的深度解读之二－旅游合同＂，『旅游学刊』 第28卷 2013年 第9期，13－14면 참고；刘莉，王泓，앞의 논문， 41면 이하 참고．

여 여행객에게 손해를 가져와 여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중국에서 는 이를 ‘零负团费’라고 하면서 여행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해결 하여야 할 사회문제로 보았다．
［그림 2：‘덤핑여행’ 또는 ‘零负团费’의 운영원리］


상기［그림 1］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여행계약시스템은 여행객이 지 불한 여행비용에 대하여 여행사 접객여행사와 여행가이드의 합법적 계약을 통하여 운영된다．하지만 이른바 ‘덤핑여행’ 또는 ‘零负团费’의 운영원리는［그림 2］와 같이，（1）여행사가 여행상품보다 훨씬 낮은 여 행비용을 산출하여 여행객을 모집하고，여행사의 이윤을 접객여행사 나 여행가이드에게 소개비를 받거나 여행객에게 특정 상점에서 구매 를 강요하여 상점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겨 부족한 이윤을 메꾸는 방식 이다．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여행사 간의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여행상품이 획일화 되어 다

34）李倩倩，앞의 논문， 88 면 참고．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5 \text { ）}}$

나．여행이미지 제고와 여행산업 육성

그동안 여행산업은 국가 또는 지역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쳤다．특히 중국은 2008년 올림픽 개최이후 해외여행객의 국가이미지 에 대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중국은 거대한 영토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지방관광지가 많으며，중국정부도 이러한 이점을 극 대화하고자 지방관광지개발에 힘쓰고 있다．${ }^{36)}$

하지만 덤핑여행이라는 비정상적 여행계약시스템 행태로 인하여 관 광지에 대한 여행자의 부정적인 인식증가와 획일화된 여행상품으로 여행산업의 발전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위의［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여행계약은 단순히 여행사와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 고，여행사와 접객여행사，그리고 여행가이드，관광지 등과 이해관계 가 얽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어느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면，여행계약 전체가 계약불이행으로 이어지게 된다．건전한 여행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이 계약 상 지출 한 여행비용에 상당하는 만족도를 얻어야 한다．

중국 《여행법》의 입법목적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여행이미지의 제고와 여행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여행관련부문은 여행사의 영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이러한 여행관련부문의 공평하고 합법적인 관리감독이 사회전체에 신뢰를 줌으로써 건전한 여행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7)}$

35）李倩俵，앞의 논문， 88 면．
36）杨富斌，＂《旅游法》的十大制度创新＂，『法学杂志』2013年 第10期，23면；宋瑞，앞 의 논문， 35 면．

37）叶海玲，＂浅谈旅游法对旅游业的影响及旅行社的应对策略＂，『旅游管理研究』，2013年 12月下半月刊，14면；元婷，元晶，＂对《旅游法》的几点解读＂，『山西财政税务专科学校学报』第 15 卷 第 3 期，2013．6，69－70면 참고．

3．《여행법》과 기타 여행관련 법제와의 관계
가．《여행사 조례》와의 관계
《조례》는 2009년 1월 21일 국무원 제4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8)}$ 동 조례의 입법목적은 제 1 조에 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행객과 여행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여행시장의 질서를 수호하며 여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입법구조를 보면， 제 1 장 총칙，제 2 장 여행사의 설립，제 3 장 외국인투자 여행사，제 4 장 여행사의 경영，제 5 장 감독，검사，제 6 장 법률책임，제 7 장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이처럼 입법구조 측면에서 보면，《여행법》는 《조례》 를 포함하고 있으며，《조례》는 여행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여행법》에 비해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제4장과 제6 장에서 여행사의 운영과 규정위반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여행사의 업무행위에 있어 접객행위 와 여행가이드 운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는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여행객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항은 여행사의 의무규정에서 간접적 으로 유추적용될 뿐이다．

## 나．《여행가이드 관리 조례》

《여행가이드 관리 조례》는 1999년 5월 14일 제정되어 1999년 10 월 1 일부터 국무원령 제 263 호로 시행되고 있다．동 조례의 내용은 여 행가이드 자격과 업무집행에 있어 직업윤리에 대한 규정과 법률책임

38）동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550 호로 전체 7 장 68 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에 대한 것이다．여행가이드의 자격에 대하여는 국가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과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접객에 대한 예절，여 행객의 종교존중，여행객 안전 우선，여행객에 대한 물품강제구매행위 금지，명시 또는 암시적 팁 요구 행위 금지 등이다．

《여행법》과 동 조례와는 《여행법》에서 규정하는 여행가이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여행법》 상의 규정내용과 동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동 조례는 여행가이드의 자격취득사항 외에는 법률적용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즉，동 조 례는 1999년 제정되었으며 그보다 늦게 제정된 《여행법》와 《조 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가이드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 다．이는 이후에 입법된 여행관련 법제가 여행가이드 규정에 있어 많 은 참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4．《여행법》의 여행시장에의 영향

가．여행사와 여행산업발전에의 영향
여행법의 제정은 여행시장의 공정한 가격경쟁 유도로 여행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발전과 육성에 있다．그동안＇덤핑여행＇의 성행으로 인 하여 여행상품가격의 불공정적 운용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이에《여행법》은 여행사의 강제구매와 관광지 입장료 증액 금지 등에 대 하여 규정함으로써＇덤핑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법》의＇덤핑여행＇의 규제로 인하여 여행사가 조직한 여행상품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행사의 경영상 에 있어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여행상품이 정상가격으로 올 라옴으로써 소비자는 기존의 덤핑가격에 비하여 체감하는 금액이 비 싸게 느껴져 여행객수가 줄어들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단기 간에 그칠 것이며，장기적으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39）다시

말해，여행산업의 육성은 앞으로 여행사의 서비스 강화와 여행이미지 의 회복에 있다 할 것이다．

나．여행객에의 영향
여행객은 여행사를 통하여 여행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인 숙식， 이동，관람，구매，오락 등을 예약할 수 있다는 점에 여행사를 통한 여행계약체결을 선호하고 있다．하지만 여행객은 여행사에 비하여 여 행일정별 당지의 정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 전적으로 위탁하게 된다．이로 인하여 여행객은 여행계약체결 중 또 는 여행계약이행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존 덤핑여행으로 인 하여 여행객은 저가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여행사의 강제쇼핑 이나 여행가이드의 팁 요구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들여야 했다．이러 한 여행방식은 여행객의 권리를 침해하게 한다．

《여행법》은＇여행객의 권리보호＇라는 중요한 원칙을 곳곳에서 강 조하고 있다．동 원칙의 여행객이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내용 에 대한 정보인 여행일정，여행지 정보，여행지 입장료 정보，여행가 이드 정보 등의 알권리를 말한다．

한편 여행계약체결 중 여행객의 정보제공에 대한 비밀유지는 물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한 여행비 회수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여행객 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특히 《여행법》 제68조에서는 여행일정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사는 여행자가 출발지 혹은 여행자 가 지정한 합리적인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면서，여행사 혹은 이행보조인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환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의 신설은 여

39）이에 대하여는，张丙英，＂《旅游法》对旅行社与游客的影响分析＂，《科技信息》 2014年 第04期，243면 참고；叶海玲，앞의 논문， 14 면 참고；张百菊，王兴华，＂浅谈旅游法实施对旅游业界的影响＂，『才智』2013年 第34期，227足；张圆媛，＂浅析新《旅游法》出台后对旅行社经营的影响＂，『旅游管理研究』2014年2月下半月刊，16면 참고．

행사의 여행객이 여행계약으로 인하여 여행지로부터의 출발과 귀환까 지 책임지게 함으로써 여행객의 인신과 재산보호를 위한 규정의 강화 로 볼 수 있다．또한 여행일정 중 여행객의 쇼핑행위에 대하여도 의 행객의 동의 없이는 특정장소나 특정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여행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여행상품에 대 한 비용은 상승하지만，여행에 소비된 전체비용은 감소하게 된다．또 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행객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은 여행만 족도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40）

## V．맺으며

중국은 그동안 산업발전에 중점을 둔 나머지 산업발전과 사회주의 유지에 관한 법제를 강화한 반면，의료서비스와 여행서비스와 같은 복지관련법제에 관하여 입법을 늦추어 왔다．물론 여행서비스와 관련 하여 《조례》，《여행가이드 관리 조례》 등과 여행관련 환경법제의 입법 및 여행관련 지방성법규는 법제를 마련하긴 하였지만，여행시장 의 주체인 여행객의 권리보호를 마련하지 못하였다．이에 2013년《여행법》을 제정하여 건전한 여행시장의 형성으로 여행산업의 발전 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행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국가의 여행산업발전과 육성 을 위한 대대적 지원，여행객의 권리보호，여행사의＇덤핑여행＇업무행 태 근절，여행가이드 관리감독 강화，여행 중 발생한 분쟁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여행관계법제의＇지도성＇，＇헌법성＇법률과 통일여행법적 성격을 가진다．하지만，여행객의 권리보호와 여행분쟁

[^7]처리에 관한 전문법적 기능 이외에는 기존의 《조례》，《여행가이드 관리 조례》 등의 여행관련법제와 중복된 규정이 많아 법률적용상의 이원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여행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의＇덤핑여행＇업무행태 의 근절 등이 여행객과 여행사 및 여행업종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여행법》의 적용범위가 국내외 여행객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한중간의 여행교역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다양화와 여행 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중국여행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 다．

## 참 고 문 헌

令学，＂浅谈《旅游法》对旅游者安全的全方位保护机制＂，『旅游学刊』第28卷 2013年 第8期

乔力，李茂民，高连营。＂大旅游概念与 21 世纪旅游业的发展＂，『山东社会科学』，2000年 第5期

吕莹，＂试论现代旅游资源＂，『河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1999年 第5期刘莉，王泓，＂论《旅游法》对旅游者合法权益的全面保障＂，『安微警官职业学院学报』2013年 第5期 第 12 卷（总第 68 期），

李倩倩，＂解读《旅游法》对旅行社‘零负团费’的制约＂，『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第33卷 第 12 期，2013． 12

米一，＂旅游法：剑指行业痼疾＂，『法治与社会」2013年10期
宋强，＂我国构建旅游法治环境的现状，问题与对策分析＂，『法治研究』 2013年 第6期

宋瑞，＂产业发展视角下的《旅游法》＂，『法制论坛』2013年 第 8 期•总第 350期

杨富斌，＂《旅游法》的十大制度创新＂，『法学杂志』2013年 第10期元婷，兀晶，＂对《旅游法》的几点解读＂，『山西财政税务专科学校学报』第 15 卷 第 3 期，2013． 6

张百菊，王兴华，＂浅谈旅游法实施对旅游业界的影响＂，『才智』2013年第34期

张丙英，＂《旅游法》对旅行社与游客的影响分析＂，《科技信息》 2014年 第04期

张杨，＂《旅游法》中旅游合同解除的若干问题探讨＂，『南宁职业技术学报』，2014年 第19卷 第2期

张圆媛，＂浅析新《旅游法》出台后对旅行社经营的影响＂，『旅游管理研究』2014年2月下牛月刊

钟尉华，＂旅游业中的若干法律问题＂，『贵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1994年 第1期

戚东祥，＂笑于《旅游法》的深度解读之二－旅游合同＂，『旅游学刊』第28卷 2013年 第9期

邹龙妹，熊文钊，＂旅游法的社会法属性刍议＂，『河北法学』第 31 卷 第 9 期夏雨，＂涉外旅游合同法律适用规则探析＂，『旅游学刊』第28卷 2013年第 5 期

韩玉灵，武冰欣，＂促进旅游业健康发展的重要保障一写在《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出台之际＂，『理论研究』，2013．6

叶海玲，＂浅谈旅游法对旅游业的影响及旅行社的应对策略＂，『旅游管理研究』，2013年12月下半月刊

胡婧，＂我国＂旅游法＂立法研究＂，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2009．4



- 지금 한국를 국제경제미 를로번환 체제하메 지핵적민 지역주읙 막대에 내옹하어 만정적민 해외시장 을 뫅보 하고 우리나라의 졍제적 생돈가 국가 경잼력 제고틀 뮈매 적극적인 FTㅇㅛㅡㄹ 주진 하고 있다. FTA 기
 우리나라와 지리적 인 점성촐 비롯 하여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등임 문화젓 내메 있으며 수 표이후 먕국 간 표역의 뫈내는 전 분야에 결쳐 강믁뫌 만찬 성장놀 이두어흈다.
 포간적민 FTA을 지향하고 밌으며 종국 과의 FTA 첩삼메서 잼 점읃 우리가 가진 경잼 우뮈 분먀에서의 개밤 믝 그대화몰 이르영 내는 것이다.
- 최른 우리나라틀 찪늗 외곡민 판강객크의 수는 ㄲㅜㅜㅎㅏ 졸가하고 있으며 깐광산업의 고부가가치로민 해 현대 각 지자헤변로 적큭적민 외국민 간강객 유치메 심열혹 기올이고 밌다. 홓계메 따르면 2012년 맏


 줗고민플이 해외여햄지 졸 민점국민 한국조 찱고있다. 간광 서비스 분야늗 그간 상달부분 개방이 이두
 우리가 전락적 우위틀 점막 수 있는 쳡삼 체펼흘 뮈하여 깐경서비스메 판한 한중 먕국의 FTA세결메 따 튼 영향 맟 대홀책홀 분석하고저 찬다.



## 1. FI용여 랄경서비스 선업




 톻한 무역의 자유화는 판강분야메 대해 사업븍적의 여핼과 류가여행쫄 졸가시키고 아촐러 간강산업의 성장




 가 나와 밌다.

## 2 한 - 중 영국의 FM 서비스협정니용

## 2.1 죽국의 FTA서비스 덥정 니뭄

2.2 한국의 FIA 서비스 덥정 니움

## 3. 한 - 중 영국의 관령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정혁

31 줄국의 관광서비스 산멉 정책
32 만국의 관강서비스 산멉 정혁

## 4. 한 - 중 FFㅐ영 간경서비스 불야 콩점

- 먕허의 정도와 외국업체 차변 드ㅇㅢㅢ 틍궂점거래 붇야 ㄱㅇㅚ 삼대국 법규의 시햄 옷 개선메 간한 내응 우선 중국 자국의 여뱀사틀 보호하기 뮈배 외국 여햄주선업헤매 내찬 차변촐 시햄하여 욨으나 2010년 '족 외합자경영여햄사의 애외 판강업무 시범견영갑득 잡정밤법 纟ㅡㄹ 제젛하여 $コ$ 등만 금지 되였던 찹자 여뱅사 읙 국워여햄 업무를 히가하여 중국민믹 해외어햄, 종옹 마카오 등의 간강서비스 업초 수핵 판 수 있게 되었 다. 외국 여햄사에 줄국 해워시장이 개발되면시 경잼이 더욱 치연해질 것으로 예삼된다.
- 프롄차이즈 여햄사 똧 꼭외갛고룔 뿧찬 춯보와 콜라민 결제 시스림메 판한 내응

한곡를 여햄업계에 밌어서도 프랜차이즈가 이미 갚성화되어 밌으나 훙구를 여햄주선대뱀업 볻사가 직염하
 옥외 간고 금지로 민해 종국시장에 진줄하는 외곡 여햄사의 종보가 응이하지 않다 또한 한군른 여햄사가

 창줄메 문제점이 밌다.

## 5 관광부물의 FIA세졀혀롸 및 전망

중국과의 FTㅅㅐㅔㅔㅕㄹ를 서비스 분야읙 생산엉 향상가 경쟁력 제고로 민한 국민 졍제 챙강에 킁정적민 영향

 받늘 겅이다.

첫깨, FThㅅㅔㅔ결메 따튼 서비스 표듀의 막내는 판강객 종가로 며어지고 숙박이나 여뱅업무 드ㅇㅢㅢ 노등서비스


 파샘직종이 졍가딸 것이다.
 뫅 겅이며 쳑신과 구조조정혹 뤃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첩장만 것이다.


## 1．중국 관령법의내용 및 특징

 있으며 내응른 제 1 장 돟칙．제 2 장 판간객，제 3 장 판간계뫽 맟 족진，제 4 장 간광사업．제 5 장 판광서비 스계약．제 6 장 간강만전，제 7 장 간강깐리갑득．제 8 장 간강분잼처리，제 9 장 법퓩책임，제 10 장 부칙으 로 종 10 장 111조로 구섬되어 있다．
중국의 판강법［旅游洁］空 간간산업의 지뮈와 륵섬메 른거한 간강밉법의 전헤적민 내용졸 포함하고 있으며 조효 륵정른 다흠과 같다．

 적으로 연계하여 전국 판광산업믜 롱인성즐 유지하도북 하였다

 고 있다．

셋깨，판강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거민 판강객크의 선진적민 간강문화 런섣메 간한 내옹츠 포함한다

## 2．중국 관깅법의 시시점


 츨 개선하며 실직적으로는 판강 여 가산업읙 빤전족진즐 뮈한 판강서비스의 퐇합적민 범횸로서 판강서

 스의 표륨 옹 반전에 있어서도 크젛적민 영함졸 끼친 것으로 평가되며 중구의 판강법 시햄 츨 계기로 조 국민 판강시장의 질적 섬 장가 먕국읙 실진 적민 업무 꾜듀의 갑화로 민배 국내 판간서비스의 개선 과 구 조조점의 등민으로서 굴극적민 얌곡 서비스 반전의 제교가 아두어지리랏 예삼된다：

 족국과의 FT 서비스 첩ㅅㅏㅏ메서도 몌외가 아니다．기라나 달사자킄의 상반된 이해간계로 민해 이려한 칩상 믁표

 검도해야 하며 간광서비스 시장륻 분야의 강범위설과 파샘성으로 민해 다양찬 서비스 업의 개방이 이두이 질 수 있어 여기메 간한 우선숟뮈도 마렴해야 한다．또한 판강서비스 상품의 개반가 공⿴囗⿱一一 메 간한 향후 경제적 측 메 대해 면믿한 검도톨 거친 후 쳡상메 밈해야 찬다．

 헙력사업의 강화븡 톻해 먐 국간의 갆반한 교듀와 두 자 가 뫅대되 고 굴극적으로는 판광객의 만전보장가 간 값산업의 반전올 도모학 수 밌다．

 강상품가 판강쿄스를 개빤하여 한중 뿐만 아니라 타국의 판강객 유치밤만옥 마렵하는 전락촐 주진뫅 수 있 ㄷ．
－그 외메도 죽국민 판값객의 한국 재받문옥 위한 판강서비스 품진 개선족 뮈한 전문기구의 섣치가 픠요하
 시철츨 구비매먀 한다．


- 우리는 향후 중국민 간강객 천만 시내매 내비하여 종ㄱㄱㄱ민 간강객 유치를 종해 간강산업졸 미래 성장 등
 력이 툐구되는 현 시점메서 한국의 현햄 저가 간강구조틀 개편하교 판강산업의 교부가가치틀 도모하도훅 한다.
 상품과 판갆민프라. 퉁화가치, 자국가의 거리와 판갑시갼 비자 등이 주로 거려돔다 한종 먀국의 간강서비 스 산업를 최근 성장옥도가 빠르고 고 부가가치를 창졸산업으로서 르 가치가 있다. 아 홀라 깐갗과 정보훟신,
 시메 국가 이미지 제고메도 르정적민 영항곡 끼치고 있다. 현재까지 한쿡의 졍제성장의 주덛 요인이 미국가 의 판계라면 향후 한국의 졍제성 장를 한졸간의 판계 독, 한종 타ㅇㅐㅔ 닫ㄹㅆ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양



 ㄷ.


# 한 중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 및 대응방안 

> 장 은 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강사)

## I. 들어가며

지금 한국은 국제경제의 글로벌화 틀안에 지속적인 지역주의 확대 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생존 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FTA 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를 시작으로 EU 와 미국 등 세계 거대시장과의 FTA 를 체결하였으 며 현재 9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3개국과의 협상은 이미 타결 되었다. 협상중인 국가도 RCEP1)를 포함하여 6 개국에 이른다.2) 이렇 듯 한국이 동시다발적인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GATT에 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수혜국으로서 세계 무역 대국 10 위 안에 진입한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핵심이 대외 교역에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통상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 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FTA는 적극 추진해야 할 전략적 사 항이다.

1) $\operatorname{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16 개국을 포함한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 이다. 2012년 11월 20 일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2015년 말 타결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http://www.fta.go.kr/(FTA강국, KOREA)

FTA 기체결국을 비롯하여 협상중인 국가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의 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중FTA다. 그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인접성을 비롯하여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분모를 향유하며 수 교이후 양국 간 교역의 확대는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현재 매력적인 내수시장과 한국의 최대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중국과의 FTA 의 목적은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주변 경쟁국들 보다 먼저 선점하여 향후 우리 경 제의 발전지속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번째 한•중 FTA를 통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중국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 및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자 함이다. 셋째, 중국의 대한 투자 유치의 확대 및 우리나라와 FTA 를 체결한 미국 유럽 기업의 중국시장을 겨냥한 한국 투자유치와 이 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3 )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 정에서의 글로벌 FTA네트워크 완성으로 아시아권역에서 우리의 주도 적인 위상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등의 포괄적인 FTA 를 지향하고 있으 며 중국과의 FTA협상에서의 쟁점은 우리가 가진 경쟁우위 분야에서 개방의 극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금융, 문화,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는 중국의 WTO양허 수준 이상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자격 상호인 정은 실질적인 이익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분 야의 개방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한다.

서비스 분야 중에서 관광분야에 대해 양국을 비교해보면 관광자원 은 중국이 한국보다 풍부하나 현재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세계화 전략
3) 박정현, "한•중 FTA협상: 현황과 전망", 관세와무역 제44권 통권481호, 2012년 6 월, 16 면.

과 연계를 시켜 새로운 관광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 중국과 의 경쟁에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가지는 고 부가가치를 인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국내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140,028$ 명이며 그 중 중국인 관광객들은 $2.641,000$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3.7 \%$ 를 차지하였다.4) 그 배경 으로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아시아 전역에 불어 닥친 한류열풍 과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제 2 의 한류열풍 및 중국경제 고성장의 결과 물인 국민 소득증가가 큰 역할을 하여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지 중 인 접국인 한국을 찾고 있다. 관광 서비스 분야는 그간 상당부분 개방이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 영역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 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협상 체결을 위하여 한.중 양국의 FTA 체결에 따른 관광서비 스의 영향 및 대응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 П. 한.중 FTA 와 관광서비스 분야 쟁점과 전망

## 1. FTA 와 관광서비스 산업

세계적인 지역경제 통합의 조류에 힘입어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경 제협력체 및 환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지금 현 재, 한•중 FTA 를 비롯한 한•중•일 FTA 가 협상개시 되었고 APEC 이나 TPPA5)등을 통해 현실화 되고 있다. FTA는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참

[^8]가국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관광산업 발전과 FTA 의 관계를 살펴보 면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른 무역협정 회원국들의 구조적인 변 화를 통해 회원국들 사이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 안들이 마련될 것이고 이는 자국의 관광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 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FTA 를 통한 무역의 자유화는 관광분야에 대해 사업목적의 여행과 휴가여행을 증가시키고 관광산업 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AFTA를 비롯하여 수많은 FTA 사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체결 당사국간의 관광교류를 촉 진하고 관광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4년 2월에 체결된 미국과 호주와의 FTA, 호주와 태국 간의 FTA, 그리고 2001년 11월에 발표된 일본과 싱가포르 FTA 신시 대경제연합협정(JSEPA)6)은 그 선례라 할 수 있다.7) 또한 한.미FTA의 발효로 인한 GDP성장,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로부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8)

미국에 이어 G2로 부상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및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해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9]이들은 전세계 관광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세계 관광시장의 블루칩이라 불릴 정도로 소비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내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국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카지노장을 건설하는 등의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 명중 1 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400 만에 육박하였으며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제 주, 부산 등지는 이들 덕분에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정부는 2010년에서 2012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 여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2012년에 1,000만 명대로 증대시키고 외국 관광객들의 지역분산을 도모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과 일반국민과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한국관광 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9) 이렇게 적극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도 모하고 있는 현 시점에 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 수출로 인한 제 2 의 한류열풍으로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끊 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중국과 FTA 협상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1 월 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400 만에서 1000만 시대로,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는 1199 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부 가가치 유발 효과는 우리나라의 명목 경제성장률 (GDP)의 $1.6 \%$ 에 해 당된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한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비한 돈 은 2 천 달러가 넘고 대부분의 지출은 쇼핑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한국은 좋은 관광지라는 인식 보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10]때 적절한 쇼핑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0 월 중국 정부는 원가 이하의 수준 낮은 패키지 관광상품 판매나 쇼 핑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관광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관광법 시행으로 국내 관광업계의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단체 관광객들의 일시적인 감소 외에 올해까지 그들의 국내 소비에 있어서 는 실질적인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 들로 인한 여행수입 증가로 대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 흑자로 전환 하여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하였다.10)

## 2. 한•중 양국의 FTA 서비스협정 내용

## 2.1 중국의 FTA서비스 협정 내용

중국과 홍콩의 CEPA서비스 협정의 양허안 기재방식은 GATS의 포 지티브 방식을 사용하였다. 총 18 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보충협상을 통한 개방분야 확대로 총 개방 분야는 40 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 관광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른 내 용으로는 시장접근, 서비스 공급자, 관광협력,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으로 구성되어 시장접근에 대해 양측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자유화를 확대해 가기로 합의하였 다. 중국은 홍콩과의 CEPA 에서 WTO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합의하였다.

중국 아세안 FTA 는 전문가, 통신, 유통, 교육, 금융, 운송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가 모두 미기재 되어 있고 DDA양허안 과 동일한 개방수준을 보인 부문은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0) 중국의 여행수지 기여율은 2011년 약 $34 \%, 2012$ 년 약 $101 \%$ 로 상승 추세. 현대경 제연구원,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요우커(遊客)의 특징과 경제 적 효과", 14-04 (통권 555호) 2014. 01. 27. 제 2면.

환경 서비스 및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분야이다.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 는 중국이 OECD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것 으로서 최초의 포괄적FTA라고 지칭할 수 있다. 기존의 FTA체결 방식 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 투자 협상을 일괄적으로 포함한 협상이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투자자대 국가소송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 구체적 약속, 추가약속, 국내규제, 자격 인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체결한 FTA 서비스 분야 중 가장 폭넓은 개방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FTA서비스 분야 양허안은 GATS 및 DDA 양허안에서 실질적인 큰 폭의 개방을 이루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개방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지리적 인접 국가 및 자원 확보 중심으로 체결해왔던 FTA 수준을 넘어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은 개방 수준과 더불어, 그동안 중국이 민감하게 여겨온 분야에 대해서도 협 력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11)

## 2.2 한국의 FTA 서비스 협정 내용

한•미 FTA 서비스무역 협정에서는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 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 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 회계, 세무)를 미국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도 방 송 서비스 분야,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 부분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고 일부 분야를 제외하 고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한국 아
11)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FTA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19개 경제권을 중심으로-", Trade Focus, ,2014년 3월.

세안 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은 기존의 한•미 FTA수준보다 낮으며 WTO DDA 시 제출한 양허 수준에 아세안측의 개방 요청을 일부 반영 한 수준이었다．한 아세안 서비스 협정은 각국의 재량권 하의 보조금 운용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한•중 양국의 관광서비스 산업 정책
3.1 중국의 관광서비스 산업 정책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후 중국의 관광산업은 3 차 산업에서 가장 잠 재력이 높은 신흥산업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국민경제성장에 새로운 성장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아울러 중국 경제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 기침체 속에도 지속적인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 에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및 서비스 산업 분야를 장려하여 산업구조 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에 더 큰 박차 를 가하였다．중국정부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관광정책을 더 욱 완화하였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시장에 국가관광 국（国家旅游局）지국 설치 등을 통해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를 기초단계로 하며 2006년부터 2010년 까지를 진흥단계，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강화단계，마지막 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완성단계로 하는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2)}$ 우선 기초단 계에서는 관광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건설하며 정책의 구 체화 및 관광체계의 구조조정，서부 대개발 등이 포함된다．다음 진흥 단계에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12）http：／／wenku．baidu．com／，尹正江，＂我国旅游经济的发展战略＂，

중국의 관광산업 규모를 세계 제 3 위로 끌어올렸다．다음으로 현재 강화단계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수요 에 부흥하기 위해 관광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상품의 경쟁력，차 별성，서비스 등의 제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완성단계에서는 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관광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계 획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산업정책은 관광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고 자세하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정책13）을 세워 관광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정부주도하에 지역적으로 다양한 관광 협력체계를 맺어 통일된 관리방식으로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14)}$

중국은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다 수년 앞선 1997년 이미 주 5 일제 근무를 시작하였다．이는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여 가활동，관광 등의 확대로 이어졌고 관광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 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15）상술한 내용과 이러한 특징을 포함하여 우리는 FTA 를 통한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중투자를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으로 인한 경쟁력 보유와 의료， 한류，쇼핑，테마 등의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고 생각된다．향후 중국 관광객 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의 관광정 책을 잘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티엔진（天津）의＂旅游三箭齐发＂；후베이（湖北）의＂两圈一带，都市休闲旅游＂；지린（吉林）의＂东北亚区域旅游合作＂등이다．
14）马淑红，＂中韩旅游政策的比较分析研究＂，渤海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年 7月 第4期，第64页。
15）서창배＂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전략＂，한국동북아논총， Vol． 57 No．－2010년 77면．
3.2 한국의 관광서비스 산업 정책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 는 동시에 최근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조업의 한계를 인 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OECD자 료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산업은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하며 특히 관 광객의 입국 증가율이나 수입은 다른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뒤 처지고 있다고 한다．관광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 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그 중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관광산업의 발전 초기에 정부주도에 의한 법률과 법제 완비 에 힘을 쏟아 관광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은 한국의 관 광산업이 법규범 아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관광정책은 1972년＇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시작으로 1981년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여 국토개발에 대한 법률정책을 명확히 하 였고 1982년의＇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팽창억제와 지 방발전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또한 한국정부는 관광정책의 지속성 과 규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000－2020년까지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국토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연 및 생태 환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광의 공통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6）
지금 한국은 관광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新성 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관광객 유치확대，의료，문화，테마， 쇼핑 등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과

[^11]민간투자 촉진, 친 서민 복지관광 지원확대,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실 현이라는 5 대 전략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의 주요 시장인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여러 가지 관 광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관광 이미지 개선과 동북아 관광대국의 입지 를 다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4. 한•중 FTA 와 관광서비스 분야 쟁점

FTA체결로 인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끼리 관광교류와 관련된 장벽을 없애는 것이 협상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관광교류는 인적 이동을 통한 교류이므로 여행 관련 한 불편사항이 주요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비자 발급 등의 출입국 관련 정책, 국내 관광 기관의 구조, 외국인 투자 및 지분의 제한과 고용의 제한 등이 있고 관광개발 사업절차의 복잡성 및 법규의 분권화와, 조세 장벽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통번역 서비스 같은 관광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 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에 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GTAS에서 명시하 고 있는 시장접근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 총 영 업량 및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총 고용인력 제한, 서비스 공급기업 의 업무형태 제한이나 합작투자제한, 외국인의 지분참여 제한 등이 있다. 관광서비스는 특히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포함되므로 위반사항 이 없도록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편, 내국민대우 차원의 위반사항은 서비스 분야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교육기관의 학 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나 서비스 공급의 허가요건으로 자국 언어 구사능력을 시험하는 경우, 국내거주 요구, 내국민에게만 한정된 보조 금지원 등이 내국민대우 차원의 제약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관

광시장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제한사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 대표적 서비스보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내외 투자호텔을 불문하고, 자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 에 위배되지 않으며, 카지노업과 국제회의업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항,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은 고용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써 여타 지방 의 내국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우 대 위배조항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한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의 법령을 마련하여 우대하고 있다.17)

중국과의 관광서비스 개방에 관한 쟁점으로는 양허의 정도와 외국 업체 차별 등의 불공정거래 분야 그 외 상대국 법규의 시행 및 개선 에 관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 자국의 여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여행주선업체에 대 한 차별을 시행하여 왔으나 2010년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해외 관광 업무 시범경영감독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금지 되었던 합자 여행사의 국외여행 업무를 허가하여 중국인의 해외여행, 홍콩 마카오 등의 관광서비스 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 여행사에 중국 해외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여행업계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여행주선대행업 본사가 직영하는 지점만 인정하고 프랜차이즈 는 불허하고 있어 한국업체 및 외자 여행사들에게 불리하며 또한 여 행사의 옥외 광고 금지로 인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여행사의 홍보하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한국은 여행사가 항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수입으로
17) 김철원, "한•미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책, 한국관광정책, Vol.No.24, 2006년, 제 54면.

취득하며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어있다. 반면 중국은 온라인 시스템 이 발달하지 않고 은행 계좌 입금방식이 사용되어 수익창출에 문제점 이 있다.
지금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 제조업보다 서비스 시장 선 점에서 오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비 관세장벽 등이 포함된 포괄적 FTA 추진해야 한다. 상품 분야에 있어 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인하.와 철폐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분야에 관해서는 서비스 장벽의 완화와 철폐에 대한 합의와 투자 자유화 촉진 및 보호 강화로 중국 서비스시 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투명성 증진과 지재권 보호 강화 및 경제 협 력 의 증진 등을 통해 중국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5. 관광부문의 FTA 체결 효과 및 전망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수 지 흑자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18) 그러나 대기업 주력 업 종에 집중된 수출이 국내산업 부가가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미 제조업위주의 성장 한계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해 있고 2012년 기준으로 국내 고용 의 $69.3 \%$ 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이들의 수출산업 화가 시급하며 또한, 과포화된 좁은 내수시장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 다. 한국의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북미 및 아시아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8) http://www.tradeday.or.kr(KITA)한국무역협회.

중국과의 FTA가 협상중에 있고 중국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 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을 잘 이용하여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공략할 기회로 삼아야 한 다.19)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적자에서 2012년 흑자로 반전되어 전년 대비 $2.0 \%$ 성장하였고 전년 대비 $1.3 \%$ 감소한 상품 수출의 시장 점유 율 $3.0 \%$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서비스업 명목 GDP비중은 2011년 43.4\%로 한국의 1980년대 수준이며 서비스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비 중이 낮은 중국은 향후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한국의 대 중국 서비스 수출에 있어 서비스 무역장벽을 감축하면 양국의 서비스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까지 서비스 수지 적자 중에 관광 서비스가 포함되었으나 한류 열풍으로 인한 문화상품 수출 증가 및 여행수지 적자폭이 개선되어 2013년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 였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로 인한 국민 경제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음 식, 숙박, 교통, 의료, 창고 및 통신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관광서 비스는 FTA 체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보다 GDP성장, 외국인투자증 대, 등과 같은 경제파급효과로부터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 교류의 확대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 고 숙박이나 여행업무 등의 노동서비스 관련산업에 있어 고용창출 효 과가 나타날 것이고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둘째, FTA 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은 그와 관련된 숙박, 외식, 오 락, 리조트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를 유발하고 이를 통한 외화 증가 및 관광 서비스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며
19) "주요국의 서비스규제조치 현황-8대 수출유망산업을 중심으로-", KOTRA, 2013년 12월.

관광서비스의 파생직종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FTA 를 통한 관광산업의 개방은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 하여 궁극적인 산업구조 개혁에 이바지 할 것이며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FTA 체결은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관광 과 관련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파생산 업의 성장으로 인한 투자 확대로 양국 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으로 예상된다．특히 중국이 최근 진행한 FTA 에서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예를 들면，뉴질랜 드와의 FTA 에서 관광서비스를 규제하던 기간 제한이나 지역 제한 등 이 2011년에 체결된 2건의 서비스 추가 개방 협상을 통해 폐지 되었 고 기타 제한도 완화 되었다．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 관광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 III．중국 관광법（旅游法）의 내응 및 시사점

## 1．중국 관광법（旅游法）의 내용 및 특징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산업 또한 덩달아 발전하여 중국의 국내 관광시장의 규모는 현재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 다．${ }^{20)}$ 중국에서 관광서비스 산업은 종합적인 관광법제가 제정되기 전 관광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법규와 부처 규정에 의해 규율되어 져 왔다． 2000 년들어 중국의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른 관광 20）第二期年度《中國游客境外旅游調査報告2013》，2013年8月21日發布，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문제해결의 필요에 의해 중국 정부는 오랜 숙 려 끝에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하고 지 속적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관광법（旅游法）21）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22）

중화인민공화국관광 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은 중국 최초의 관광 관련 종합 법률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내용은 제 1 장 총칙，제 2 장 관광객，제 3 장 관광계획 및 촉진，제 4 장 관광사업，제 5 장 관광 서비스계약，제 6 장 관광안전，제 7 장 관광관리감독，제 8 장 관광분쟁 처리，제 9장 법률책임，제 10장 부칙으로 총 10 장 111 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관광법（旅游法）은 관광산업의 지위와 특성에 근거한 관광입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 특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종합입법 형식을 채택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통일 된 서비스 및 시장 규칙을 마련하였다．각 시장주체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광 시장의 단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국 관광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예방조치와 각급 인민정부에 의 해 편성된 관광개발 계획상의 관광자원 이용에 관하여 통일적인 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 관광지의 관광 시설 및 여러 관련 프로그램들은 당해 지역 내의 토지이용종합계획，도시와 농촌계획，환 경보호계획 및 기타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

21）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여유법（旅游法）을＇음＇그대로가 아닌 편의상＇관광법＇으로 표기함을 밝힙니다．
22）2013년 4월 25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의 표결에서 150 표의 찬성으로 통과된＂관광법（旅游法）＂은 2013년 10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었 다．

칙들과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23）또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된 여행피해 신고처리 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신고처리 기구는 신고접수 후 즉시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관할 사건이 아닐 시 에는 즉시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관광발전 계획의 전반적인 통일성을 꾀하고 있다．

둘째，관광객과 관광사업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중국 정부는 관광산업분야에서 관 광객들의 안전과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광객과 관광사업자간의 권리，의무 등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분쟁발생시 화해，협상，조 정，중재，소송 등을 방법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4)}$
관광법 제 35 조 규정에 따르면 여행사는 불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마이너스비용＂의 호객행위 및 물건을 강매하고 추 가 요금이 발생되는 옵션을 넣는 등의 부당한 이익행위의 행사를 금 지하여25）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그리고 관광지의 입장료에 관하여 입장료 인상은 최소 6 개 월 전에 공고를 해야 하며 입장료 인상절차 규정에 의하면＂공공자원 을 이용한 관광지의 입장료 및 그 외 비용의 인상행위는 엄격한 절차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공청회를 통하여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 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그 외 가이드비용 선납 등의 그 어떤 여행수수료도 사전 부과할 수 없고 관광 사업자 및 가 이드의 심각한 불법운영에 관하여는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또는 자격 취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광객의 권리 보호 규정을 두어 법률상의 보호를 공고히 하고 있다．

23）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第17，19条。
24）楊富斌，＂《旅游法》的十大制度創新＂，法學雜志，2013年第10期，第28頁。
25）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第 35 条。
26）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第 43 条。

돌발상황이나 관광 중 사고에 관한 관광안전 관련 내용은 제 6장에 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인구 대국인 중국의 특성상 관 광지의 관광객 수용인원 초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매년 중국의 황금휴가기간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각지에서 몰 려든 관광객들로 인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그 심 각성이 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기관이 최대 수용인원의 수량 을 제한하고 있다．만약 이를 초과할시 적절한 유량 통제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고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또한 관광계약 당사자들 의 권리에 관하여는 관광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여행사 와 관광객 양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 조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관광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인 관광객들의 선진적인 관광문화 의식 고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제 10 조 및 13 조 규정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민족적 풍습이나 종교적 신념의 존중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전통문화와 풍속 및 종교 또한 존중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간의 단합과 화해를 조장하고 있다．현 재 중국의 해외 관광객들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경제발전속도를 따라 가지 못한 수준 낮은 문화시민의식을 가진 중국인들의 행태가 해외 곳 곳에서 표출되고 있어 현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것이 사회 문제로까지 급부상하자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의 문화시민의식 및 선진적인 관광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질서와 공중도덕 준수 및 생 태환경 및 관광자원 보호에 관한 내용을 관광법에 담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관광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종합입법 형식으로서 관광객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국민 관광권의 보장을 꼽을 수 있고 또한 관광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며 통일된 관광시장 준칙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27）그 다음으로 법규상에 관광산업의

27）尹中卿，＂關于《中湖人民共和國旅游法（草案）》的說明＂，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公報2013年3月，第457頁。

발전과 경제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부와 지방이 하나의 통일 된 계획을 실현하는 적극성의 발휘와 보편적인 사회적 효용가치를 도 출하기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그동안 경제성장에만 중점을 둔 중 국이 환경적 가치에도 눈을 돌려 환경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의 통일성 강화를 둔 것은 사회발전 뿐만 아니라 중국법제 발전에 있 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2．중국 관광법의 시사점

제 12 차 5 개년 경제개발（＂十二五＂规划）단계인 지금 현재 중국 정부 는 관광산업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새로운 신흥산업 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에＂관광법（旅游法）＂의 출현은 관광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국민의 관광 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법으로 보장한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 다．${ }^{28)}$ 특히＂관광법（旅游法）＂은 새로운 휴가 제도를 실현시키고 중국 국내 관광소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실질적으로는 관광 여가산업의 발전촉진을 위한 관광서비스의 종합적인 법률로서 관광서비스의 높은 발전가능성과 효용성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작용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중국은 그동안 발생한 대지진과 여러 차례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동，조류독감과 그 외 경제성장의 안정세 등으로 관 광소비의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의 방향을 해외 수출에서 내수시장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관광서비스 시 장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이 또한 관광법 제정의 중요한 요인이 자 관광법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서 중국의 관광법제의 제정 시행은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그 외에도 중국의 관광법은 중국의 관광산업발전과 한•중

[^12]양국 간의 국제 관광서비스의 교류 및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의 관광법 시행을 계기로 중국 관광 시장의 질적 성장과 양국의 실질적인 업무 교류의 강화를 통한 국내 관광서비스의 개선과 구조조정의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 로 양국의 관광서비스 발전의 제고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2013년 12 월 5 일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합리한 저가 덤핑관 광, 쇼핑 강요 등의 단체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갱신제를 시행하고 12 월 4일부터 기 준 미달 여행사에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아울러 지난 10 월 24 일에는 중국 쿤밍에서 열린 한•중 관광장관회담에서 '한•중관 광 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발족과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여행사 간 소통창구 마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29)}$

정부의 관광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관광객의 권리보호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광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 한국 관광법의 내용 및 특징

한국의 관광관련 법규는 중국 과 같은 독립된 관광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을 규율하는 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 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 레저와 관광에 대한 환경변화와 개인적 가치 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여가를 즐기려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한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법체계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관광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사법상의 계약법적 측면, 민법과 각종 소
29)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10.24.)

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최근에 여행시 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여행소 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행업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행업 법안이 국회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 }^{30 \text { ) }}$
여행계약은 당사자인 여행업자와 여행자사이에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소비자기 본법, 관광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여행계약의 다양성 수용과 함께 직접적인 여행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 한 소비자보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여행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 할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산업인 관광업을 발전시키 고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구분하여 자율과 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 3.1 한국 관광법률 체계의 변천

한국의 관광법규는 1961년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을 시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관광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62년 국제관광공사법이 제정되어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가 설립되 었다. 이 시기의 관광정책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자획득에 있 었으며 한국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체제 정비기 였다. 이러한 관광 정책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지정되고 관광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강 화되었다. 1972년 정부는 관광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 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였고 1975 년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단지
30) 박광동, "일본 여행업법과 우리나라 여행업 법안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 36 권 제 1호, 2012년. 제 374면.

개발 촉진에 열을 올렸다. 또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관 광객 증가에 기여를 하였으며 1978 년에는 해외 관광객 100 만 명을 돌 파하는 획기적인 기록을 남겼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 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1986년에는 '올림픽대회에 대 비한 관광숙박업등의 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숙박시설의 확충 이 이루어졌고 외국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서비스의 개선 및 정비 가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관광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목표로 다양 한 지원과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평가되면서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전략이 이루어졌다.

## 3.2. 현행 한국 관광법률 체계의 문제점

현재 한국의 관광법체계는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개별법들이 편재되어있다.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문제 점으로는 개별적 실효성이 미약하고 법률간의 영역이 불분명하며 실 질적인 수립절차나 수립주체 등의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관광진흥법의 경우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와 관광개발, 관광진흥 과 홍보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에 대한 육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대부분 사업절차에 관한 규정들로 되어 있어 사업법, 규제법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급속한 변화의 예를 들면 생태관광, 의료관 광, 체험관광 등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였으나 법제도적으로 미흡하 며 진흥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절차와 규제위주로 흘러 왔으며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추상적이고 규제와 처벌 조항은 상세하여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국관 광의 대도약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31) 또 31) 장병권, "한국관광 대도약을 위한 관광법제 정비방안", 관광학연구 제 35 권 제 4

한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관광산업과 관광 사업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 어야하며32）아울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 적인 시장진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투자확대에 관 한 투자정보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투자 펀드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아울러 관광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과 인적자원 개발 및 전문화 정책등도 고 려하여 법제정비에 포함해야 한다．최근의 한국의 관광산업을 살펴보 면 다발적인 FTA의 진행과 경제성장의 약세，그리고 다시 치솟는 한 류열풍 등으로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의 동전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한국의 관광서비스 산업의 향후 방향성은 얼마나 위기를 잘 극 복하고 기회를 현명하게 붙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IV．한．중 FTA 관광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FTA 는 WTO 에 의한 다자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서 세계 각국이 지역화와 블록화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동시다발적이고 전략적인 FTA 를 추진하고 있다．이제 글로벌 경 쟁의 중심은 서비스 분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서비스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국제경제영역에서 글로벌 경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우리나라는 서비스 무역 중 관광서비스가 운송서비스와 더불 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 광객들이 증가하여 새로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장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넓은 영토와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고 자유화가 추진되 면 양국의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

[^13]32）류광훈，＂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법 제정방향＂，한국관광학회 제 62 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III， 2007 제 128 면．

공되는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비해 관광자원 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향후 장기적인 경제발전 효 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서비스 수출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협상에 임해야 한 다. 중국 관광서비스 분야는 현재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 호 정책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외국계 기업 차별 등의 폐쇄성 및 법규의 불투명성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는 형평과 상호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확보를 목표 로 협상전략을 세워야한다.

타국과의 FTA 협상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 자유화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중국과의 FTA서비스 협상에 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라나 당사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이 러한 협상 목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허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 하는 것이다. 양국의 관광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및 서비스 수지를 면 밀히 분석하여 개방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하며 관광서비스 시장은 분 야의 광범위성과 파생성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업의 개방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여기에 관한 우선순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광서비스 상품의 개발과 공급에 관한 향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 1,000 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관광 법에 부응하는 저가 싸구려 관광이라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덤핑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 해야 하며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광상품의 고부 가가치를 도모하여 고급화와 전략화를 추진하며 관광 외에도 지역적 인 볼거리와 체험을 연계하여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우선적으로 정부주도적인 관광서비스의 개방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사업 의 강화를 통해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와 투자증대가 이루어지고 궁 극적으로는 관광객의 안전보장과 서비스향상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다음으로 쇼핑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한국의 관광지를 적극 활용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융합된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는 관광 투어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뒤 지지 않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관광 상품 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것을 개발하기는커녕 보존에도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한 장소나 역사 유적 지를 발굴하여 스토리를 접목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광시장을 건설 하고 양국 간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과 관광코스를 개발하여33） 한•중 뿐만아니라 타국의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카지노 외에도 힐링 등의 의료，한류로 인한 드라마，영화，가요 등 의 여가 중심의 다양한 오락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 을 넓혀야 하며 우리의 음식문화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하여 여러 분야에 덜친 총체적이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제 공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을 위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또한 관광지별로 중국어 가능인력 확보와 중국어 안내판 설치 확대 및 관광의 편의를 위한 다 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3）熊涓，邵宁，＂中国与日本韩国旅游服务贸易合作研究＂，《生产力研究》 2013年01期，第91页。

## V．마치며

관광서비스산업의 장점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영역의 광범위성 으로 다양한 파생산업을 유발시키는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이라는 것에 있다．이것은 일자리의 확대와 증가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아울러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관광 산업이 생산 해내는 부가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관광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해외 수출은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광 자원 의 보호와 개발은 사람들의 정신적은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국내 관광시장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되었고34）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다．중국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관광법 제정과 관광산 업을 경제발전계획에서 주요 성장 산업에 올려놓아 관광서비스 산업 의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양국간의 관광서비스 산업에 관한 협 력과 기존의 대중국 관광사업의 재검토 및 수정，기타 대응방안의 마 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향후 중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에 대비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중국의 관광법 시행으로 가격 경쟁력보다 상품 경쟁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현행 저가 관광구조를 개편하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도록 한다．두 번째로 수도 권과 제주도 중심으로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34）http：／／news．ifeng．com／gundong／detail＿2013＿04／28／24756046＿0．shtml．来源：红网－潇湘晨报，2013年04月28日 00：19．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중국인 관광객의 주 목적인 쇼핑의 편 의 및 재방한 제고를 위해 쇼핑과 테마 시설이 결합된 전용 관광코스 의 개발 및 고급화와 차별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쇼핑중심 관광패턴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 역적 특성과 문화를 살린 체험 및 테마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고 문화 와 오락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 로 중국 관광객의 재방한을 위한 서비스 품질개선과 관광소비자의 민 원처리기관을 확충하여 중국인들의 관광권 확보와 중국어 인력보유를 위한 노력 및 개선이 필요하다.

관광교류는 상품교역과 전혀 다른 인적 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 및 여행목적국의 관광 상품과 관광인프라, 통화가치, 자 국과의 거리와 관광시간, 비자 등이 주로 고려된다. 한•중 양국의 관 광서비스 산업은 최근 성장속도가 빠르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업으로서 큰 가치가 있다. 아울러 관광과 정보통신, 항공, 선박 등의 운송, 금융결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고용, 소득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이 미국과의 관 계라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중 간의 관계 즉, 한•중 FTA 에 달 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양국의 무역의존도는 굉장히 밀접 한 관계에 있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FTA를 통한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라도 한.중 FTA는 피할 수 없는 선 택이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EU라는 거대시장과의 FTA체결로 경제적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간의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잘 이용해 야 할 것이며 새로운 新성장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의 성장은 한•중 FTA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정효희，이대휘，＂중국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국내 관광을 유도하 기 위한 마케팅 전략 분석＂，관광연구저널 27（4）：193－210， 2013.

임재필，정민섭，이선화，＂한•일간의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FTA 시 나리오 및 영향분석＂，호텔경영학연구 제 17권 제2호，한국호 텔외식경영학회，2008년 4월．

현대경제연구원，＂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요우커（遊客）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14－04（통권 555호）2014．01． 27. 박정현，＂한•중 FTA협상：현황과 전망＂，관세와무역 제44권 통권481 호，2012년 6월．

서창배＂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전략＂，한국 동북아논총，Vol． 57 No．－2010년．

김철원，＂한•미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책，한국관 광정책，Vol．－No．24，2006년

류광훈，＂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법 제정방향＂，한국관광 학회 제 62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III， 2007.

장병권，＂한국관광 대도약을 위한 관광법제 정비방안＂，관광학연구
제 35 권 제4호（통권 90），2011． 5.
박광동，＂일본 여행업법과 우리나라 여행업 법안에 대한 고찰＂，법
학논총 제 36권 제 1호，2012년．
한국무역협회，＂주요국 FTA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19개 경제권 을 중심으로＂－，Trade Focus，2014년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0．6． 1.

「한•미FTA 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한국관광공사，2007． 10. ＂주요국의 서비스규제조치 현황－8대 수출유망산업을 중심으로－＂， KOTRA，2013년 12월．

熊涓，邵宁，＂中国与日本韩国旅游服务贸易合作研究＂，《生产力研究》 2013年01期，第91页。

第二期年度《中国游客境外旅游调查报告2013》，2013年 8月21日发布。杨富斌，＂《旅游法》的十大制度创新＂，法学杂志，2013年第10期。马淑红，＂中韩旅游政策的比较分析研究＂，渤海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年 7月 第4期。

尹中卿，＂爸于《中湖人民共和国旅游法（草案）》的说明＂，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公报2013年3月，第457页。

高春艳，＂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草案）浅析＂，法制与经济（上旬）， 2012年04期。

䒜花帅，＂浅谈《旅游法》制定的必要性与紧迫性＂，吉林省教育学院学报 第28卷总294期，2012年第6期。

戴斌，李仲广，战冬梅，＂论旅游权利应是旅游立法的宗旨和目标＂，旅游学刊 第26卷 2011年第3期。

邹龙媒，熊文钊，＂旅游法的社会法属性刍议＂河北法学 第 31 卷第 9 期， 2013年9月。

兀婷，兀晶对，＂《旅游法》的几点解读＂，山西财政税务专科学校学报， 2013年第03期。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http：／／www．tradeday．or．kr（KITA）한국무역협회．
http：／／www．mcst．go．kr／문화체육 관광부
http：／／www．fta．go．kr／FTA공식 홈페이지
http：／／www．cnta．gov．cn（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http：／／www．ct148．com．cn（中国旅游法律网）


##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 및 국내법제 동향

김 성 천
(한국소비자원)1)

## I.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2)

## 1. 연도별 현황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여행 피해구제 접수 건 은 총 2,523 건임.
<표1>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 | 2010 | 2011 | 2012 | 합계 |
| :---: | :---: | :---: | :---: | :---: |
| 건수 | 441 | 781 | 591 | 1,813 |

2.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취소 거부로 인

1) 이 글은 개인적 견해임.
2) 한국소비자원, 2012년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06쪽 이하 ; 2011년 소비 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59쪽 이하 ; 2010년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46쪽 이하 참조.

한 분쟁으로 특약체결에 따른 과다 위약금 공제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계약취소거부건은 전체 1,813 건중 $51.4 \%$ 인 932건임.
<표 2>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일정• <br> 숙박지 <br> 임의변경 | 계약추거부 | 상해• • <br> 질 병 | 밍공권확ㅂ | 여권• <br> 비자 | 가이드 <br> 불성실 | 부당 <br> 요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2010 <br> 년 | 53 | 178 | 16 | 14 | 13 | 28 | 19 | 120 | 441 |
| 2011 <br> 년 | 111 | 408 | 16 | 27 | 9 | 21 | 17 | 172 | 781 |
| 2012 <br> 년 | 66 | 346 | 20 | 8 | 10 | 24 | 10 | 107 | 591 |
| 합계 | 230 | 932 | 52 | 49 | 32 | 73 | 46 | 399 | 1,813 |

3. 처리결과별 현황

처리 결과는 합의권고에 해당하는 여행서비스 부실 및 계약취소에 따른 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건이 가장 많고, 정보제공(600건, $33.1 \%$ (의 순임. .

총 1,813 건의 $52.6 \%$ 인 954 건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됨.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건은 144 건( $7.9 \%$ )임.
<표 3> 처리 결과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조정신청 전 합의 |  |  |  |  |  |  |  | $\left\lvert\, \begin{array}{\|c\|} \text { 조정 } \\ \text { 신청 } \end{array}\right.$ | $\begin{aligned} & \text { 정보 } \\ & \text { 제공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상담 } \\ \text { 기타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취하 } \\ & \text { 중지 } \end{aligned}$ | 처리 불능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 | 배상 | 계약 <br> 해제 | 부당 <br> 행위 <br> 시정 | 계 <br> 약 <br> 이 <br> 행 | 교 <br> 환 | $\begin{aligned} & \text { 보 } \\ & \text { 수 } \\ & \text { 수 } \\ & \text { 리 } \end{aligned}$ | 소계 |  |  |  |  |  |  |
| 2010년 | 102 | 95 | 26 | 1 | 3 |  |  | 227 | 26 | 137 | 18 | 28 | 5 | 441 |
| 2011년 | 204 | 174 | 13 | 26 | 3 | 1 | 1 | 422 | 67 | 271 | 5 | 14 | 2 | 781 |
| 2012년 | 162 | 110 | 19 | 12 | 2 |  |  | 305 | 51 | 192 | 19 | 16 | 8 | 591 |
| 합계 | 468 | 379 | 58 | 39 | 8 | 1 | 1 | 954 | 144 | 600 | 42 | 58 | 15 | 1,813 |

## ㅍ. 국내 여행관련 법제의 현항

여행 관련 국내법제는 관광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은 물론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관광 기본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법3), 여권법, 검역법, 관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음.

## 1.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
3) 항공법은 2013.3.23 개정시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등의 비치(제119조), 항공교통이용자보호 등(제 119 조의 2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등(제119조의3), 항공교통 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제119조의4) 등 항공교통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음.

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 로서 여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첫째, 기획여행을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3호). 기획여행"이란 여행 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 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 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함.

둘째, 여행법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 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 정의하고(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여 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함(제4조 제1항).

셋째,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제14조). 여행업자는 여행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야 함.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 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함.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려 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함.

## 2.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3.21, 제 20 차 개정, 1985 년 12.31 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 16 조 제 2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품목 중 여행업(2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음.
<표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30 . 여행업(2개 업종)의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

| 국내여행 (1-3)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br> 취소하는 경우 <br> <당일여행인 경우> <br> - 여행개시 3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br> <숙박여행인 경우> <br> - 여행개시 5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 일전까지 통보 시 | o 계약금 환급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 배상 | 국내여행 표준약관 과 동일하게 규정함. |


| 국내여행 (1-3)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 배상 |  |
| 국내여행 (2-3)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br> 취소하는 경우 <br> <당일여행인 경우> <br> - 여행개시 3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br> <숙박여행인 경우> <br> - 여행개시 5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 시 <br>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o 전액 환급 <br> o 요금의 $10 \%$ 배상 <br> o 요금의 $20 \%$ <br> 배상 <br> o 요금의 $30 \%$ <br> 배상 <br> o 전액 환급 <br> o 요금의 $10 \%$ 배상 <br> o 요금의 $20 \%$ <br> 배상 <br> o 요금의 $30 \%$ <br> 배상 |  |


| 국내여행 (2-3)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br> - 여행개시 3 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 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br>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o 계약금 환급 <br> o 계약금 환급 <br> 및 요금의 <br> $1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br> 및 요금의 <br> $2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br> 및 요금의 <br> $30 \%$ 배상 |  |


| 국내여행 (3-3) |  |  |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 고 |
| <숙박여행인 경우> <br>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 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o 계약금 환급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 배상 |  |  |


| 국내여행 (3-3)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br> 또는 통보가 없을 시 <br>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br>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br>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br>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br>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 (위약금) 배상 <br>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br>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br>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br>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


| 국 외 여 행(1-2) |  |  |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 고 |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br> - 여행개시 30 일전까지 $(\sim 30)$ 통보 시 - 여행개시 20 일전까지 $(29 \sim 20)$ 통보 시 |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br> o 계약금 환급 o 여행요금의 $10 \%$ 배상 |  |  |


| 국 외 여 행(1-2) |  |  |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 고 |
| - 여행개시 10 일전까지 $(19 \sim 10)$ 통보 시 <br> - 여행개시 8 일전까지 $(9 \sim 8)$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7 \sim 1)$ 통보 시 - 여행 당일 통보 시 <br>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br> - 여행개시 30 일전까지 $\sim 30$ ) 통보 시 <br> - 여행개시 20 일전까지 $(29 \sim 20)$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0 일전까지 $(19 \sim 10)$ 통보 시 <br> - 여행개시 8 일전까지 $(9 \sim 8)$ 통보 시 <br>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7 \sim 1)$ 통보 시 <br> - 여행 당일 통보 시 <br>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지 시 <br>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br>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o 여행요금의 $15 \%$ 배상 o 여행요금의 $20 \%$ 배상 o 여행요금의 $30 \%$ 배상 o 여행요금의 $5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br> o 여행요금의 $10 \%$ 배상 o 여행요금의 $15 \%$ 배상 o 여행요금의 $20 \%$ 배상 o 여행요금의 $30 \%$ 배상 o 여행요금의 $50 \%$ 배상 <br> o 계약금 환급 <br> o 여행요금의 $30 \%$ <br> 배상 <br> ㅇ 여행요금의 $50 \%$ <br> 배상 <br> o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o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  |  |


| 국 외 여 행(1-2) |  |  |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 고 |
|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 국 외 여 행(2-2) |  |  |
| :---: |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br>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br>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o 사업자는 <br>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br> 소비자에게 환급 <br> o 사업자는 그 <br> 차액을 <br> 소비자에게 환급 | * 단, 사업자가 이미 <br> 비용을 지급하고 <br>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행업표준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행업표준약관이 승인되어

있음.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0020 호), 국외여행 표준약관(제 10021 호)가 있음.
국내여행표준약관은 총 18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 의 구성(제4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제6조), 여행업자의 책임(제8 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제9조), 계약체결 거절(제 10 조), 여행요금(제 11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제 12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제13조), 계약출발 후 계약해지(제14조), 설 명의무(제 16 조) 등임.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총 20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 의 구성(제4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제6조), 여행업자의 책임(제8 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제9조), 계약체결 거절(제 10 조), 여행요금(제 11 조), 여행요금의 변경(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제13조), 손해배상(제 14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 15 조), 계약출발 후 계약해지(제16조), 설명의무(제18조) 등임.

## III. 여행 관련 법룰 제/개정안

## 1. 민법 개정안

1) 2004 년 민법개정안 4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안 제674조의2 내지 제674조 의9 신설)
(1) 여행은 대중화 - 보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으나 약관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옴.
(2) 여행자의 사전 계약해제권,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 책임 - 귀환운송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

[^14]을 신설함.
(3)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여행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5> 2004년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 관련 규정들


|  | 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추완(追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추완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추완청구를 할 수 없다. <br> (2)여행자는 대금감액청구 및 추완청구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r> 제674조의7(여행자의 해지권) (1)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r> (2)여행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미 실행된 여행이 여행자에게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3)여행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원래의 계약이 귀환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귀환운송의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의 부담으로 한다. <br>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 7 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계약으로 정한 여행종료일부터 3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br> 제674조의9(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여행주최자는 제 674 조의 6 및 제 674 조의 7 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여행자에게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 :---: | :---: |

2) 2013 년 민법개정안

법무부는 2013년 9월 30 일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 여행계약에 관 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했음5).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여 행은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 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임. 이에 따라 여행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 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 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민법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가. 여행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안 제674조의2)
(1)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계약은 대부분 여행업자가 제공 하는 일방적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여행자보호에 미흡한 부 분이 있음
(2)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분 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책임의 소재를 합리적으로 분배함으 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음

나.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674조의3)
(1) 여행계약은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2) 여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에게 사전해 제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15](3)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여행자 보호에 보다 만 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규정 신설(안 제674조의4)
(1) 여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 여행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 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를 명문화하고, 해지 후 에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 및 추가비용 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함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의 사전예방 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것을 기대됨

라.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74조의6 내지 안 제674조의8)
(1) 여행 도중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 그래서 여행주최자가 여 행의 하자에 관한 책임회피 조항을 약관에 둘 경우 여행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2)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여행의 중 대한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서 여행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 함. 그러나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지 을 필요가 있으므로 6 개월의 제척기간을 둠
(3) 여행의 하자에 대하여 여행자의 권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 여 여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화 (안 제674조의9)

## <표6> 2013년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 관련 규정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br> 제674조의3(여행개시 전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개시 <br>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br>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1)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br> (3)제 1 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당사자 쌍방의 사정에 속하거나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2 분의 1 씩 부담한다. <br>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



|  | 제 674 조의 9 (강행규정) 제 674 조의 3 , 제 674 조의 4 ,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제674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 | :---: |

2. 여행업 법안
1)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여행업법안6)

가. 제안이유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할 만큼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 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걸맞게 복잡성•다양성• 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국민경 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산업의 환경 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 행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1)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등의 시설 이용 알선 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합

[^16]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
(2)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 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3) 여행업자는 여행업과 관련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13조).
(4) 여행업자는 제공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여행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업장에 게시 또는 비차하도 록 함(안 제 14 조).
(5) 기획여행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여행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을 표시하 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6) 여행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7) 여행업무 거래의 공정성 및 여행안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32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 하거나 금융 -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2)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여행업법안7)

가. 제안 이유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할 만큼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행 산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의 경쟁

[^17]력 강화를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 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걸맞게 복잡성•다양성• 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국민경 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 환 경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1) 이 법은 여행업의 건전한 육성과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여행업은 종합여행 및 전문여행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함(안 제4조).
(3)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 에게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안 제5조).
(4) 여행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여행업자로 표시하 거나 여행업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8조).
(5)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6)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 15 조).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8)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함(안 제 25 조).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업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0조).

# 법제연구원 중국관광법 관련 토론 

김 수 한
（인천발전연구원）

## 1．최근 중국 관광업 동향

$\square$ 중국 관광산업은 상당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현 국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관광서비스무역 수지 적자 폭 증가

○ 2013년 중국 국내여행객 수는 33억 명으로 동기대비 $11.6 \%$ 증가
－2009년 수립한 목표였던 국내 관광수입 2．6조 위안（동기대비 $14 \%$ 성장）을 2년 앞서 달성

○ 2013 년 중국 방문 해외관광（入境旅游）객은 1.29 억 명으로 동기대 비 $3 \%$ 감소，관광외화수입은 480 억 달러로 동기대비 $4 \%$ 감소

○ 국내경제 성장과 위안화 가치상승에 힘입어 해외여행이 지속적 으로 증가
－2013년 동기대비 $18 \%$ 증가한 약 9,800 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여 행을 떠난 것으로 잠정 집계
－해외여행소비액은 1,200 억 달러로 동기대비 $20 \%$ 증가하여 관광 서비스무역 수지 적자는 720 억 달러에 이름

표1｜2013년 관광산업

| 구 분 |  | 금액 | 동기대비 | 관광객 수 | 동기대비 |
| :---: | :---: | :---: | :---: | :---: | :---: |
| 적자 <br> 2013년 관광 <br> 총 수입 | 2.7 억 위안 |  | 34 억 명 |  | 720 억 <br> 달러 |
| 국내관광 <br> 수입 | 2.6 억 위안 | $14 \%$ <br> 증가 | 33 억 명 | $11.6 \%$ <br> 증가 |  |
| 입국관광 <br> 수입 | 480 억 달러 | $4 \%$ 감소 | 1.29 억 명 | $3 \%$ 감소 |  |
| 출국관광 <br> 소비 | 12,000 억 <br> 달러 | $20 \%$ <br> 증가 | 9,800 만 <br> 명 | $18 \%$ <br> 증가 |  |

자료：中国旅游研究院（2014），『中国旅游经济蓝皮书：2013年旅游经济运行分析与2014年发展预测』；인천발전연구원 한중Zine 최신중국동향 vol． 125 에서 재인용
$\square$ 중국 당국은 여행객의＇출국＇을＇입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을 수립 도모
○ 2013년＜관광법（旅游法）＞과＜국민여행 및 여가요강（国民旅游休闲纲要）＞및 각종 반부패 관련 지침 발표
－国民旅游休闲纲要：2020년까지 직장인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봄 가을 수학여행 등을 장려．국민 여행 및 여가 시간 보장，국민 여행 및 여가 환경 개선，국민 여행 및 여가 인프라 건설 추진，관광상품 개발 강화 및 여행／관광 공공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6 가 지 주요 과제 제시
－八项规定：시진핑이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근검 절약 솔선수범，차량수행원 최소화，사회풍조개선，개별문건 남발 금 지 등을 강조
－六项禁令：공금을 사용한 상호방문，선물，잔치 등 금지하고 상급기 관에 토산품 증정을 금지하며，사례금，유가증권，지급증권，선물카

드 등 선물 안 주고 안 받기，허례허식 금지，표준금액초과 접대금 지，도박금지 등 강조

○ 중국 관광에 있어 공무－비즈니스 부분은 상당 수준 감소 예상， 향후 관광산업은 자유여행객과 대중의 수요에 맞추어 경제형 호텔，온라인관광서비스 등영역의 발전 기대

○ 2014년 관광산업 총 수입을 전년도 동기대비 $10 \%$ 증가한 3.2 억 위안으로 전망
－중국 국내관광 수입은 2.91 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2 \%$ 증가，관 광객 수는 35.8 억 명으로 $8.5 \%$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1 억 명으로 $1.5 \%$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광수입은 490 억 달러로 동기대비 $2 \%$ 증가할 것으 로 전망
－해외관광으로 인한 지출은 동기대비 $18 \%$ 증가한 14,000 억 달러 로 예상되며 2013년 보다 $16 \%$ 가 증가한 1.14 억 명이 해외관광 을 떠날 것으로 전망

표2｜2014년 관광산업 전망

| 구 분 | 금액 | 동기대비 | 관광객 수 | 동기대비 | 적자 |
| :---: | :---: | :---: | :---: | :---: | :---: |
| 2014 년 관광 <br> 총 수입 | 3.2 억 <br> 위안 | $10 \%$ 증가 | 37.1 억 명 |  | 910 억 <br> 달러 |
| 국내관광 <br> 수입 | 2.91 억 <br> 위안 | $12 \%$ 증가 | 35.8 억 명 | $8.5 \%$ 증가 |  |
| 입국관광 <br> 수입 | 490 억 <br> 달러 | $2 \%$ 증가 | 1.31 억 명 | $1.5 \%$ 증가 |  |
| 출국관광 <br> 소비 | 14,000 억 <br> 달러 | $18 \%$ 증가 | 1.14 억 명 | $16 \%$ 증가 |  |

자료：中国旅游研究院（2014），『中国旅游经济蓝皮书：2013年旅游经济运行分析与

2014年发展预测』；인천발전연구원 한중Zine 최신중국동향 vol．125에 서 재인용

## 2．인천 중국 관광객 현항

○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관광본부 및 인천의료관광재단 등 시 출연출자기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관광마케팅 진행
－해외 시장별 특화된 관광마케팅 전개
－인천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 및 상품개발 지원
－메가 이벤트 연계 통합 마케팅 추진（중국 주간행사，K－POP 등）
－개별 관광객（FIT）유치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크루즈，환승관광，인센티브 단체 등 신규 관광시장 공략

○ 인천도시공사에서 집계한 2013년 인천 해외관광객 유치 실적은 아래와 같음
－ $43 \%$ 를 점하는 전국 비중에 비해 인천시의 중화권 관광객 비중 은 $81.41 \%$ 에 달함

그림 1 ｜2013년 인천 해외관광객 시장별 유치 실적


| 구분 | 중화권 | 동남아 | 일본 | 구미주 | 크루즈 <br> 등 기타 | 합계 |
| :---: | :---: | :---: | :---: | :---: | :---: | :---: |
| 계 | 291,644 | 5,632 | 6,890 | 5,150 | 48,938 | 358,254 |
| 점유 <br> 율 | $81.41 \%$ | $1.57 \%$ | $1.92 \%$ | $1.44 \%$ | $13.66 \%$ | $100.00 \%$ |

자료 : 인천도시공사 내부자료
그림 2 | 2013년 인천 해외관광객 유형별 유치 실적


| 계 | 숙박 <br> 인센 <br> 티브 | 환승 | $\begin{gathered} \text { 이벤트 } \\ \text { 연계 } \\ \text { 유치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기 획 } \\ \text { 유치 } \\ \text { (중저 } \\ \text { 가) } \end{gathered}$ | 실버 <br> 교류 | 청 <br> 소 <br> 년 <br> 교 <br> 류 | $\begin{gathered} \text { 크루 } \\ \text { 즈 } \end{gathered}$ | 기타 개별자유여 행() |
| :---: | :---: | :---: | :---: | :---: | :---: | :---: | :---: | :---: |
| 358, | $\begin{gathered} 148,92 \\ 3 \end{gathered}$ | 14,142 | 17,224 | $\begin{gathered} 126,63 \\ 6 \end{gathered}$ | 1,441 | $\begin{gathered} 5,69 \\ 7 \end{gathered}$ | $\begin{gathered} 38,9 \\ 58 \end{gathered}$ | 5,233 |
| 254 | $\begin{gathered} 41.57 \\ \% \end{gathered}$ | 3.95\% | 4.81\% | $\begin{gathered} 35.35 \\ \% \end{gathered}$ | 0.40\% | $\begin{gathered} 1.59 \\ \% \end{gathered}$ | $\begin{gathered} 10.8 \\ 7 \% \end{gathered}$ | 1.46\% |

자료 : 인천도시공사 내부 자료

○ 인천시의 해외관광객 유형은 숙박인센티브 형，중저가 기획유치 형，그리고 최근 크루즈 관광 등이 전체의 약 $88 \%$ 를 점함
－동북아 관문으로서 인천이 갖는 공항，항만 등을 활용한 관광 유치 유형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독자적 해외관광상품의 개발은 여 전히 제한적임

巨 현재 개별자유여행 및 기타 목적 관광에 있어 유치실적이 미 약한 인천의 입장에서 여유법 등 해외관광수지 적자를 만회하 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그 효과가 가시 화될 경우 지역의 대 중국관광 실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으로 보여짐

■ 기존 관광정책의 내실화 하는 한편，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부 시장을 타켓으로 한 도시마케팅 진행 필요（5／20 허난정저우黃河旅遊節）
■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에 대한 정책 지원 지속
틴천 영종 카지노 사전인가에 따라 연계 레저관광 및 환승관 광에 대한 법제 및 정책 검토 필요

# 부산시 관광현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아니 

장 정 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I. 부산시 관광 기본 현황

1. 기구 및 인력

○ 관광진흥과장 산하 4담당 22 명

- 관광기획 7 명, 관광사업개발 2 명, 관광산업 4 명, 관광마케팅 8 명
- 유관기관 및 단체 : 부산관광공사(1본부 1실 4팀 124명), TPO (사 무국 5 명), 부산광역시관광협회(6명), 아시아드컨트리클럽(ᄌ주)(5팀 30명)

○ 2014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 | 경상예산2) | 사업예산 |
| :---: | :---: | :---: | :---: |
| 2014년도 | 16,488 | 335 | 16,153 |
| 2013년도 | 19,764 | 340 | 19,424 |

주: 본예산 기준

1) 본 자료는 부산광역시의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관광 진흥위원회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2. 부산관광 실태

○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 계 | 중국 | 일본 | 미국 | 러시아 | 영국 | 기타 |
| :---: | :---: | :---: | :---: | :---: | :---: | :---: | :---: |
| 2013 | 2,801 | 781 | 517 | 163 | 66 | 47 | 1,227 |
| 2012 | 2,614 | 591 | 602 | 146 | 63 | 43 | 1,169 |
| 2011 | 2,367 | 476 | 589 | 130 | 49 | 44 | 1,079 |

주: 2013년도 전국적으로 12,175 천명 중 부산 2,801천명(23\%) 방문

- 경로별 현황
(단위: 천명, \%)

| 연도 <br> 별 | 계 | 김해공항 |  | 국제여객터미 <br> 널 |  | 타지경유 |  | 외국선원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2,801 | 804 | 28.7 | 598 | 21.4 | 971 | 34.6 | 428 | 15.3 |
| 2012 | 2,614 | 742 | 28.4 | 536 | 20.5 | 934 | 35.7 | 403 | 15.4 |
| 2011 | 2,367 | 615 | 25.9 | 534 | 22.6 | 847 | 35.8 | 371 | 15.7 |

○ 목적별 현황
(단위: 천명, \%)

| 연도 별 | 계 | 관광 |  | 상용 |  | 공용 |  | 유학연수 |  | 기타 |  | 선원 승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율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비 <br> 율 | 인 <br> 원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율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비 율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 2013 | $\begin{gathered} 2,8 \\ 01 \end{gathered}$ | $\begin{aligned} & 1,6 \\ & 56 \end{aligned}$ | $\begin{gathered} 59 . \\ 1 \end{gathered}$ | 44 | 1.6 | 7 | 0.2 | 47 | 1.7 | $\begin{gathered} 24 \\ 5 \end{gathered}$ | 8.8 | 80 2 | 28. 6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 연도 별 | 계 | 관광 |  | 상용 |  | 공용 |  | 유학연수 |  | 기타 |  | $\begin{aligned} & \text { 선원• } \\ & \text { 승무원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율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비 율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율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율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율 } \end{aligned}$ | 인 원 | 비 율 |
| 2012 | $\begin{gathered} 2,6 \\ 14 \end{gathered}$ | $\begin{aligned} & 1,5 \\ & 59 \end{aligned}$ | $\begin{gathered} 59 . \\ 6 \end{gathered}$ | 41 | 1.6 | 6 | 0.2 | 25 | 1.0 | $\begin{gathered} 29 \\ 0 \end{gathered}$ | $\begin{gathered} 11 . \\ 1 . \end{gathered}$ | $\begin{gathered} 69 \\ 3 \end{gathered}$ | $\begin{gathered} 26 . \\ 5 \end{gathered}$ |
| 2011 | $\begin{gathered} 2,3 \\ 67 \end{gathered}$ | $\begin{aligned} & 1,4 \\ & 52 \end{aligned}$ | $\begin{gathered} 61 . \\ 3 \end{gathered}$ | 46 | 1.9 | 7 | 0.4 | 28 | 1.2 | $\begin{gathered} 15 \\ 0 \end{gathered}$ | 6.3 | 68 4 | 28. 9 |

- 관광 관련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 계 | 숙박 <br> 업 | 여행업 <br> $*$ | 관광객이용 <br> 시설업** | 국제회의업 | 관광편의시설 <br> 업 | 유원시설 <br> 업 | 카지노업 |
| :---: | :---: | :---: | :---: | :---: | :---: | :---: | :---: |
| 1,4 | 58 | 1,085 | 23 | 25 | 238 | 13 | 2 |
| 44 |  |  |  |  |  |  |  |

주: * 숙박업 58 개소(특급 11,1 급 14,2 급 12,3 급 14 , 콘도등 7 ), 굿스테이 30 개 소, 베니키아 3 개소
** 중국관광객 전담 여행사 : 2 개소

○ 관광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계 | 품질인증 <br> 문화체험 <br> 장 | 상설문화 <br> 공연장 | 부산향토음 <br> 식 <br> 지정업소 | 관광 <br> 안내 <br> 소 | 관광안 <br> 내도 | 관광안 <br> 내표지 <br> 판 | U -관광 <br> 안내시스 <br> 템 |
| :---: | :---: | :---: | :---: | :---: | :---: | :---: | :---: |
| 194 | 16 | 14 | 30 | 15 | 34 | 43 | 42 |

- 관광특구 현황

| 특구명 | 지정지역 | 면적(km2) | 지정일 |
| :---: | :---: | :---: | :---: |
| 해운대 |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 6.22 | 1994.8.31 |
| 용두산자갈치 | 중국 부평동•광복동 - 남포동 <br> 전 지 <br> 중 앙 동 - 동 광동 - 대 청동 - 보수 동 <br> 일부지역  | 1.08 | 2008.5.14 |

- 관광단지
\(\left.$$
\begin{array}{|c|c|c|c|c|}\hline \text { 관광지명 } & \text { 위 치 } & \text { 면 적 } & \text { 지정일자 } & \text { 비 고 } \\
\hline \text { 계 } & \text { 5개소 } & \begin{array}{c}3,272,4 \\
20\end{array} & & \\
\hline \text { 태종대 } & \begin{array}{c}\text { 영도구 } \\
\text { 동삼동 }\end{array} & \begin{array}{c}1,644,4 \\
60\end{array}
$$ \& \begin{array}{c}1969.1 . <br>

21\end{array} \& 유원지 지정\end{array}\right]\)| 수영구 |
| :---: |

○ 관광단지

| 관광단지명 | 위치 | 면적 | 지정일자 | 조성계획승 <br> 인 |
| :---: | :---: | :---: | :---: | :---: |
| 동부산 <br> 관광단지 | 기장군 기장읍 | 3,663 천m2(110만평) | 2005.3 .9 | 2006.3 .31 |

## ㅍ. 중국인 관광객 동향

1. 방문 동향

ㅇ 금년 8월말까지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4만3476명으로 전년(38만5915명)에 비해 $40.8 \%$ 급증

- 크루즈관광객 증가('13년도 전년대비 $71.4 \%$ 증 예상), 전세기 취항 (무한•석가장), 직항노선 증설('12년 7개 $\rightarrow$ ' 13 년 9개(서안•남경 신설))
- 처음으로 일본인 관광객(34만811명)을 누르고 부산 최대 관광객의 위치를 차지

연도별 부산방문 중국인 관광객수
(단위: 천명)

| 연도별 | 2009 | 2010 |  | 2011 |  | 2012 |  | 2013.8월 |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인 <br> 관광객 | 321 | 462 | $43.9 \%$ | 476 | $3 \%$ | 591 | $24.1 \%$ | 543 | $40.8 \%$ <br> $*$ |

주: *전년도 동기 대비
※ 외국인 관광객 현황(부산): ' 09 년 2,026 천명 $\rightarrow{ }^{\prime} 10$ 년 2,223 천명 $(9.7 \%$ 증 $)$ $\rightarrow{ }^{\prime} 11$ 년 2,367천명(6.5\% 증) $\rightarrow$ ' 12 년 2,614천명 $(10.4 \%$ 증 $) \rightarrow{ }^{\prime} 13$ 년(8월 까지) 1,891 천명(전년동기 대비 $9 \%$ 증)

## 2. 유치 여건

○ (기회요인)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 지속성장 전망, 중일 영토분쟁 으로 인한 중국인 방일관광 감소, 온라인(SNS, 유튜브 등)을 활 용한 실시간 관광정보공유 확대, 주요 도시 직항노선 증설
○ (위협요인)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저가관광 만연으로 부 산 관광 상품 경쟁력 약화, 저가관광상품 규제 위한 중국 여유 법 시행(10.1)3)에 따라 방한 관광상품 가격상승 - 단기적 관광객

[^18]
## III. 전략 및 추진과제

1. 유치목표 및 전략

| $\begin{gathered} \text { 2015년 } \\ \text { 유치 } \\ \text { 목표 } \end{gathered}$ | 중국인 관광객80만명(2013년) à 100만명(2015년) |  |  |
| :---: | :---: | :---: | :---: |
| 전략 |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 $\begin{aligned} & \text { 추진 } \\ & \text { 과제 } \end{aligned}$ | 1. 중국 직항노선 도시 마케팅 강화 <br> 2. 중국 현지여행사 및 언론매체 중심 마케팅 <br> 3. 지역여행업체 경쟁력 강화 |
|  | 수용태세 개선 |  | 4. 중국어 관광안내 기능 강화 <br> 5. 중국인 전용식당 확보 및 쇼핑환경 개선 <br> 6.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개선 |
|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 7. 크루즈관광 활성화 <br> 8. 의료관광 활성화 |
|  | 부산다운 관광상품 개발 |  | 9.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10. 체험관광상품 개발 <br> 11. 생태•자연친화 관광 활성화 <br> 12. 역사 - 문화 관광상품 개발 |

2. 세부전략
1)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 중국 직항노선 도시 마케팅 강화
○ 중국 현지여행사 및 언론매체 중심 마케팅
ㅇ 지역여행업체 경쟁력 강화
2) 수용태세 개선

○ 중국어 관광안내 기능 강화
○ 중국인 전용식당 확보 및 쇼핑환경 개선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개선
3)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크루즈관광 활성화

○ 의료관광 활성화
4) 부산다운 관광상품 개발

○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도입('14년)
○ 체험관광상품 개발
○ 생태•자연친화 관광 활성화
○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정 지 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최근 5 년간 연평균 $15.7 \%$ 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제 1 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 는 1 억명으로 추정하였음

○ 하지만 중국국가여유국 국장 邵琪伟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인 해 외여행객 수는 9,819 만 명이며，2014년에는 1 억명을 돌파할 것으 로 예측하면서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은 세계 관광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음

○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326，869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35.5 \%$ 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 으며，한국은 중국인의 주요 출국 목적지 국가 순위에서 홍콩， 마카오에 이은 3 위를 차지하고 있음
$\bigcirc$ 제주 관광에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 에 근 접하다는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제주 중국인관광객 입도 실태
○ 2008년 약 174,902 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 규모는 2012년 이미 100 만 명을 넘어섰음

○ 2013년 제주입도 중국인 관광객은 $1,812,172$ 명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41.8 \%$ 를 차지하였음
－2013년 제주입도 중국인관광객은 전년대비 $67.2 \%$ 증가하였으며， 제주입도 전체 외래관광객의 $77.6 \%$ 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2월 현재 193，997명이 제주방문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50．6\％성장하였음
＜표＞제주입도 중국인관광객 월별 현황
（단위：명）

| 구 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 년 | 2014 년 |
| :---: | :---: | :---: | :---: | :---: | :---: |
| 1월 | 14,739 | 9,351 | 46,926 | 51,606 | 83,987 |
| 2월 | 24,504 | 16,832 | 29,296 | 77,252 | 110,010 |
| 3월 | 16,333 | 17,836 | 40,355 | 73,007 |  |
| 4월 | 33,915 | 27,578 | 81,407 | 141,793 |  |
| 5월 | 40,492 | 34,113 | 90,599 | 115,104 |  |
| 6월 | 34,306 | 47,129 | 107,209 | 183,838 |  |
| 7월 | 48,409 | 78,719 | 169,237 | 307,406 |  |
| 8월 | 65,226 | 93,835 | 167,414 | 350,458 |  |
| 9월 | 42,172 | 78,518 | 108,131 | 222,443 |  |
| 10월 | 47,380 | 73,778 | 125,867 | 141,087 |  |
| 11월 | 24,000 | 52,384 | 66,596 | 81,010 |  |
| 12월 | 14,688 | 40,174 | 51,057 | 67,168 |  |
| 계 | 406,164 | 570,247 | $1,084,094$ | $1,812,172$ | 193,997 |
| 전년대비 | 57.2 | 40.4 | 90.1 | 67.2 | 50.6 |
| 증가율（\％） |  |  |  |  |  |
| 자뇨 제주 | 207 |  |  |  |  |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현재 제주와 중국 간의 항공노선을 살펴보면 2013년 여객기 기 준 총 8,555 편이 운항하였으며，이중 정기노선4）은 5,099 편，부정

4）정기노선은 현재 鄭州，長春，大連，福州，合肥，杭州，哈爾濱，寧波，南京，北京，浦東，瀋

기노선5）은 3,456 편 운항하였음 6$)$
$\bigcirc$ 항공편 이외에도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2013년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은 349，418명（184회） 으로 전년대비 $174.8 \%$ 증가하였음

○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2008년 시행 된 무사증 입국제도 운영，직항 전세기 노선확대，국제크루즈 입 항 급증，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제주관광 브랜드 파급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square$ 여유법 시행에 따른 제주관광 영향 및 대응전략
○ 2013년 10 월 1 일 시행된 여유법의 핵심인 덤핑관광 방지와 마이 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패키지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인들의 단처관광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인관광객의 양적 성장세에 상당한 영향 이 미칠 것임
－여유법 시행이후 전년 동기대비 약 $14.7 \%$ 증가하였지만 여유법 시행 이전 월평균 $81.2 \%$ 와 비교할 때 상당한 감소세를 보임7）

○ 중국의 여유법 시행 이후 10 월－ 12 월 제주입도 중국인관광객이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관광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음
－개별관광 비중은 $58.7 \%$ 로 여유법 시행 전에 비해 $14.4 \%$ 증가한 반면，단체관광 비중은 $51.4 \%$ 에서 $41.3 \%$ 로 감소하였음 8 ）

陽，武漢 등 13 곳을 운항하고 있다．
5）부정기 노선은 廣州，重慶，長沙，成都，呼和浩特，晉江，南昌，昆明，貴陽，桂林，牡丹江，南陵，石家莊，靑島，濟南，天津，太原，溫州，無錫，西安，廈門，延吉 등이 있음
6）한국공항공사 국제선 노선별 통계（2014．3．27）
7）2013년 11월 제주관광시장 동향분석 보고서，p．13．제주관광공사

##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정지형)

○ 또한 2013년 12월까지 중국관광객의 주요 쇼핑장소는 면세점 (43.8\%)으로 나타났지만 여유법 시행이후, 면세점 쇼핑은 감소하 고 지역상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9)
○ 중국 여유법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양적성장에 영향을 미 칠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마련의 계기가 될 것임
$\bigcirc$ 이에 따라 제주 또한 중국인관광객 수용을 위한 쇼핑인프라 확 충,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 권의 수용태세 정비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함

[^19]
# 중국 여유법 시행의 중국인 방한관광에 대한 영향 

최 경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중국인 방한관광의 양적 성장 지속
○ 2013년 10월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시행 이전의 감소 우려와는 달리 (+) 전년 동월대비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3년 10월 ~ 2014년 2월 동안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518,938$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9 \%$ 의 성장률을 보임

- 2013년 10월 ~ 2014년 2월 동안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순수관 광 목적)는 $1,119,214$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5.5 \%$ 의 성장률을 보임

○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개별관 광객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표 1>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단위 : 명, \%)

| 구분 | 10월 |  | 11월 |  | 12월 |  | 1월 |  |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성 <br> 장 <br> 률 | 수 | 성 장 률 | 수 | 성 장 률 | 수 | 성 장 률 | 수 | 성 장 률 |
| 2010 | 181,428 | 30.6 | 136,152 | 33.1 | 119,061 | 17.4 | 91,252 | -1.9 | 140,571 | 9.8 |
| 2011 | 214,681 | 18.3 | 174,164 | 27.9 | 159,080 | 33.6 | 113,927 | 24.8 | 157,019 | 11.7 |


| 2012 | 279,440 | 30.2 | 204,533 | 17.4 | 195,997 | 23.2 | 167,022 | 46.6 | 173,790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 343,273 | 22.8 | 276,428 | 35.2 | 276,234 | 40.9 | 196,371 | 17.6 | 249,698 | 43.7 |
| 2014 | - | - | - | - | - | - | 296,708 | 51.1 | 326,295 | 30.7 |

* 성장률 : 전년 동월대비 성장률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 2>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순수관광 목적)
(단위 : 명, \%)

| 구분 | 10 월 |  | 11월 |  | 12월 |  | 1월 |  |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성장 <br> 률 | 수 | 성장 <br> 률 | 수 | 성장 <br> 률 | 수 | 성장 <br> 률 | 수 | 성장 <br> 률 |
| 2010 | 107,237 | 39.8 | 75,686 | 50.6 | 58,987 | 23.7 | 40,433 | -7.3 | 60,605 | 135. <br> 9 |
| 2011 | 141,824 | 32.3 | 113,856 | 50.4 | 101,605 | 72.2 | 55,070 | 36.2 | 53,863 | -11.1 |
| 2012 | 204,866 | 44.5 | 155,503 | 36.6 | 148,320 | 46.0 | 106,606 | 93.6 | 74,895 | 39.0 |
| 2013 | 249,850 | 22.0 | 208,175 | 33.9 | 210,950 | 42.2 | 148,118 | 38.9 | 169,39 <br> 5 | 126. <br> 2 |
| 2014 | - | - | - | - | - | - | 230,706 | 55.8 | 219,53 <br> 3 | 29.6 |

* 성장률 : 전년 동월대비 성장률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국내 여행업계의 경영 악화 우려
○ 중국 여유법 시행은 단체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여 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중국 여행사들은 여유법의 적용 및 규제

정도를 관망하며 단체관광객 모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특 히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 여행사가 구성하는 쇼핑 및 옵션관광 항목 관련 중국 여유법의 금지 규정에 대해 중국 여행업계의 모호한 인식이 지속되고 이 에 따른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자 2013년 12월 16 일 중국여유국은 여유법 제35조 관련 규정의 집행에 대한 통 지를 발표함

여행사는 관광활동 중에 구체적인 쇼핑장소를 지정하고 별도의 옵션관광 항목을 안배할 때 성실신용, 자원평등, 협상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광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불합리한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관광객을 속여서도 안되고, 구체적인 쇼핑장소를 지정하고 별도의

옵션관광 항목을 안배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되며, 관련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관광객들의 일정 안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 중국 여행사들이 중국여유국의 통지 발표를 관광객과의 서면계 약 하에 쇼핑과 옵션관광 항목 구성에 대한 허가로 받아들임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 상품을 다시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함
○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쇼핑이 포함된 단체관광 상품 판매는 국내 여행업계의 경영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첫째, 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중국 여유법 시행 이전의 낮은 가격으로 되돌아감
$\bigcirc$ 둘째, 악성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여행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투어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bigcirc$ 즉,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중국인 방한관광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여유법 시행의 중국인 방한관광에 대한 영향 (최경은)

○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국 여행사와 한 국 랜드사 간의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 속적인 정책적 대응노력이 요구되며, 한-중 양국 정부의 실질적 인 업무 협력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여유법 관련 정책 추진현황 

하 용 국
법무부(출입국기획과)

## 1. 개 요

○ 2013년 한해 출입국자가 5천4백96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

○ 2013년 총 출입국자는 2012년보다 $9.2 \%$ 증가한 $54,963,287$ 명으로 이 중 국민이 $30,349,466$ 명이고, 외국인은 $24,613,821$ 명을 차지

ㅇ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입국자를 $\mathbf{1 2 0}$ 만 명 이나 크게 앞질러 외국인입국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

○ 2014. $1 \sim 2$ 월(춘절연휴) 중 주중공관의 사증발급도 최근 3 년간 평 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단체사증 역시 증가추세로서 중국《여유법》의 영향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


## 2. 중국인관광객 출입국 현항 및 정책 현항

○ 2013년 중국인은 전년(2012년)에 비해 $43.6 \%$ 증가한 $3,923,190$ 명 이 입국

-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법무부의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 로그램 시행,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 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 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2013년 출입국 통계

## 1. 2013 년 출입국자 현황

$\square$ 출입국자는 2012년 대비 $9.2 \%$ 증가한 $54,963,287$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text { 최근 } 10 \text { 년간 출입국자 증감 추이(승무원 포함) }
$$



○ 출입국자는 2005년에 3,000만 명을 넘어선 후 불과 7년 만에 5,000 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국민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외국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7 \%$ 의 큰 폭으로 증가

## 국민 출국자는 $15,153,341$ 명으로 2012년 14,065,176명 대비 $7.7 \%$ 증가

O 국민 출국자 $15,153,341$ 명 중 승무원을 제외한 출국자는 $13,834,472$ 명으로 2012년에 비해 $8.1 \%(103$ 만 명) 증가

- 연령별로는 30대가 315만 명, 40대 292만 명, 50대 249만 명 순 으로, $30 \sim 50$ 대가 전체의 $61.9 \%$ 를 차지하였습니다. 2012 년도에 비해 30 대가 $8.8 \%(25$ 만 명), 40 대가 $7.3 \%$ ( 20 만 명), 50 대가 $6.9 \%$ ( 16 만 명) 순으로 각각 증가

○ 국민 순출국자는 2013년에 8,446,110명으로 2012년의 7,830,506명 과 비교하여 $7.8 \%$ 증가

- 연령별로는 30 대 183 만 명, 40 대 156 만 명, 50 대 146 만 명, 20 대 142 만 명 순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20 \sim 50$ 대가 전체의 $78.3 \%$ 를 차지
※ 순출국자는 출국 횟수가 아닌 출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 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 년 동안 10 회 출국 하였더라도 순출국자로 집계할 때는 1 명으로 계산

○ 국민 총 출국자 $13,834,472$ 명 중 생애 처음으로 출국한 국민은 $1,280,241$ 명 ( $9.2 \%$ )이며, 최근 2 년 이내에 2 회 이상 출국한 국민은 7,798,361명(56.3\%)으로 나타남
$\square$ 외국인 입국자는 $\mathbf{1 2 , 2 0 0 , 4 1 7}$ 명으로 2012년 11,129,305명 대비 9.6\% 증가

○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10,678,334$ 명으로 2012년에 비 해 $5.4 \%$ ( 55 만 명)가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392만 명(36.7\%), 일본 271만 명(25.4\%), 미국 74만 명(6.9\%), 타이완 56만 명(5.3\%) 순이며, 2012년과 비교하여 중국(119만 명)과 홍콩(4만 명)은 증가한 반면, 일본(78만 명)과 타이완(4천 명)은 감소
- 입국목적별로는 관광•방문이 886 만 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45 만 명(4.3\%), 재외동포 28 만 명(2.6\%)순으로 나타남
- 입국유형별로는 단체관광(118만 명), 크루즈관광(49만 명), 제주도 무비자(43만 명) 등이며, 특히 크루즈관광은 2012년에 비해 $116.5 \%$ (26만 명)가 증가

○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2013년에는 3,923,190만 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무려 119만 명(43.6\%)이 증가

- 성별로는 여자 222만 명(56.6\%), 연령대별로는 20~30대 174만 명(44.3\%), 입국유형별로는 단체관광이 118 만 명(30.1\%)로 각각 수위를 차지

○ 외국인의 순입국자는 2013년에 8,238,953명으로 2012년의 7,865,385 명에 비해 37 만 명(4.7\%)이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312 만 명, 일본 188 만 명, 미국 52 만 명, 타이완 45만 명, 홍콩 34만 명 순
※ 순입국자는 입국 횟수가 아닌 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 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 년 동안 10 회 입국 하였더라도 순입국자로 집계할 때는 1 명으로 계산

○ 또한 생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총 4,602,599명 으로 파악

- 국적별로는 중국 225 만 명, 일본 56 만 명, 타이완인 28 만 명, 미 국 20 만 명, 홍콩 15 만 명 순이며, 연령별로는 20 대 108 만 명, 30 대 98 만 명, 40 대 77 만 명 순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자가 $\mathbf{3 4 , 1 8 9 , 0 1 2}$ 명으로 $70 \%$ 차지

○ 국제공항만별 출입국자는 인천공항(3,418만 명), 김해공항(475만 명), 김포공항(396만 명), 제주공항(204만 명), 부산항(145만 명), 인천항(112만 명) 순임

-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등은 출입국자가 증가한데 반해 김포공항은 13 만 명 $(3.2 \%)$ 이 감소


## 2. 2013 년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square$ 총 체류외국인은 $\mathbf{1 , 5 7 6 , 0 3 4}$ 명으로 2012년 $\mathbf{1 , 4 4 5 , 1 0 3}$ 명 대비 $9.0 \%$ 증 가, 이 중 91 일 이상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1,219,192$ 명

최근 10 년간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 인근로자 549,202 명(34.8\%), 재외동포 235,953 명( $15.0 \%$ ), 결혼이민 자 150,865 명 $(9.6 \%)$ 영주자 100,171 명 $(6.4 \%)$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113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4,711 명(8.5\%), 베트남 120,069 명(7.6\%), 일본 56,081명(3.6\%) 순
$\square$ 91일 이상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1,219,192$ 명으로 2012년 대비 $8.8 \%$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이 643,876 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13,843 명(9.3\%), 미국 68,691 명(5.6\%), 필리핀 38,783 명(3.2\%), 인 도네시아 $33,295(2.7 \%)$ 순이며, 1 만 명 이상 장기체류하는 국가는 중국 등 15 개 국가

○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395,786명(32.5\%), 서울 340,854명(28.0\%), 경남 75,302 명(6.2\%), 인천 61,131 명(5.0\%)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5 \%$ 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square$ 동포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방문취업자는 240,178명으로 2012년 238,765명 대비 $0.6 \%$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이 228,050 명으로 전체의 $95.0 \%$ 를 차지하고 있으 며 우즈베키스탄(10,223명), 러시아(546명) 순

○ 방문취업자가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었으나 올해에는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재입국과 신규 입국으로 방문취업자 허용인원인 30 만 3000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square$ 비전문취업자(고용허가)는 246,695명으로 2012년 230,247명 대비 7.1\% 증가

○ 국적별로는 베트남 50,488명(20,5\%), 인도네시아 29,029명(11.7\%), 스리랑카 21,093명(8.5\%), 태국 22,434명(9.1\%) 순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2,375 명으로 전체의 $77.9 \%$ 를 차지하고 있 으며, 농업( 17,856 명), 건설업 $(11,088$ 명 ), 어업( 6,803 명) 순
$\square$ 결혼이민자는 150,865 명으로 2012 년 148,498 명 대비 $1.6 \%$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62,400명(41.3\%), 베트남 39,854명(26.4\%), 일본 12,220 명 $(8.1 \%)$, 필리핀 10,383 명 $(6.9 \%)$, 캄 보디아 4,650 명 $(3.1 \%)$ 순이며, 여성이 128,826 명(85.4\%), 남성이 22,039명(14.6\%)

○ 거주 지역(광역시도)별로는 경기 41,200 명(27.6\%), 서울 29,800 명 (19.9\%), 경남 9,500명(6.3\%)순이며, 시군구별로는 안산시 단원구

3,709 명, 서울시 영등포구 2,684명, 경기도 시흥시 2,559 명 순
$\square$ 외국인 유학생은 81,847명으로 2012년 84,711명 대비 $3.4 \%$ 감소
○ 국적별로는 중국 54,235 명(66.3\%), 몽골 4,166 명(5.1\%), 베트남 3,760 명(4.6\%), 일본 2,184 명( $2.7 \%$ ), 미국 1,001 명( $1.2 \%$ )순으로 아 시아계가 대부분을 차지

○ 외국인 유학생이 다소 감소한 것은 중국 유학생이 2012년에 비해 $6.2 \%(3,563$ 명 $)$ 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아 진 중국학생들이 영어권 유학을 선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분석
$\square$ 외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233,269명으로 2012년 187,616명 대 비 $24.3 \%$ 증가

○ 국적별로는 중국 157,443 명(67.2\%), 미국 44,701명(19.2\%), 캐나다 13,470 명( $5.8 \%$ ), 호주 3,910 명 $(1.7 \%)$ 순이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중국의 외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 동포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방문취업 동 포가 동 분야에 2 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장기체류 가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3. 향후 전망

○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 국 민에 대한 단체관광제도 시행 등으로 이들 국가 국민의 입국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국민 출국자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올해 출입국자는 사상 처음으로 6,000 만 명을 넘을 것 으로 전망

○ 또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있고,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가 국적취득 대신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어 올해 국내체류자는 168 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출입국자 관련 보조자료
$\square$ 총 출입국자 연도별 증감 추이(승무원 포함)
(단위 : 명)


중국 여유법 관련 정책 추진현황 (하용국)

| 연도 | 국 민 | 외국인 | 계 | 증감율(\%) |
| :---: | :---: | :---: | :---: | :---: |
| ‘04년 | 18,177,433 | 11,432,027 | 29,609,460 | $\begin{gathered} \uparrow 23.5 \\ \% \end{gathered}$ |
| ‘05년 | 20,638,159 | 11,999,876 | 32,638,035 | $\begin{gathered} \uparrow 10.2 \\ \% \end{gathered}$ |
| ‘06년 | 23,538,250 | 12,312,871 | 35,851,121 | $\begin{gathered} \uparrow \\ 9.8 \% \end{gathered}$ |
| ‘07년 | 27,174,375 | 12,659,349 | 39,833,724 | $\begin{gathered} \uparrow 11.1 \\ \% \end{gathered}$ |
| '08년 | 24,677,484 | 13,526,136 | 38,203,620 | $\begin{gathered} \downarrow \\ 4.1 \% \end{gathered}$ |
| '09년 | 19,586,995 | 15,619,509 | 35,206,504 | $\begin{gathered} \downarrow \\ 7.9 \% \end{gathered}$ |
| '10년 | 25,585,627 | 17,402,474 | 42,988,101 | $\begin{gathered} \uparrow 22.1 \\ \% \end{gathered}$ |
| '11년 | 26,064,463 | 19,358,447 | 45,422,910 | $\begin{gathered} \uparrow \\ 5.7 \% \end{gathered}$ |
| '12년 | 28,136,623 | 22,185,474 | 50,322,097 | $\begin{gathered} \uparrow \\ 10.8 \% \end{gathered}$ |
| '13년 | 30,349,466 | 24,613,821 | 54,963,287 | $\begin{gathered} \uparrow \\ 9.2 \% \end{gathered}$ |

$\square$ 총 출입국자 현황(승무원 포함)
(단위 : 명)

| 구 분 | 2013년 |  |  | 2012년 |  |  |
| :---: | :---: | :---: | :---: | :---: | :---: | :---: |
|  | 계 | 국민 | 외국인 | 계 | 국민 | 외국인 |
| 계 | $54,963,287$ | $30,349,466$ | $24,613,821$ | $50,322,097$ | $28,136,623$ | $22,185,474$ |
| 입 국 | $27,396,542$ | $15,196,125$ | $12,200,417$ | $25,200,752$ | $14,071,447$ | $11,129,305$ |
| 출 국 | $27,566,745$ | $15,153,341$ | $12,413,404$ | $25,121,345$ | $14,065,176$ | $11,056,169$ |

■ 국민 출국자 연령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연령 <br> 별 | 계 | $0 \sim 9$ <br> 세 | $10 \sim 19$ <br> 세 | $20 \sim 29$ <br> 세 | $30 \sim 39$ <br> 세 | $40 \sim 49$ <br> 세 | $50 \sim 59$ <br> 세 | 60 세 <br> 이상 |
| :---: | :---: | :---: | :---: | :---: | :---: | :---: | :---: | :---: |
| 계 | 13,834, | 641,6 | 952,8 | $2,269,0$ | 3,156, | 2,923, | 2,494, | 1,395, |
| 472 | 34 | 63 | 48 | 949 | 698 | 363 | 917 |  |
| 비 <br> 율 | $100 \%$ | $4.6 \%$ | $6.9 \%$ | $16.4 \%$ | $22.8 \%$ | $21.1 \%$ | $18.0 \%$ | $10.1 \%$ |

- 국민 출국자 중 순 출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연령 <br> 별 | 계 | $\begin{gathered} 0 \text { 세이 } \\ \text { 하 } \end{gathered}$ | $\begin{gathered} 10-19 \\ \text { 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20-29 \\ \text { 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0-39 \\ \text { 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40-49 \\ \text { 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0-59 \\ \text { 세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60세이 } \\ \text { 상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
| 계 | $\begin{gathered} 8,446 \\ 110 \end{gathered}$ | $\begin{gathered} 459,1 \\ 35 \end{gathered}$ | $\begin{gathered} 741,4 \\ 79 \end{gathered}$ | $\begin{gathered} 1,426 \\ 298 \end{gathered}$ | $\begin{gathered} 1,834, \\ 628 \end{gathered}$ | $\begin{gathered} 1,569 \\ 977 \end{gathered}$ | $\begin{gathered} 1,460, \\ 063 \end{gathered}$ | $\begin{gathered} 954,53 \\ 0 \end{gathered}$ |
| 비율 | 100\% | 5.4\% | 8.8\% | 16.9\% | 21.7 \% | 18.6\% | 17.3\% | 11.3\% |

※ 순 출국자라 함은 출국회수가 아닌 출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 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 년간 10 회 출국하였더라도 순 출국자로 집계할 때 는 1 명으로 계산

국민 중 생애 첫 출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성 별 | 계 | 0세이하 | $10-19$ 세 | 20 -29세 | $30-39$ 세 | $40-49$ 세 | $50-59$ 세 | 60세이상 |
| :---: | :---: | :---: | :---: | :---: | :---: | :---: | :---: | :---: |
| 계 | $\mathbf{1 , 2 8 0 , 2 4 1}$ | 201,694 | 214,665 | 274,986 | 184,334 | 152,278 | 159,957 | 92,327 |
| 남 | $\mathbf{5 9 4 , 5 4 9}$ | 103,128 | 110,455 | 122,460 | 107,482 | 55,804 | 55,901 | 39,319 |
| 여 | $\mathbf{6 8 5 , 6 9 2}$ | 98,566 | 104,210 | 152,526 | 76,852 | 96,474 | 104,056 | 53,008 |

국민 재출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2012년~2013년, 단위 : 명)

| 계 | 2회 | $3-4$ 회 | 5회 이상 |
| :---: | :---: | :---: | :---: |
| $5,184,503$ | $2,570,645$ | $1,632,705$ | 981,153 |

■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 계 | 중 국 | 일 본 | 미 국 | 타이완 | 홍 콩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2013년 | 입국자 | 10,678,334 | 3,923,190 | 2,715,451 | 743,017 | 566,200 | 391,340 | 2,339,136 |
|  | $\begin{aligned} & \text { 바율 } \\ & \text { (증감) } \end{aligned}$ | $\begin{gathered} 100 \% \\ (\uparrow 5.5 \%) \end{gathered}$ | $\begin{gathered} 36.7 \% \\ (\uparrow 43.6 \%) \end{gathered}$ | $\left\lvert\, \begin{gathered} 25.4 \% \\ (\downarrow 22.4 \%) \end{gathered}\right.$ | $\begin{gathered} 7.0 \% \\ (\uparrow 1.2 \%) \end{gathered}$ | $\begin{gathered} 5.3 \% \\ (\downarrow 0.7 \%) \end{gathered}$ | $\left(\begin{array}{c} 3.7 \% \\ (\uparrow 11.2 \%) \end{array}\right.$ | $\begin{gathered} 21.9 \% \\ (\uparrow 4.6 \%) \end{gathered}$ |
| 2012년 | 입국자 | 10,121,950 | 2,731,121 | 3,497,525 | 733,984 | 570,442 | 352,019 | 2,236,859 |
|  | 비율 | 100\% | 24.6\% | 34.5\% | 7.3\% | 5.6\% | 3.5\% | 24.5\% |

## 외국인 입국자 연령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0 \sim 9$ 세 | $10 \sim 19$ 세 | $20 \sim 29$ 세 | $30 \sim 39$ 세 | $40 \sim 49$ 세 | $50 \sim 59$ 세 | 60 세 <br> 이상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10,678,334$ | 359,733 | 666,517 | $2,399,193$ | $2,349,582$ | $2,162,730$ | $1,645,523$ | $1,095,056$ |
| 비 율 | $\mathbf{1 0 0 \%}$ | $3.4 \%$ | $6.2 \%$ | $22.5 \%$ | $22.0 \%$ | $20.3 \%$ | $15.4 \%$ | $10.3 \%$ |

■ 외국인 입국자 입국목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관광 및 <br> 방문 | 취 업 | 재외동포 | 유학 | 국민의 <br> 배우자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인 원 | $10,678,334$ | $8,859,834$ | 455,847 | 280,130 | 148,340 | 117,968 | 816,215 |
| 비 율 | $100 \%$ | $83 \%$ | $4.3 \%$ | $2.6 \%$ | $1.4 \%$ | $1.1 \%$ | $7.6 \ldots$ |

- 외국인 순 입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 국적별 | 총계 | 중국 | 일본 | 미국 | 타이완 | 홍콩 | 태국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계 | $8,238,953$ | $3,125,130$ | $1,881,570$ | 520,406 | 457,783 | 342,035 | 284,758 | $1,627,271$ |
| 비율 | $100 \%$ | $37.9 \%$ | $22.8 \%$ | $6.3 \%$ | $5.6 \%$ | $4.2 \%$ | $3.5 \%$ | $19.8 \%$ |

※ 순 입국자라 함은 입국회수가 아닌 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 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 년간 10 회 입국하였더라도 순 입국자로 집계할 때 는 1 명으로 계산

## 외국인 입국자 생애 첫 입국자 현황

(2013년, 단위 : 명)

| 국적별 | 계 | 중국 | 일본 | 타이완 | 미국 | 태국 | 홍콩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4,602,599 | 2,255,768 | 566,855 | 285,983 | 208,205 | 199,215 | 158,763 | 927,810 |
| 비 율 | 100.0\% | 49.1\% | 12.3\% | 6.2\% | 4.5\% | 4.3\% | 3.4\% | 20.2\% |


| 연령별 | 계 | 0 세이하 | 10-19세 | 20-29 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4,602,599 | 218,882 | 394,964 | 1,081,420 | 980,590 | 776,938 | 637,211 | 512,594 |
| 비 율 | 100.0\% | 4.8\% | 8.6\% | 23.5\% | 21.3\% | 16.9\% | 13.8\% | 11.1\% |

■ 크루즈 관광객 입국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년 |
| :---: | :---: | :---: | :---: | :---: | :---: |
| 입항 수(척) | 85 | 137 | 141 | 181 | $\mathbf{2 7 1}$ |
| 증감율 | - | $\uparrow 61.2 \%$ | $\uparrow 2.9 \%$ | $\uparrow 28.4 \%$ | $\uparrow \mathbf{4 9 . 7 \%}$ |
| 승객 수(명) | 66,998 | 147,699 | 145,255 | 231,964 | $\mathbf{4 9 0 , 9 5 4}$ |
| 증감율 | - | $\uparrow 120.5 \%$ | $\downarrow 1.7 \%$ | $\uparrow 59.7 \%$ | $\uparrow \mathbf{1 1 1 . 7 \%}$ |

- 제주 무비자 관광객 입국 현황
(단위 : 명)

| 연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 | :---: | :---: | :---: |
| 입국자 <br> 수(명) | 69,572 | 108,679 | 153,862 | 232,929 | 429,232 |
| 증감율 | - | $\uparrow 56.2 \%$ | $\uparrow 41.6 \%$ | $\uparrow 51.4 \%$ | $\uparrow 84.3 \%$ |

■ 의료관광 입국자 현황
(단위: 명)

| 연 도 | 2009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mathbf{2 0 1 3}$ 년 |
| :---: | :---: | :---: | :---: | :---: | :---: |
| 입국자 <br> 수(명) | - | 775 | 2,545 | 15,688 | $\mathbf{2 5 , 4 7 0}$ |
| 증감율 | - | - | $\uparrow 228.4 \%$ | $\uparrow 516.4 \%$ | $\uparrow 62.4 \%$ |

-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 현황
(단위: 명)

| 연 도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년 |
| :---: | :---: | :---: | :---: | :---: | :---: |
| 입국자 <br> 수(명) | 298,348 | 448,540 | 544,092 | 843,864 | $\mathbf{1 , 1 8 1 , 1 1 3}$ |
| 증감율 | - | $\uparrow 50.3 \%$ | $\uparrow 21.3 \%$ | $\uparrow 55.1 \%$ | $\uparrow 40.0 \%$ |

## 체류외국인 관련 보조자료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명)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begin{gathered} 2004 \\ \text { 년 } \end{gathered}$ | $\begin{gathered} 2005 \\ \text { 년 } \end{gathered}$ | $\begin{gathered} 2006 \\ \text { 년 } \end{gathered}$ | $\begin{gathered} 2007 \\ \text { 년 } \end{gathered}$ | $\begin{gathered} 2008 \\ \text { 년 } \end{gathered}$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인 } \\ & \text { 원 } \end{aligned}$ | $\begin{gathered} 750,8 \\ 73 \end{gathered}$ | $\begin{gathered} 747,4 \\ 67 \end{gathered}$ | $\begin{gathered} 910,1 \\ 49 \end{gathered}$ | $\begin{gathered} 1,066, \\ 273 \end{gathered}$ | $\begin{gathered} 1,158 \\ 866 \end{gathered}$ | $\begin{gathered} 1,168,4 \\ 77 \end{gathered}$ | $\begin{array}{\|c} 1,261,4 \\ 15 \end{array}$ | $\begin{gathered} 1,395,0 \\ 77 \end{gathered}$ | $\begin{gathered} 1,445,1 \\ 03 \end{gathered}$ | $\begin{gathered} 1,576,0 \\ 34 \end{gathered}$ |
| $\begin{gathered} \text { 증감 } \\ \text { 률 } \end{gathered}$ | - | $\begin{gathered} \downarrow 0.5 \\ \% \end{gathered}$ | $\begin{gathered} \uparrow 21 . \\ 8 \% \end{gathered}$ | $\begin{gathered} \uparrow 17 . \\ 2 \% \end{gathered}$ | $\begin{gathered} \uparrow 8.7 \\ \% \end{gathered}$ | $\begin{gathered} \uparrow 0.8 \\ \% \end{gathered}$ | $\uparrow 8.0 \%$ | $\begin{gathered} \uparrow 10.6 \\ \% \end{gathered}$ | $\uparrow 3.6 \%$ | $\uparrow$ 9.0\% |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국적별 | 계 | 중 국 | 미 국 | 베트남 | 일 본 | 태 국 | 필리핀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begin{gathered} 1,576,03 \\ 4 \end{gathered}$ | 778,113 | 134,711 | 120,069 | 56,081 | 55,110 | 47,514 | 384,436 |
| 비 율 | 100\% | 49.4\% | 8.5\% | 7.6\% | 3.6\% | 3.5\% | 3.0\% | 24.4\% |

## 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 체류 <br> 자격별 | 계 | 비전문취 <br> 업 <br> (E-9) | 방문취업 재외동포 <br> (H-2) | 영 주 <br> (F-5) | 유 학 <br> (D-2) | 거 주 <br> (F-2)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mathbf{1 , 5 7 6 , 0 3 4}$ | 246,695 | 240,178 | 235,953 | 100,171 | 60,466 | 39,704 | 652,867 |
| 비 율 | $\mathbf{1 0 0 \%}$ | $15.7 \%$ | $15.2 \%$ | $15.0 \%$ | $6.4 \%$ | $3.8 \%$ | $2.5 \%$ | $41.4 \%$ |

$\square$ 등록(장기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외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포함)
(단위 : 명)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 | :---: | :---: | :---: |
| 인 원 | 920,887 | 1,002,742 | 1,117,481 | 1,120,599 | 1,219,192 |
| 증감률 | - | $\uparrow 8.9 \%$ | $\uparrow 11.4 \%$ | $\uparrow 0.3 \%$ | $\uparrow$ 8.8\%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외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포함)
(2013년, 단위 : 명)

| 국적별 | 계 | 중 국 | 베트남 | 미 국 | 필리핀 | 인도네시 <br> 아 | 태 국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1,219,19$ | 643,876 | 113,843 | 68,691 | 38,783 | 33,295 | 26,190 | 294,514 |
| $-\left(\begin{array}{c}2 \\ \text { 비 율 }\end{array}\right.$ | $\mathbf{1 0 0 \%}$ | $52.8 \%$ | $9.3 \%$ | $5.6 \%$ | $3.2 \%$ | $2.7 \%$ | $2.1 \%$ | $24.2 \%$ |

등록외국인 거주 지역별 현황(외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포함)
(2013년, 단위 : 명)

| 국적별 | 계 | 경기도 | 서울시 | 경남 | 인천시 | 충남 | 경북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인 원 | $\begin{gathered} 1,219,19 \\ 2 \end{gathered}$ | 395,786 | 340,854 | 75,302 | 61,131 | 58,040 | 47,406 | 240,673 |
| 비 율 | 100\% | 32.5\% | 28.0\% | 6.2\% | 5.0\% | 4.8\% | 3.9\% | 19.7\% |

방문취업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mathbf{2 0 1 3}$ 년 |
| :---: | :---: | :---: | :---: | :---: | :---: |
| 인 원 | 306,283 | 286,586 | 303,368 | 238,765 | $\mathbf{2 4 0 , 1 7 8}$ |
| 증감률 | - | $\downarrow 6.4 \%$ | $\uparrow 5.9 \%$ | $\downarrow 21.3 \%$ | $\uparrow \mathbf{0 . 6 \%}$ |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 방문취업 국적별 현황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중국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키르기스스탄 | 기타 |
| :---: | :---: | :---: | :---: | :---: | :---: | :---: | :---: |
| 인 원 | $\mathbf{2 4 0 , 1 7 8}$ | 228,050 | 10,223 | 702 | 546 | 361 | 296 |
| 비 율 | $\mathbf{1 0 0 \%}$ | $95.0 \%$ | $4.3 \%$ | $0.3 \%$ | $0.2 \%$ | $0.2 \%$ | $0.1 \%$ |

비전문취업자(E-9)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년 |
| :---: | :---: | :---: | :---: | :---: | :---: |
| 인 원 | 188,363 | 220,319 | 234,295 | 230,237 | $\mathbf{2 4 6 , 6 9 5}$ |
| 증감률 | - | $\uparrow 17 \%$ | $\uparrow 6.3 \%$ | $\downarrow 1.7 \%$ | $\uparrow \mathbf{7 . 1 \%}$ |

비전문취업자(E-9) 국적별 현황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태국 | 스리랑카 | 기타 |
| :---: | :---: | :---: | :---: | :---: | :---: | :---: | :---: |
| 인 원 | $\mathbf{2 4 6 , 6 9 5}$ | 50,488 | 29,029 | 25,281 | 22,434 | 21,093 | 98,370 |
| 비 율 | $\mathbf{1 0 0 \%}$ | $20.5 \%$ | $11.8 \%$ | $10.2 \%$ | $9.1 \%$ | $8.6 \%$ | $39.9 \%$ |

##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2012 년 | 2013년 |
| :---: | :---: | :---: | :---: | :---: | :---: |
| 인 원 | 125,087 | 141,654 | 144,681 | 148,498 | $\mathbf{1 5 0 , 8 6 5}$ |
| 증감률 | - | $\uparrow 13.2 \%$ | $\uparrow 2.1 \%$ | $\uparrow 2.6 \%$ | $1.6 \%$ |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중 국 | 베트남 | 일 본 | 필리핀 | 캄보디아 | 기 타 |
| :---: | :---: | :---: | :---: | :---: | :---: | :---: | :---: |
| 계 | 150,865 | 62,400 | 39,854 | 12,220 | 10,383 | 4,650 | 21,358 |
| 남 | 22,039 | 12,075 | 427 | 1,183 | 292 | 12 | 10,161 |
| 여 | 128,826 | 503,325 | 39,427 | 11,037 | 10,091 | 4,638 | 11,197 |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 | :---: | :---: | :---: |
| 인 원 | 80,985 | 87,480 | 88,468 | 84,711 | 81,847 |
| 증감률 | - | $\uparrow 8.0 \%$ | $\uparrow 1.1 \%$ | $\downarrow$ 4.2\% | $\downarrow$ 3.4\% |

## 외국인유학생 국적별 현황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중 국 | 몽 골 | 베트남 | 일 본 | 미 국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인 원 | 81,847 | 54,235 | 4,166 | 3,760 | 2,184 | 1,001 | 16,501 |
| 비 율 | $100 \%$ | $66.3 \%$ | $5.1 \%$ | $4.6 \%$ | $2.7 \%$ | $1.2 \%$ | $20.2 \%$ |

외국적동포 거소신고자(F-4)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 | :---: | :---: | :---: |
| 인 원 | 50,251 | 83,825 | 135,020 | 187,616 | 233,269 |
| 증감률 | - | $\uparrow 66.8 \%$ | $\uparrow 61.1 \%$ | $\uparrow 39 \%$ | $\uparrow \mathbf{2 4 . 3 \%}$ |

외국적동포 거소신고자(F-4) 국적별 현황
(2013년, 단위 : 명)

| 구 분 | 계 | 중 국 | 미 국 | 캐나다 | 호 주 | 뉴질랜드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인 원 | 233,269 | 157,443 | 44,701 | 13,470 | 3,910 | 1,953 | 11,792 |
| 비 율 | $\mathbf{1 0 0 \%}$ | $67.5 \%$ | $19.2 \%$ | $5.8 \%$ | $1.7 \%$ | $0.8 \%$ | $5.1 \%$ |


[^0]:    1）중국의 경제발전과 여행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旅游法》 입법배경에 있어，宋瑞 선생은 매년 30 억 명의 국내여행객과 8,000 만 명의 외국여행， 1,350 만 명의 여행관련업 종사자， 1.4 만 업소 성급 호텔， 2.5 만 개의 여행사， 2 만 여개의 관 광지， 148 개의 외국여행 목적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이에 대하여는，宋瑞，＂产业发展视角下的《旅游法》＂，『法制论坛』2013年 第8期•总第350期，34면 참고．

[^1]:    2）胡婧，＂我国‘旅游法’立法研究＂，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2009．4，4면
    3）동법의 입법취지는 기타 여행관련법규 입법목적의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刘莉，王泓，＂论《旅游法》对旅游者合法权益的全面保障＂，『安徽警官职业学院学报』
    2013年 第5期 第12卷（总第68期），41면．1993년부터 2008년의 15년간을 보면，여행산 업의 총수입은 1133 억 위엔에서 1.16 만 위엔으로 $17.6 \%$ 증가하였다．2013년 1 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며，여행산업의 총수입은 2.96 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14.2 \%$ 증가 하였으며，국내여행객수는 약 33 억 명으로 전년대비 $10 \%$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 다．宋强，＂我国构建旅游法治环境的现状，问题与对策分析＂，『法治研究』2013年 第6期，79면 참고．

[^2]:    5）2011년 국가여행국 품질감독소（国家旅游局旅游质量监督所）의 통계자료를 보면，여 행상품에 대한 불만이 수리된 건수는 11060 건으로 전년대비 1118 건 늘어 $11.25 \%$ 증가하였다고 한다．宋强，위의 논문， 79 면．또한 중국여행경제도감（中国旅游经济蓝皮书［NO．5］2013）에 의하면，2012년 전국 여행산업발전에 관한 만족도 지수가＂만 족＂을 나타냈다고 한다．
    6）乔力，李茂民，高连营．＂大旅游概念与 21 世纪旅游业的发展＂，『山东社会科学』， 2000（5），40－43면 참고．

[^3]:    명확하게 하고 있다．
    17）적절한 간여원칙의 적용으로 여행질서，여행안전，여행산업의 거시적 영역통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4]:    20）《여행법》의 성질을 사회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른바＇여행법률관계론＇ 을 제시한다．이는＂여행이나 유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또는＂여행활동 을 주로 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라고 한다．이에 대하여는，姚晓玲，『旅游法规与实务』，北京：旅游教育出版社，2002；王健，앞의 책，胡婧，앞의 논문， 5 면 재인용．
    21）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여행관련 법제에 있어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정사건의 발생에 있어 전문법규에만 적용되었다．즉，여행사와 관련한 법규는 여

[^5]:    행사를，문화재보호에 관한 법규는 문화제를，출입국관리에 관하여는 관광객에만 적용되었다．동법의 작용에 대하여는，宋瑞，앞의 논문， 34 면 참고．
    22）여행산업의 목적은 단순한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즉，여행객은 여행으로 소 비하는 소비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역사와 자료를 평가하여 다른 관광 지와 비교한다．

[^6]:    24）또한 여행객은 자신의 종교나 특정지역 출입에 대한 신체적 제한에 대하여도 여 행계약체결 시 통지하여야 한다．예를 들어，특정종교를 가져 여행지에서 특정음식 을 먹지 못하여 단체급식이 제한됨으로써 다른 여행객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그리 고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 등이 있어 특정장소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여행객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이다．

[^7]:    40）李俵俵，앞의 논문 89 면；孔令学，＂浅谈《旅游法》对旅游者安全的全方位保护机制＂，『旅游学刊』第28卷 2013年 第8期，29면 이하 참고；米一，＂旅游法：剑指行业痹疾＂，『法治与社会』2013年10期，38－39면。

[^8]:    4) 정효희, 이대휘, "중국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국내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분석", 관광연구저널 27(4), 2013. 195면.
    5)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시아•태 평양 지역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뉴질랜드,
[^9]: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6년 1 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 \%$ 를 철폐 하고, 2015 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 을 포함하고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 관세철폐를 목표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 유화로 알려져 있다.
    6) JSEPA는 일본이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상용목적의 인적교류 편리를 위 한 학생, 교수, 공무원, 연구자 등의 교류 및 양국 간 관광객 증대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SARS의 영향으로 방문객 감소를 기록한 2003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양국 방문객 수의 급속한 증 가를 가져왔다.
    7) 임재필, 정민섭, 이선화, "한•일간의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FTA 시나리오 및 영향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 17권 제2호,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2008년 4월, 218면.
    8)「한•미FTA 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공사, 2007. 10.

[^10]:    9) http://www.mcst.go.kr/web/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7(문화체육 관광부 보도자료)
[^11]:    16）马淑红，＂中韩旅游政策的比较分析研究＂，渤海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年7月 第4期，第65页。

[^12]:    28）関花帥，＂淺談《旅游法》制定的必要性与緊迫性＂，吉林省敎育學院學報 第28卷總 294期，2012年第6期第147頁。

[^13]:    호（통권 90），2011．5，364면．

[^14]:    4) 의안번호 $611,2004.10$ 정부제출, 임기만료폐기되었음.
[^15]: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13-214호, 2013.9.30 참조.
[^16]:    6) 의안번호 $11426,2011.4 .5$ 발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17]:    7) 의안번호 3934, 2013.3.4 발의.
[^18]:    3) 패키지 관광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쇼핑 및 옵션 등 별도비용 청구 금지. 이에 따라모든 상품의 가격이 적게는 $20 \sim 30 \%$, 많게는 2 배 가까이 인상 전망
[^19]:    8) 진순현, ‘올해 제주관광 중국 '여유법'이 기회다!’, 아주경제, 2014.1.2
    9) 2013년 11월 제주관광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p.14. 제주관광공사
